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2009.4.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4.

주 관 연 구 기 관 명 : 연 세 대 학 교
의 료 법 윤 리 학 연 구 소
책 임 자 : 박 길 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손 명 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장 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김 소 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강 명 신 (연 세 대 학 교 보 건 대 학 원)
연 구 원 : 이 기 중 (숙명여자대학교 법 과 대 학)
연 구 원 : 심 영 (연 세 대 학 교 법 과 대 학)
연 구 원 : 이 승 기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 구 원 : 강 현 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이 미 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박 인 경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권 세 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김 윤 덕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이 성 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선 준 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 구 원 : 구 나 영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자 문 위 원 : 전 광 석 (연 세 대 학 교 법 과 대 학)
자 문 위 원 : 박 동 진 (연 세 대 학 교 법 과 대 학)
자 문 위 원 : 이 경 환 (법 무 법 인 화 우)
자 문 위 원 : 박 형 옥 (의 성 법 률 사 무 소)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 실시 근거 법령	1
1. 사회복지사업법	1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
제2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3
1. 독립법 제정의 필요	3
2. 현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법령의 한계	3
3. 기타 금융서비스 관련 법률 적용의 한계	4
제3절 연구 목적	4
제4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6
3. 연구수행체계	7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제2장. 연구 결과	9
제1절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 개관	9
1. 사회서비스 개념	9
2. 사회서비스의 특징	11
3. 사회서비스의 범위	13
4. 사회서비스바우처 개념	16
5.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19
6. 사회서비스바우처의 기본전제	21
7. 사회서비스바우처 실행	22
8.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문제점과 한계	30
제2절 국내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현황 분석	32
1. 전반적 현황	32

2. 제도별 현황	34
3.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현황	49
4. 국내현황표	55
5. 국내 사회서비스바우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60
제3절. 외국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현황 및 입법례	62
1. 미국	62
2. 영국	89
3. 호주	100
4. 독일	115
5. 뉴질랜드	125
6. 프랑스	126
7. 스웨덴	129
8. 일본	131
9. 칠레	133
10. 콜롬비아	135
11. 싱가포르	137
12. 각국의 사회서비스바우처 현황표	138
제3장. 연구 결과 고찰	148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의 쟁점 및 방향	148
1. 법안의 목적 및 규제 범위	148
2. 적용 대상 서비스의 범위	149
3. 사회서비스이용권 우선활용 규정	152
4.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주체	153
5. 사회서비스 사업자(제공기관) 지정	154
6. 사회서비스 사업자의 관리 및 서비스 질 관리	156
7. 바우처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61
8. 소비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	164
제2절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 입법안의 구체적 내용	165

제3절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의 하위 법령	235
1. 시행령 위임 사항	235
2.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	253
제4장. 결론 및 제언	270
참고문헌	276
부록 1. 미국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	279
부록 2. 미국 Americans Opportunity Act	424
부록 3.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서의 어린이 보호 촉진법	441
부록 4. 베를린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의 입학보장 및 전문요원 배정 절차에 관한시행령	448
부록 5. 재정지원 및 어린이집의 서비스 보장에 관한 기본협약	464
부록 6.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안)	468
부록 7. 미국 사회서비스바우처 활용 현황표	531

표 목 차

표 1 서비스의 목표, 개입분야 및 주요내용	15
표 2 직업훈련카드제도 추진 경과	34
표 3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 절차	35
표 4 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한 교육환경	36
표 5 카드리더기 예산 집행 실적	37
표 6 실업자 직업훈련 현황	37
표 7 만5세미만 무상보육교육제도 경과 과정	39
표 8 지원아동 비율	40
표 9 만 0~4세 보육지원제도 소득계층별 구분	42
표 10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2005년)	42
표 11 소득계층별/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43
표 12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연혁	49
표 13 서비스제공기관 및 인력현황	51
표 14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특성	51
표 15 바우처 사업별 제공기관 현황	53
표 16 '07년 중 사업결산 현황	53
표 17 2004~2005년 EVT 제도 예산	74
표 18 저소득가구 대상 주택비용 보조제도	85
표 19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85
표 20 호주 직업기술바우처 프로그램표	105
표 21 호주 센터링크 서비스 유형	109
표 22 호주 센터링크 클라이언트 기관	111
표 23 호주 센터링크 예산 주요 출처	112
표 24 독일 바우처 사용절차	125
표 25 주거보조비 수혜자 비율	133
표 26 칠레 학교 유형	133
표 27 칠레의 교육체계	133

표 28	각국의 교육바우처 현황	138
표 29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녀보육지원제도	143
표 30	OECD 국가의 유형별 보조금 정책	143
표 32	산업분류상 사회서비스의 정의	150
표 33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 규제기준	155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수행체계	4
그림 2 Blaug의 바우처 나무 : 다양한 바우처설정 모형	13
그림 3. 바우처제도의 위치	14
그림 4. 만5세미만 무상보육교육제도 운영절차	33
그림 5. 푸드 스탬프 허가증	54
그림 6. 프랑스의 체크바캉스의 흐름	107

제1장. 서 론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 실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도입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물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 33조).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이용권을 급여 형태로 이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용권의 도입과 적용에 박차를 가한 것은 2007년 3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이다.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을 설명하고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기준, 예산 및 비용지불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등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신설 조항(시행령 제 19조 4항)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 1장 총칙 제 2조 4항. “사회복지서비스라” 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 33조 2항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라 “보호대상자” 라고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 라고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7항(보호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제19조 4항(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①법 제33조의 7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복지요구, 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 중 보호실시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권의 가격, 사용기한, 이용이 가능한 보호실시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 중 보호실시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권의 범위에서 보호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호실시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 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미리 보호실시비용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1. 독립법 제정의 필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국민에게 그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는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혁신단을 설치하여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4대 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안정화 및 활성화는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와 관련된 국가적 노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이 요구 되고 있다.

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결도구로서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통하여 이용권을 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의 복지 관련 법률과 운용원리 및 성격이 상이하다.

2. 현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법령의 한계

현재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한정되는 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은 보건의료, 교육, 문화서비스를 포괄하여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재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달리,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재정사업 외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방식의 사업까지 포괄 가능한 것으로서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사회복지사업법 이외에, 이용자 지원방식,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3. 기타 금융서비스 관련 법률 적용의 한계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제3의 복지급여수단으로서, 양도불가, 구매서비스 및 사용금액 특정, 짧은 사용기한 등 여신종합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관련 법률과 운용원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인 이용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발급, 사용, 정산과 관련된 권리 및 책임, 이용권 관련 분쟁 해결 절차, 부정사용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서비스의 법적 성격 및 내용, 정부의 책무와 권한, 사회서비스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강제 및 처벌 조항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요건들을 살펴본다. 그 후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법안 마련과 시행을 위한 법적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현황 및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해 국내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인 이용권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시사점들을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 법제화의 필요성 파악한다.

셋째, 위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관리 및 진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넷째, 법안의 실행을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한다.

제4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독립법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첫째, 국내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의 현황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한다.

둘째, 국외 사회서비스이용권 사례 및 입법 체계를 분석한다. 외국의 사례 및 관련 법률의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한다. 외국의 사례는 호주의 Human Service Bill과 미국의 Food Stamp 법률안, 그리고 기타 외국사례의 사례를 조사·분석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확대의 당위성 및 이용권 제도의 합리성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 여부의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이용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넷째, 사회서비스이용권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권의 법적 성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관련 상용되는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 현물·현금 급여 비교를 통한 이용권의 성격 규정, 다른 지불수단의 규율 방식(신용/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비교·분석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 및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관계, 이용권 관리기관의 설치, 역할 및 책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자의 요건, 인증(또는 지정), 역할, 책임 등을 파악한다.

여섯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실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조사 : 자료 수집을 통한 사안의 검토

국내에서 발간·발표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넷 검색 및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정책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선진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문헌 및 법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국외의 관련 정책 및 제도·현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나. 면접조사

국내외 사회서비스이용권 운영과정 및 현황 조사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전자금융전문가, 법률 제정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업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이용권 및 기타 이용권 유사 지불수단의 추진체계, 실행상의 문제점, 정책 대상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한 관련 실무 담당자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다. 자문회의

독립법 제정의 쟁점 사항에 대한 이상적인 형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의 개발을 위해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자문위원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전자금융전문가, 법률 제정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8-10인으로 구성한다.

라. 공청회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개정안 및 표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공무원, 사회복지 및 전자금융 전문

가, 학자, 시민단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지자체 관련 조직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3. 연구수행체계



<그림 1> 연구 수행 체계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첫째,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안정적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이용권 관련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됨으로써,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명확한 법률관계의 규정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이용권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및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 안정화 및 예측가능성 증대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및 이용자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 이용권사업의 활성화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시장이 개발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다섯째, 수요에 민감한 서비스의 발전 및 질 향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나. 활용방안

다른 분야 서비스에 이용권 도입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연구 결과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 개관

1. 사회서비스 개념¹⁾

가. 사회서비스의 의미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는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 또는 Human Service), 사회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 사회적 보호(Social Care)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어 명확한 개념이 없다.

나. 광의적 의미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기도 하고 (국제 표준산업분류, ISIC), 주택, 보건, 교육, 사회보장, 고용, 여가 그리고 대인사회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²⁾

1) 김혜원·안상훈·조영훈,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2) 이러한 개념은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에서 서비스업을 네 개의 분야-생산서비스(producer service), 유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 구분한데서 유래한다. ISIC(제3차 개정)에 따르면 L(공공행정, 국방, 의무적 보장), M(교육), N(의료 및 사회복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제8차 개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전체와,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부를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김혜원, 안상훈, 조영훈.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다. 협의적 의미

영미계통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1) 미국

인간서비스(human service) 혹은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가 소득보장·교육·보건·의료·문화 등은 제외된 사회복지부문 서비스의 의미로 통용된다.

2) 영국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는 소득보장,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정책 영역을 포괄하며,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는 이와 구분되는 제6의 서비스로서 지방정부·민간·비영리·자원단체를 통해 사회적 보호요구(social care need)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support)과 보호(care)서비스를 의미한다.³⁾

3) 우리나라

영국의 personal social services, 미국의 human services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용어가 사용된다.

라. 사회서비스 보편적 정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가족)”을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돌봄(care) - 기초 의·식 주거 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용에 대한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3) 강혜규외 5명.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 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공통점이 존재한다.

EC(European Commission, 2007a)⁴⁾는 사회서비스를 법적 사회보호서비스, 보충적 사회보호서비스, 건강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지원촉진 서비스, 교육과 훈련서비스, 사회적 주거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서비스 이용 혹은 정부지원 대상의 범위는 사회정책의 보편성(조세중심, 보험중심, 공공부조중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방식과 공공의 개입정도에도 정부부처의 소관범위, 민간 활성화의 정도, 사회서비스 제도의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동, 가족, 노인,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보건관련 서비스 내용을 통합한다. 영국은 노동연금부에서 소득보장과 고용관련 서비스 통합하며, 보건부의 social care 통합하며, 교육부에서는 보육을 관장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아동, 노인,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고용관련 서비스 내용을 통합한다.⁵⁾

2. 사회서비스의 특징⁶⁾

가. 사회서비스 주요 특징⁷⁾

사회서비스는 대인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여, 전달체계 자체가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관계성이 일차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므로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그것을 구성하는 조직 및 체계가 사회서비스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한 구체적 특징으로는 공공성과 개별성이 매우 혼재되어 있는 영역으로서, 대상이 ‘사회적’ 욕구이며 제공 주체가 ‘집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구성원 능력

4) 안홍준.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 사회서비스 발전 방안을 정책과제. 2008. 재인용

5) 강혜규외 5명.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 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6) 강혜규외 5명, 위의 논문

7) 안홍준.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발전 방안을 정책과제. 2008

과 가능성(capability and functioning)의 제고에 있지만 공급량과 관련해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⁸⁾

반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욕구의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상에 따른 개별화(antifeudalization)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따라서 표준화가 매우 어렵다. 일찍부터 ‘복지혼합(welfare mix)’이 활성화된 영역이다. 서비스의 집합적이고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공공부문(정부)이 개입하되, 서비스 내용의 대인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이 일선 전달체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형태가 매우 다양하다.⁹⁾ 국가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혹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현금, 현물, 선택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나.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의 사회서비스의 특성

김혜원 외의 연구(2006)에서는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정의 내렸다. 생산 측면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의한 생산과 시장을 통한 배분이 지배적이지 않고, 서비스 제공이 정부에 의해 또는 비영리조직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영리기업에 의해 생산되더라도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서비스를 수요 하는 이들의 구매력이 정부에 의해 보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8)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에서 공급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공공재의 특성이라 볼 때 이러한 서비스를 엄격하게 공공재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공재로 볼 수도 있다.

9) Daly(2002)는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영역인 케어에 대한 국가의 개입형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 첫째, 현금급여, 급여용도에 대한 크레딧, 세금공제와 같은 현금과 현물의 사회보장 및 세금 급여, 둘째, 지불 및 부활 휴가, 간병인휴식, 단절급여, 유연시간, 노동시간 감면과 같은 고용관련 급여, 셋째, 홈헬퍼와 기타 지역사회기반 지원서비스, 아동케어시설, 성인과 아동을 위한 거주시설과 같은 직접 서비스 넷째, 바우처, 재조정된 노동시간, 민간 혹은 시장공급에 대한 인센티브(이봉주 외, 2006).

다.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의 재원이 공공적인 기구를 통해 조달된 자금에 의해 보조되거나 전액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소득 한계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보다는 의회, 관료제, 법률, 투표, 여론 등 집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통한 결정이 자원배분을 주도한다.

사회서비스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선택에 의해 공급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이유는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외부효과,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장은 적절한 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특정 서비스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견해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경우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는 평등주의적 요구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강하다.

3. 사회서비스의 범위¹⁰⁾

사회서비스는 그 내용(분야), 기능, 방법, 대상 등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 할 수 있다.

내용(분야)에 따른 분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보육, 돌봄(care), 주거, 재활 등이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에는 간병, 간호 등이 있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에는 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등이 있고, 문화예술 서비스는 도서관·박물관 운영 등이 있다.

기능에 따른 분류에는 기초적 재생산을 위한 의식주 등 생활 보장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확보를 위한 서비스, 인적자본 확충 및 기회평등

10) 강혜규외 5명.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 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을 위한 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참여를 위한 서비스, 일자리 보장을 위한 서비스, 일반 행정 및 관련 서비스 전달이 있다.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이용서비스, 지원적 우대서비스 등이 있다.

대상에 따른 분류에는 성인(노인, 장애인)서비스, 아동, 청소년 서비스, 여성·가족서비스, 특수집단 서비스 (노숙인, 미혼모, 국제결혼이주자 등)가 있다.

최근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논의과정에서 협의의 사회복지를 광의의 사회정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정책, 사회적 보호를 비롯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인 욕구에 대한 집합적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돌봄(care)—기초 의·식·주거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문화 관련 영역의 개입이 가능한 영역의 “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을 위한 서비스’는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서비스 제공자)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주거·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유지와 재활·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인프라로서 안전, 환경, 주거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회의 기반 시설·여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등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지원의 사회보장시스템과 결합하여 사회 안정망이 완성되어야 한다.

<표 1> 서비스의 목표, 개입분야 및 주요내용

목표	개입분야		서비스내용
일자리 보장	고용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소개·재취업 지원 • 직업훈련·재교육 • 직업재활·특수교육
인적자본 확충 기회 평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 지원 •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지원 • 학교사회사업·청소년 보호(쉽타·학습 지원)
사회적 관계 참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 여가지원·문화생활 • 가족상담·가족생활교육 • 이동지원 • 교정 사회사업 • 국제결혼이주자 등 외국인지원
신체적·정 신적 건강 확보	교육	돌봄 보호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 방과 후 교육 • 입양·가정위탁 • 위기 개입· 학대 보호 • 수발서비스·일상생활지원·장애인활동 보조
	보건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관련서비스 •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 방문보건·건강지원·예방·건강교육 • 의료재활 • 정신보건 • 약물, 알코올 중독
기초적 재생산을 위한 생활 보장	주거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지원·급식·영양지원 • 기초주거·시설보호·공동생활가정 • 집수리·주거환경 개선
일반 행정 및 서비스 전달	사법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서비스·옹호서비스 • 사례관리 • 정보제공·연계

4. 사회서비스바우처 개념¹¹⁾

사회서비스이용권은 흔히 사회서비스바우처(Voucher)와 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제한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회서비스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비용을 바우처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한 급여 방식이며, 수혜대상은 일정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이며, 개개인의 소득수준은 바우처 운용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된다. Friedman(1962)은 바우처에 관하여 국가가 사회적 재화(social goods)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시장에서 구입토록 하기 위해 수요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Barr은 사회적 재화 공급방식의 하나로, 개인의 소비에 관련된 선택과 사회적 재화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영역에서 일어나고, 재정은 거의 전적으로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방식이라 하였다. Daniels and Trebilcock(2005: 13)은 바우처는 특정된 수요 측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하였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의 특성에 대하여 Bradford and Shaviro(2000: 44)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바우처는 네 가지 특성을 각기 상이한 비율로 혼합하고 있다고 제시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혹은 가구 특성에 근거하여 수요자에게 보조금 지급하고, 둘째, 바람직한 범주 내에서 중범위 수준의 선택권을 부여하며, 셋째, 사업자간의 경쟁이 특징이며, 마지막으로 한계보상률 체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조금이 무한정 지급되는 프로그램은 바우처가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서비스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바우처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용권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며, 나머지 일정부분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11) 김윤수.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 제도도입 사례연구. 한국 행정 학회, 한국 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 송동 학술대회. 2007 내용 요약



<그림 2> Blaug의 바우처 나무 : 다양한 바우처 설정 모형

이러한 바우처 사업은 설계 시 적용대상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외계층의 잔여적 부문으로 설계할지 고려하여야 한다 (World Bank, 2005: 48-49). 이 서비스 수요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에 반비례되는 누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지원 대상, 지원수준, 지원정도, 서비스요금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바우처 운영시스템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효율성, 형평성, 정치적 실행가능성을 우선순위로 요구한다(Diniels & Trebilcock, 2005: 231). 이는 <그림 3>과 같은 모형으로 바우처가 각기 달리 계획될 수 있다.

		주 제	
		공공부문	민간부문
수 단	권 력	일반행정 <국가 기본 기능>	민간위탁 <안정적 서비스 공급>
	시 장	책임경영 <공적책임이 강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산업 </div> 민영화 (시장탄력적 공급)

<그림 3> 바우처제도의 위치

다만 바우처제도가 소득, 지역, 혹은 인종에 따른 사회서비스 간 차별화로 인하여 사회적 격차를 더 크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가난한 가정은 일정부분의 보조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부유한 가정은 바우처를 사용하여 더 비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보조를 제공하므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김원식 역, 2005:154). 이러한 바우처제도의 활용은 어떤 인종, 소득 등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모든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제공기관과 공급인력의 자격과 품질이 인증된 바우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바우처의 공급방식은 민간부문의 이용자와 사업자간 스스로 경쟁과 선택을 통한 메커니즘이 형성되지만, 비탄력적인 사회서비스의 공급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문들이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은 <그림 3>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민간위탁 형태이나, 바우처제도는 우측 하단의 민영화 영역과 민간위탁 영역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사업자 중심방식과 시장방식의 장·단점이 나타난다. 바우처제도는 수용자와 시장을 지향하여 소비자선택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하여 생산과 자원배분이 조절된다. 보조금제도인 바우처는 시장의 기능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진다(World Bank, 2005: 26).

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의 이용대상자에게 정부의 보조금으로 서비스 구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되므로 정부는 공공부문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우처를 사용한다(정광호, 2005).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은 경쟁을 통해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공급과 서비스내용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하며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5.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사회서비스바우처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²⁾

가. 명시적 바우처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쿠폰이 수혜자에게서 사업자에게로, 사업자에서 사업담당부서로 환류함으로써 자금지원이 완결되며, 바우처가 환류함으로써 서비스와 자금이 제한성을 띠게 되는 모습을 가진다. 수혜자의 신청에 의해 쿠폰이 지급되며, 사업담당부서가 쿠폰, 즉 바우처를 수혜자 관련부서를 통해 지급하고 제공업체 관련부서를 통해 환류를 받는다. 따라서 사업담당부서와 수혜자 관련부서의 공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수혜자 즉, 수요자의 선택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수요자 바우처라고 불리기도 한다.

외국의 명시적 바우처의 예로는 미국의 학교 교육 바우처를 들 수 있는데,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허가를 받으면 교육당국으로부터 바우처를 발급받아서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교육당국에 바우처를 제출하여 교육비를 환급받는다.

우리나라의 명시적 바우처 예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을 제공받아 사용한다.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은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학생이 방과 후 사교육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경우 명시적 바우처를 제공받아 사용한다.

12) 김진.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007, 5

나. 목시적 바우처

목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사업자에게 수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요자의 선택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명시적 바우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통상적으로 수혜자의 신청에 대하여 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명시적 바우처를 대신한다. 목시적 바우처의 사업구조는 사업담당부서가 제공업체 관련부서에 예산을 위임하고 사후 보고를 받는 형태이다. 사업담당부서와 제공업체 관련 부서의 공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제공업체 즉, 사업자의 품질유지를 비교적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자 바우처라고 불리기도 한다. 목시적 바우처의 우리나라 예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아교육지원사업, 장애아교육지원사업 등이 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은 유아들이 유아교육서비스를 일정 기관에서 받도록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아교육지원사업은 장애아들이 교육서비스를 일정 기관에서 받도록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환급형 바우처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 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명시적 바우처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즉, 수혜자가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수혜자가 일단 지출하고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제출하여 사후적으로 환급받는 경우인 것이다. 환급형 바우처의 예로서 뉴질랜드 주거보조비 제도를 들 수 있는데, 수혜자가 주택임대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을 수혜자 개인 은행계좌로 자동 이체함으로써 지원이 이루어진다. 만약 수혜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제공업체가 할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제출하여 사후적으로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환급형 바우처 예로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제공업체인 주유소 및 정유사가 할인하여 농업용 석유류를 제공하고 영수증과 신고보

고서를 제출하여 사후적으로 환급받고 있다.

라. 시장전환형 13)

정부가 유일하게 특정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해 오던 독점적 시장체제를 민간 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쟁시장체제로 변화시켜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우처의 전형적 유형이다.

마. 복지증진형

이미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적인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혹은 소외계층 등 특정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유형이다. 대부분 해당 서비스 시장이 이미 경쟁시장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 여행바우처 등을 들 수 있다.

바. 특수목적형

특수한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 농업교육 바우처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불임시술비 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 혼합형

서비스 공급 확대와 함께 고용창출 등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6. 바우처의 기본전제¹⁴⁾

어떠한 형태의 바우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다음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13)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2007

14)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도입의 의의와 가능성.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월례세미나발표자료. 1999

전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성공적인 바우처 도입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바우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즉,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자가 존재하여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우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면 시장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

둘째,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만이 현명한 소비와 사업자간의 경쟁이 발생하며, 불완전한 정보 혹은 부정확한 정보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셋째, 바우처 제도를 총괄·감독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즉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규정, 사업자의 소비자 선별행위 규제, 바우처의 유통, 사업자와의 계약, 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보장과 정보유통의 보장, 바우처 수혜자격기준 관리 등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7. 바우처 실행¹⁵⁾

가. 바우처 대상

바우처는 주로 민간 지원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 경상이전이나 지자체 경상이전 등과 같은 민간보조사업을 바우처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구체적인 바우처 대상사업의 재화나 서비스로는 식품, 환자식, 직업훈련, 보육, 문화, 여행, 도우미, 임대주택 등이 선택된다. 수혜층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그 밖의 특정 그룹이 선정된다. 바우처 대상사업은

15) 김진.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007, 5

크게 구입지원과 서비스보조로 분류할 수 있다. 구입지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우처로는 피복, 차량, 환경친화형 제품, 식품 등이 있으며, 서비스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우처로는 보육, 금연, 금주, 도우미, 교육, 고용훈련, 직업훈련, 컨설팅, 의료, 주택임대 등이 있다. 서비스 지원방식이 직접지원→바우처→현금제공의 순으로 정부의 통제는 약화되고 수혜자의 선택권은 강화되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바우처 대상사업의 후보들을 선정할 수 있다. 바우처방식은 직접제공이 품질이나 다양성에서 저조한 경우 그리고 민간시장에 사업자들이 많아 수혜자에게 현금지원으로 대체하고자 하지만 현금지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바우처의 목적은 효율성 제고, 품질 제고, 사업자 경쟁 강화, 프로그램 대체, 소비자선택의 제한, 정부예산 통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다양한데, 대상사업의 목적에 대해 제한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현금지원 대신 바우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바우처 대상사업으로 결정하기 위해 점검하여야 할 적용 기준으로는 사업자 수, 정보취득 정도, 특정성, 관리 용이성, 수혜자 만족도, 현금화 유인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바우처 설계

바우처 대상사업으로 결정되면 어떠한 바우처 방식을 이용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바우처 설계는 대상사업의 구조 파악과 그에 따른 바우처 운영 방식 결정으로 구성된다. 재화나 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업체를 사업담당부서가 직접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없거나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담당부서, 수혜자 관련부서, 제공업체 관련부서의 세 부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제공되기를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 수혜자 그룹, 수혜자 관련부서, 제공업체 그룹, 제공업체 관련부서 등이다. 수혜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결정해야 할 항목으로는 수혜자 자격,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또는 선정 우선순위, 신청 기한 후 선착순 허용 여부, 중복수혜를 받을 가능성 여부 등이 있다.

사업구조도를 통해 파악된 대상사업 서비스의 수급현황을 보고 바우처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바우처 운영방식의 결정은 각 개별 사업마다 바우처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된 유형결정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금화 유용 방지와 품질 유지는 개별 사업의 바우처 유형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제 바우처 운영에서는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는 것과 바우처의 현금화를 막는 것 간에 역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혜자 그룹과 제공업체 그룹에 대한 사업담당부서의 접근성, 정보 그리고 관리 측면의 용이성을 중심으로 바우처 운영방식을 설계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담당부서와 제공업체 담당부서가 동일하거나 업무 간 연계가 큰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더 용이하므로 묵시적 바우처를 선택한다. 이와 달리 어떤 경우에는 환급형 바우처를 적용해야 할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사료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장의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 사료비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국토해양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의 경우 배합사료를 사기 전에는 누구를 지원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매 이후에 환급해주는 환급형 바우처를 적용하기로 한다.

이처럼 바우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는 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바우처의 명시적 도입 여부, 둘째, 서비스가격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서비스구입과 관련된 조세지원인지 여부, 셋째, 전체 한도액 또는 개인별 한도액의 여부, 넷째, 본인부담액 또는 본인부담비율의 여부,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치의 여부, 여섯째 대상사업 즉, 프로그램의 목적과 원칙 등을 고려해야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다. 바우처 실행

바우처 대상사업의 실행에서 사업담당부서, 수혜자 관련부서, 제공업체 관련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사업담당부서는 먼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결

과물로 제시한다. 또한 중복특혜의 배제를 위해 개인별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 및 개인의 신청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신청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른 평가지침의 수립도 요구하여야 한다.

수혜자 관련 부서는 수혜자에 대한 총괄적인 자금지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자격자를 파악하여 명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명단을 시일 내에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제공이 취소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혜자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과 수혜자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 관련부서는 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총괄적인 자금지원을 파악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대한 규제 전반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유자격자를 파악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참여업체 명단을 시일 내에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된다. 그리고 제공업체 선정기준 또는 선정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묵시적 바우처의 경우 자금사용범위의 제한이 지켜지는지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자금제공이 취소되는 경우 처리에 대한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상의 바우처 대상사업 관련 사업담당부서, 수혜자 관련부서, 제공업체 관련부서의 역할을 숙지하면서 바우처 운영방식체계를 완성한다. 이때 운영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운영방식을 명확히 한다.

바우처를 이용한 사업을 실행할 때에 우려되는 것은 바우처의 제한성이 유지되었냐는 것이다. 목적된 서비스가 제한된 수혜자 층에게 제공되었다면 바우처는 그 역할을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목적에 사용되도록 주었거나 허용한 바우처가 잘못 유용되어 목적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바우처를 다시 설계하여야 한다.

바우처 유용의 형태는 바우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묵시적 바우처의 경우 수혜자의 수에 비례하여 사업자에게 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혜자의 수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서비스 수급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는 공급시설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명시적 바우처의 경우 언급한 부작용 외에 수혜자가 바우처를 전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매는 수혜자 적용이 잘못된 것에 기인할 수도 있고 현금화에 대한 수혜자의 선택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수혜자군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재설계하여 목적된 수혜자에게 바우처가 지급되게 조치하여야 한다. 후자인 현금화 유인은 주기적으로 서비스 수급을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요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은 전산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 수혜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청소년 고용훈련바우처 프로그램은 수혜자와 제공업체 모두가 전산망을 통해 바우처 및 서비스제공 신청이 이루어진다. 뉴욕 주의 경우 사업담당인 아동가족서비스국이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및 자금제공요건을 공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과에서 유자격자를 파악하여 명단을 제출하기 때문에 적정 수혜자층의 확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담당부서와 수혜자관리부서의 유대는 명시적 바우처를 수행하고 사후관리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된다.

라. 바우처 효과¹⁶⁾

1)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바우처로 인해 가장 큰 효과는 공공과 민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공화를 거치지 않은 민영화’와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는 공공의 재정지원과 행정규제 외에 사실상의 역할분담이 없었다. 이는 공공이 재원을 제공하고 민간이 사업을 수행하는 하향식의 단순한 공급체계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우처’ 사업의 경우는 수요자와 수요자의 선택이 수요·공급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여 공급체계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

16)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2007

사업의 시작점이 기존에는 재정지원이었다면 ‘바우처’ 사업의 경우는 수요자의 선택이 시작점이 된다. 수요자의 선택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요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우선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공급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바우처’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이다. 둘째,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공급기관이 존재하더라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수요자의 취향 및 수준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겠지만, 이전단계까지 충분한 정보 제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사업의 품질관리. 다양한 공급기관 및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전반적으로 사업의 품질이 떨어진다면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득이 없다. 따라서 사업의 품질이 일정 수준이상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요자 선택권의 보장 및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공급기관 다변화, 충분한 정보제공, 사업의 품질관리 필요성은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요구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공공만의 혹은 민간만의 노력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공공, 사업수행-민간’ 식의 단순 역할 분담이 아닌 기능중심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정보제공은 공공이 수행하고 사업의 품질관리는 민간이 수행하는 식의 단순분담이 아닌 같은 품질관리 영역 안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마. 서비스 공급·지급 방식의 다양화

서비스 공급방식 및 지급방식이 다양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급방식은 공공을 통한 현금이전과 민간을 통한 현물이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인 ‘바우처’의 도입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급전달체계와 지급방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전달체계 측면에서 사례관리 및 ‘바우처’ 전담기관의 출현이 필요하다. ‘바우처’ 전담기관의 경우 앞서 ‘바우처’의 생성, 환전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말한다. ‘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로서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전담기구가 없는 바우처제도의 도입은 사업자 중심의 관행으로 말미암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바우처’ 전담기구의 예로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인 행정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정측면에서 볼 때 바우처 제도가 확대될수록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업무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기관별, 영역별 사례관리체계로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는 영역별, 기관별로 사회복지서비스가 분절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관리서비스의 표준기준이 미확립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례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 또는 체계의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는 ‘사례관리 거점기관’의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례관리 거점기관이란 단일창구를 통해서 사정, 사례관리, 연계와 조정이라는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전담하며 지역사회 각 기관이나 자원을 연계하거나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마케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기관이다. 우리의 여건에서는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관리 거점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 지위와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근거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더불어 심층적인 논의와 연구 및 정책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의 다양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우처’ 자체가 지급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례관리전담기관과 바우처전담기관과 같이 ‘바우처’가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

반들의 조성이 지급방식을 다양화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바우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바우처’ 전담기관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구축으로 서비스지급방식에 있어서 금융과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지급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위와 마찬가지로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통합사례관리센터를 통한 정보의 누적 및 ‘바우처’ 전담기구의 전문화가 전제된다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 휴대폰결제 등 우리나라의 앞선 IT기술과 기반을 토대로 산업전반에서 구현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바우처’와 접목될 것이다.

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민영화 논쟁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민영화에 대한 대립 여론은 증가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는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들어서는 논의의 수준이었던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가 정책과제로 집행되면서 구체적인 찬반 대립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바우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우처’가 시장화·민영화를 대표하는 단어로써 정책이슈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화를 거치지 않은 민영화’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이 원인이다. 그럼에도 ‘바우처’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민영화 논의 집중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한 이후에 시민사회와 언론 등을 통하여 반박성명 및 시장화·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보육분야의 ‘바우처’ 도입 시에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바우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상한제 폐지, 보육료 자율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의 요구와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료 자율화 등의 문제가 대립하여 ‘바우처’가 논쟁의 시작점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사. 대인·돌봄 서비스, 지역복지 사업의 확대

대인·돌봄 서비스, 지역복지 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우처제도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전달 방식으로서 그 특성상 대인 서비스 혹은 돌봄 서비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바우처사업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대인·돌봄 서비스 영역의 사업들이다. 위와 같은 사업들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부사업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소에서 수요자와 사업자가 직접 대면하게 된다.

이러한 대면은 지역복지와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기존의 서비스들이 지역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바우처 관련 사업들은 지역으로 서비스 장소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그동안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장소, 자원, 인력 등의 문제로 활성화 되지 못했던 지역복지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수용자와 사업자가 대면하게 되면서 인권과 같은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요자와 공급기관의 관계가 ‘바우처’를 통하여 수요자와 사업자의 일대일 관계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권문제인데, 이것은 수요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및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세밀한 사업설계와 사전 계약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8. 바우처의 문제점과 한계

가.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민영화

바우처 제도는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창출과 민간영리기업에 대한 들

봄시장 개방, 복지예산의 삭감 등과 같은 시장 및 재정논리로 접근된다. 바우처의 올바른 순기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 혹은 제공기관이 내놓은 상품에 국가가 정한 바우처 생성기준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지불하면 바우처가 생성되고 발생한 바우처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는 제공기관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의 역할로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급의 통제를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많은 제공기관을 관리할 수 없으며 이를 바우처 이용자가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사회복지영역의 서비스도 시장경제의 논리로 적용이 된다면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

나. 열악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바우처제도의 민간시장부분에 있어서의 과열경쟁은 필연적이며, 제공기관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려 한다. 바우처는 시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시간제 노동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공기관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기간이 현행대로 1년이기에 이들의 계약기간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아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일에 대한 성취감 및 동기유발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며,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질적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분배 문제의 발생

바우처 제도는 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시간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였다면,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무상 또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머지 이용자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영역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성만을 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국민 대다수가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는지의 의문이 발생한다.

라. 서비스 질의 문제

사회서비스 근로자(활동보조인)의 개인적 성향과 조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관별 및 지역별로 각각의 특징적이며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성은 서비스 질 관리가 잘 조절되어진다면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에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2절 국내 바우처 사업 현황 분석

1. 전반적 현황¹⁷⁾

국내의 경우 아직 바우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소비자 만족도 제고, 예산절감, 특정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부의 교육훈련카드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 5세 무상보육·교육 프로그램이 각각 지난 1998년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나 여행바우처의 경우 저소득층 문화향수기회의 확대 그리고 관광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바우처와 여행바우처에 대한 정부예산이 삭감되어 복권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되고

17)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5권1호

있다. 또한 농림부의 친환경교육바우처도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근래 정부는 정책수단으로 바우처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정부 각 기관이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기획예산처에서의 경우 바우처를 예산통제나 절감차원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예산배분과 연계하여 각 부처에 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바우처 사용이 두드러진다.

특히 방과후수강군은 교육청 차원에서 그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를 이용해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다. 예를 들면,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도우미, 산모도우미, 방문보건 등에서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상향식 접근방식에 근거해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에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바우처를 이용한 사회서비스 묶음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복지수요의 필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보임. 방과후수강권 뿐만 아니라 안성교육청의 과학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이다. 중소기업처 등 정부의 기술자원사업에도 바우처가 사용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사업을 돕고 나아가 고가의 연구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하향식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도별 현황¹⁸⁾

가. 직업훈련카드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등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여 출결관리 및 훈련 현황을 전산관리하고, 훈련비, 훈련수당 계산 및 관리의 온라인화를 위한 행정전산화 시스템이다.

2) 추진경과

〈표 2〉 직업훈련카드제도 추진 경과

기간	내용
1998년 09월~1999년 11월	대전, 천안지역 시범운영
1999년 12월~2000년 11월	충청도지역으로 확대
2001년 03월~2001년 11월	광주, 전라, 제주도 지역으로 확대
2001년 12월	전국 실업자훈련으로 확대 적용
2003년 01월	고용촉진훈련, 자활훈련, 여성가장훈련, 정부위탁훈련까지 대상훈련 확대

3) 실업자 직업훈련 수혜대상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실직자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직업훈련 상담을 받은 사람, 또는 훈련 기관에 따라 선발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장기실업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선발

18) 유한옥,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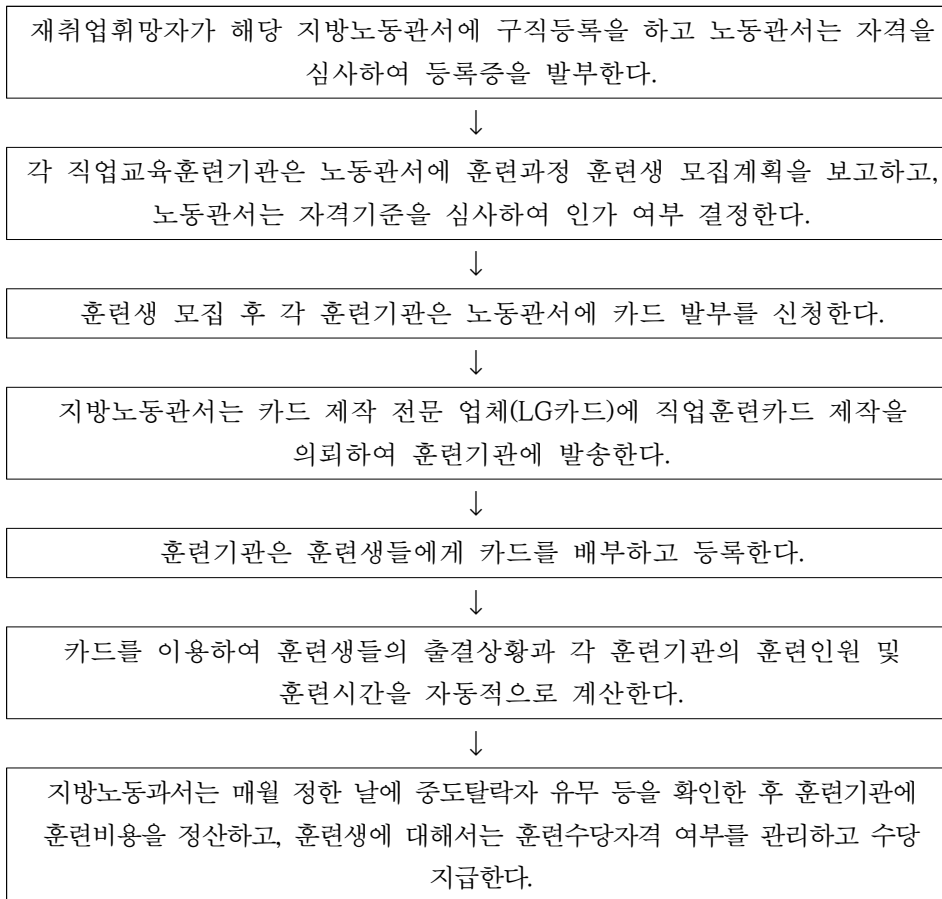
한다.

4) 지원내용

훈련 기관에 정부에서 훈련비 지원을 하며 훈련생에게 식비, 기숙사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5) 운영절차

<표 3>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 절차



6) 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한 교육환경 도표¹⁹⁾

<표 4> 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한 교육환경

<p>구직등록 신청 (직업훈련카드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이직자로서 재취직훈련을 받고자하는 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직등록과 동시에 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지방노동관서는 직업훈련카드 수급자격 여부 확인
<p>직업훈련카드 제작 (전문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카드 수급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카드제작 전문 업체에 직업훈련카드 제작 의뢰
<p>직업훈련카드의 발급 (지방노동관서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카드의 발급
<p>교육훈련등록 (대상자→ 교육훈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카드 수급자는 원하는 훈련기관에 직업훈련카드로 등록
<p>훈련 실시 (교육훈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한 출결석 상황의 체크 훈련인원·훈련시간 등은 자동적으로 계산
<p>훈련비용 정산 (지방노동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노동관서는 매월 정한 날에 중도탈락자 유무 등을 확인하고 훈련비용을 정산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훈련수당자격 여부 권리)

19)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시설 바우처제도 모형개발-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0. P.65

7) 시행 현황

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계산과 지급이 자동화됨에 따라 편리성이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감소된다. 카드리더기의 보급이 거의 완료된 상태(2003년 기준 2,913 보급)이며,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지속적 개편 추진결과 취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중도 탈락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5〉 카드리더기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액	1,533	651	562	83
집행액	529	374	399	54
이월액	125	-	-	27
불용액	879	277	163	2

자료 : 노동부(2005a)

〈표 6〉 실업자 직업훈련 현황 (단위 : 천 명, 억 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 원	222	189	152	99
예 산	3,549	3,235	3,174	2,609
취업률	43.1	37.9	43.5	34.6
중도탈락률	30.8	19.4	22.3	14.5

자료 : 노동부(2005a)

8) 평가 및 개선방향

현행 교육훈련카드 제도는 통상적인 바우처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 제도는 훈련생들의 훈련기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훈련 참석 여부와 훈련기관이 훈련인원 및 훈련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 훈련비용 및 수당 정산의 자동화를 통해 행정적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기존 실업자 교육훈련체제에서도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므로 선택권이 추가 확대된 것은 아니다. 또한, 훈련카드를 훈련생 개인에게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 기관에 일괄 발급해줌으로써 훈련생의 훈련기관 선택권에 제약이 존재이다.

따라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훈련생들의 훈련 참여를 제고하며 훈련생과 훈련기관간의 결탁을 통한 부정적인 훈련비용의 누출을 예방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지만, 훈련 기관들 간의 원활한 경쟁 유발을 통한 전반적 직업훈련의 질 향상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1990년대 말 다양하게 연구되고 모색되었던 교육훈련 바우처제도가 본연의 의미가 축소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²⁰⁾

통상적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가격도 고려하여 결정하는 데 반하여, 현 직업훈련 제도는 훈련과정별 1인당 훈련비용 일체를 해당 훈련 기관에 직접 정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훈련생들이 훈련 기관을 선택할 때 훈련서비스의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

훈련 기관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은 노동부가 정한 훈련 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훈련 직종(분야), 인원, 시간별로 상세화되어 있다.

통상적인 바우처의 경우 정해진 바우처 금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통제하지만 현 제도는 상기한 훈련비용 단가를 통한 직접적 통제 형태를 띠고 있다. 훈련 기관들간의 합리적인 가격경쟁을 통한 교육훈련서비스의 전반적 질 향상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훈련비용의 자율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제도가 바우처 고유의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서비스 시장의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훈련서비스가격 자율화 및 훈련생

20) 노동부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직업훈련제도들 중에서 묵시적 바우처 성격을 가진 것 들로는 자활직업훈련,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새터민직업훈련 및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 두 제도에서는 훈련기관이 정부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선정되므로 훈련생들의 훈련기관 선택권이 더욱 제한되어 있는 실정

들의 추가비용 지불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훈련서비스 소비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훈련생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 훈련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 호주의 고등교육비용 장기용자제도처럼 지불능력이 없는 훈련생들에게는 장기저리의 용자를 통해 비용지불을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나. 만5세 아동 무상보육·교육제도

1) 도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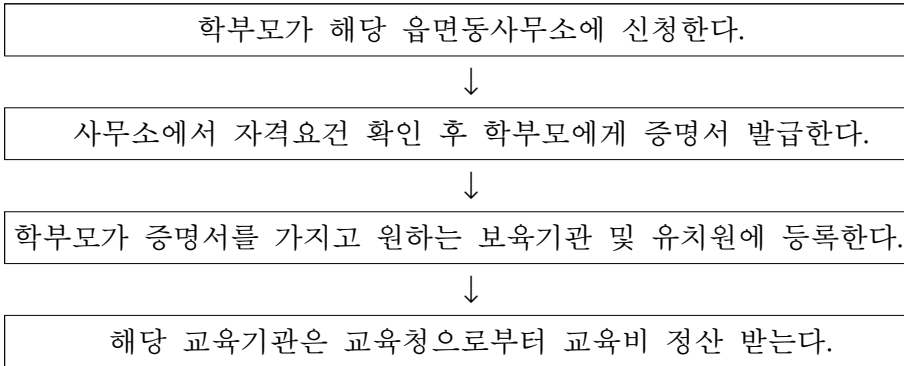
저소득층의 유아교육 수혜를 제고를 통한 교육출발점 평등 구현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저소득층 유아들의 양질의 사립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지원을 강화하며, 공립기관들에 경쟁심을 유발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경과

<표 7> 만5세미만 무상보육교육제도 경과 과정

기간	내용
1999년 6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
2000년 2월	농어촌지역세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사업명도 「만 5세 무상 교육비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2003년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수혜자 선정
2004년	저소득층 만3,4세 아동에게도 바우처 적용
2005년	사설학원도 바우처 수령기관으로 포함.

3) 운영절차



〈그림 4〉 만5세미만 무상보육교육제도 운영절차

4) 수혜자격조건 및 지원 금액

수혜자 자격 조건은 소득이 가계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아동(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272만 원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인 15만 3천 원 지원한다.

5) 현황

2005년 현재 만 5세 아동의 30%가 혜택을 받고 있다.

〈표 8〉 지원아동 비율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4세 보육료/교육비 지원 아동 비율	3.5	4.8	6.9	12.0
(보육시설 이용 아동 대비)	(16.6)	(24.3)	(31.5)	(41.5)
(유치원 이용 아동 대비)			(10.2)	(13.1)
5세 무상보육·교육 아동 비율	16.8	20.9	21.0	30.0

자료 : 나정(2005)

초기에는 보육시설 선택비율이 높았으나 현재 유치원 선택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공립과 사립의 선택비율도 비슷하다. 유치원의 시설/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48개 학원도 바우처 수령기관에 포함한다.

6) 평가 및 개선방향

저소득층 조기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여성들의 안정된 경제생활 영위에 기여한다. 5년 정도 시행했으므로 체계적인 정책 연구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질의 보육기관에 수요자들이 몰려서 시설용량이 부족한 경우 시설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기관 자체에만 맡길 것인지 혹은 정부가 지원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육기관의 경우 정부로부터 시설지원을 꾸준히 받고 있는 국·공립 보육기관의 질이 사립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으므로 이 기관들에 보육서비스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육기관 선택권의 보다 원활한 행사와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촉진을 위해서 보육료 자율화의 필요성 제기한다.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사립기관들의 자율적 시설 개선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중소득층 이상이 선호하는 양질의 사립보육기관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현재 국·공립 보육기관으로의 몰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보육료 자율화시 사설기관들의 보육료 인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바우처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경우 저소득층 아동들의 양질·고가의 보육기관 이용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육료 자율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것과 같은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만 0~4세 보육지원제도

1) 개요

저소득층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소득계층(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991년 법정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고 1992년에는 차상위 소득층으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보다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2) 소득계층별 소득인정액

〈표 9〉 만 0~4세 보육지원제도 소득계층별 구분

법정 저소득층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기타 저소득층	2층	저생계비의 120% 수준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수준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

〈표 10〉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2005년)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²⁾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층	109만 원 이하	136만 원 이하	156만 원 이하	177만 원 이하
3층	150만 원 이하	170만 원 이하	190만 원 이하	210만 원 이하
4층	184만 원 이하	204만 원 이하	224만 원 이하	244만 원 이하

* 영·유아와 생계를 부모, 형제·자매 및 (외)조부모

3)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액

계층별로 차등화된 지원율에 의거하여 보육료 지원한다. 그리고 연령별로 법정기준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즉 바우처 금액이 계층별/연령별로 차등화된다.

2)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할 때마다 20만원씩 증가

〈표 11〉 소득계층별/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구분	지원 비율	연령	지원액(원)	비고
1층	100%	0~1세	299,000	법정소득층
		2세	247,000	
		3~4세	153,000	
2층	80%	0~1세	239,200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2세	197,600	
		3~4세	122,400	
3층	60%	0~1세	179,40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세	148,200	
		3~4세	91,800	
4층	30%	0~1세	89,700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이하
		2세	74,100	
		3~4세	45,900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05)

4) 기타 보육료지원 제도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가계소득 평균 이하의 가정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2명 이상 보낼 때 둘째 이상의 아동에게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의 경우 320만원 이고 1인 증가마다 20만원씩 증가한다. 0~1세는 6만원, 2세는 5만원, 3~5세는 3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 0~12세 취학 전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월 29만 9천 원을 지원한다.

기타보육료는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취학아동이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하며 정부지원다가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라. 문화바우처 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복지고급화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사회적 권리인 문화·예술 향유권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계층에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준다. 문화소비의 계층 간 차별성 완화 및 문화 분야로의 긍정적인 산업연관효과 기대한다.

2) 현황

총예산 4억 원으로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기로 계획되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저소득층 일반 등 총 1만 8천 명 지원한다. 5개의 비영리단체를 시범 주관사업자로 선정하며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메세나협의회, 대구곰두리봉사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되어 있다. 1인당 3만원 이내의 쿠폰을 발급해주고 주관사업자가 제공하는 국악, 오페라, 뮤지컬, 연극, 영화 및 예술 공연서비스를 소비하게 한다.

3) 평가

적절한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문화경험 여부가 중요. 과거 문화향유로부터 소외되어왔던 수혜대상자들이 제대로 문화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려면 원활한 정보 유통과 문화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다. 선정된 5개의 주관사업자 중 지역독점적인 성격을 띠는 기관들이 있어서 문화서비스 사업자 간의 유효한 경쟁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업자 혹은 이익단체의 보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기존의 문화·도서상품권의 할인 지급 등 정책대안과의 엄밀한 비교를 통해 확대 실시 여부의 판단 필요하다.

마. 여행바우처제도

1) 도입 배경 및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광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여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통해 지방관광 활성화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사업개요

사업명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여행경비지원사업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사업후원을 한다. 사업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주관한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2월 약 1년간 실시되며 지원인원은 120,000명 내외로 소요예산은 20억 원(여행경비 18억 원, 사업 진행비 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3) 세부사항

수혜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급여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산발(약 1만 2천 명)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체 일괄 신청 또는 근로자 개별 신청하며, 참여업체 및 여행상품은 전체 국내여행 취급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국내여행 상품이다. 경비부담은 정부가 여행경비의 40%를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소속 사업체와 근로자의 비용부담률은 각각 30%이다.(근로자 개별 신청 시 사업주 부담금 30%를 근로자가 부담 가능) 경비지급방법은 근로자는 해당 상품가격의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여행사업체에 납부하고, 여행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국가부담액을 매달 1회씩 납부를 요청한다.

4) 평가

당초 시행안보다 개선된 바람직한 형태(월 급여 상한 및 국가지원비율 인상, 여행상품 선택폭 확대 등)로 시행 중이다. 문화바우처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로써 복지고급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여행 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시범시행 결과 평가 후 확대시행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바. 친환경농업교육바우처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이 필요하다. 다수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하고, 농업인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의 시범을 도입한다.

2) 기본방향

기존의 친환경농업단체 회원 중심의 재교육에서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일반농가로 확대한다.(수요자집단 확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협대, 충북대, 전주대, 경상대 5개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요자 맞춤형의 교육을 유도한다(사업자집단 확대).

3) 세부사항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인증 농가 수, 전년도 교육이수 농가수를 기준으로 20여개의 시/군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여 약 4,5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범·추진되고 있다.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계획의 일

부분으로 시행되며 국고보조금 선 지급/후정산의 기존교육방식(2억2천만원:63%)과 바우처제도(1억3천만원:37%)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기존의 친환경농업교육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었다. 교육비 기본단가는 정부의 ‘교육비 지원 기준’에 준해서 결정한다. 초과액은 농가가 자비용으로 부담한다.

교육과정별로 교육비 단가가 다르므로, 바우처에는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4) 평가

연말 성과 평가를 거쳐 전체 친환경농업교육제도로의 확대 여부 검토한다.

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제도

1) 배경 및 의의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저 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이다.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복리를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2006년도부터 시행 예정이다.

2) 수혜대상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정이 수혜대상이며 해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수는 약 1만 7, 300명 (총 출생아수의 3.6%)이다.

3) 지원내용 및 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이며, 지원 대상가정에 바우처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통상 산후조리기간 2주(14일)를 원칙으로 한다. 1인당 지원액은 30만 원(기초생활보장제도상 해산급여 수준 적용)이다.

4) 서비스 제공자(도우미) 선정·관리방향

공공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추진 예정이다. 도우미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고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으로서 이 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자로 선정한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5) 소요예산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52억 원(1만 7,300명 X 30만원)이며 국고 38억 원 및 지방비 14억 원(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40%)을 예산하고 있다.

6) 평가 및 개선방향

현재 검토 중인 제도는 복리증진, 출산을 제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제도의 목적이 지나치게 다양하다 점이다. 이 중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은 서비스 소비자의 원활한 선택권 보장과는 상치된다. 출산도우미라는 직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단순 근로직에 비해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단기간의 교육 및 훈련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산후조리서비스가 보장되기 어렵다. 서비스 사업자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산후조리기관

으로 대체함으로써 산모·신생아로 하여금 원활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도의 정책목적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복리증진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현황

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현황

1) 일반현황

〈표 12〉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연혁

연혁	내용
2007년 2월 28일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 지불·정산 기능위탁 협약 체결.
2007년 3월 1일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발족
2007년 12월 24일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재단법인 설립허가

주요기능으로는 사회서비스이용권 통합시스템 운영 및 전자관리방식 개발(시, 군, 구 일선공무원과 연계 : 장애평가, 복지사정 등 평가)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지불·정산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현재 국민은행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Call 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 접수 평가 및 반응을 통해 현장조사 실시를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육성과 산업화 전략수립, 성과관리, 서비스 품질제고 등 연구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교육하며 홍보를 지원한다.

인원조직현황은 1처 5팀 총무, 사업운영, 정보지원, 연구조사, 대외협력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이후 5팀을 3국(보육국, 사업지원국, 경영지원국)으로 변경 예정이다. 인원은 23명이며, 예산은 2,943백만 원이다.

2) 전자이용권 통합정보시스템 구성

통합시스템(사회서비스관리센터 역할)은 발급대상자 확정통보, 신청, 발급(지불정산 데이터 관리)이며, 행자부와의 연계 필요한 시스템이다.

3) 전자이용권의 지불결제 자동화시스템

결제방식은 서비스 이용 시 수용자 사업자간 상호인증을 통한 결제로 이루어진다. 지불결제는 도우미가 “도우미카드”와 “휴대단말기(개인정보유출방지)”를 보유하며, 도우미카드는 공용도우미카드, 도우미카드가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은 후 “이용권카드”로 결제한다.

나.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사업개요('08)

사업 직원은 451,000명이며, 예산으로 14,167억 원(국고+지방비)이 책정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의 사업 종류는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산모신생아, 가사간병(-간병개념강화), 산전산후서비스('08.12 시행)가 있다. 노인돌보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가구평균소득 상위의 노인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며, 일정재산, 자녀 또는 보호자가 있으나 돌보는 환경이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는 보편형과 맞춤형이 있으며 보편형에는 소득구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취학아동독서지도, 비만아동건강관리가 있다. 맞춤형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지역마다 지원하는 서비스 다양하다.

다. 서비스제공기관 및 인력현황

〈표 13〉 서비스제공기관 및 인력현황

영리	비영리	국가 및 지자체
개인	지역자활센터	국가 및 지자체
	사회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영리법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기타 비영리단체 및 법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	

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특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특성은 중앙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등의 복지서비스를 발굴 및 선택한다는 점이며, 기존 복지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표 14〉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특성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기존 복지서비스
대상 집단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기초수급자중심
선정기준	욕구평가 (Need assessment)	자산조사(Means-Test)
가격구조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액
서비스개발	수요자	정부 또는 사업자
가격통제	No	Yes
품질관리	자율경쟁	사전규제
국가보조	포괄보조	개별보조

마. '07년 사업실적 소개

1) 종합평가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사업은 짧은 준비기간(2개월), 처음 시행된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사업초기의 우려를 불식하고 소비자 및 사업자, 관리자 등으로부터 점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객만족도 90%이상).

2) 주요 결산내용

e-바우처 카드 발급현황은 2,743천명('07.5)에서 357천명(' 08.1)이며, e-바우처 이용자 수는 전체의 97%인 343천명(전체 이용자 357천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e-바우처 서비스제공기관은 862개소('07.5)에서 1,320개소(' 08.1)이다. 결산 내역 중 미사용된 내역은 서비스 이용자 수의 점증적 확대, 예산낭비 차단, 사망·중도포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전자이용권 서비스 이용자 현황

전자이용권 카드 현황은 '07년 391천명 신청자 중 386천명이 대상자격자이고, 이중 358천명에게 정상적인 카드 발급(발급률 : 93%)이 되었다. 돌봄 서비스는 2,743명에서('07.5) 37,058명으로(' 08.1), 지역혁신사업은 22,175명('07.8)에서 321,678명(' 08.1)으로 증가하였다.

이용권 이용자 현황은 이용권 적합대상자 386천명 중 서비스 이용자 357천명으로 343천명은 전자이용권으로 14천명은 수기청구로 결제(전자결제 97%)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전자이용권 이용률의 원인으로는 사업이 잘 안착되었고, 사업에 대한 이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수기청구를 사용하는 사유로는 정보입력오류, 기관간 원장 상이, 본인부담금 미납 등이 있다.

4) 전자이용권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07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자체별 운영사업 당 최소 2개 이상 지정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관간 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한다. 지정현황은 862개(‘07.5)에서 1,320개(’ 08.1)로 증가하였다.

〈표 15〉 이용권 사업별 제공기관 현황

구분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CSI
제공기관현황	479개	407개	434개

※ 서비스제공기관 중 지자체별 중복지정 기관은 단수로 표시

5) 이용권 이용등 결산 현황

이용권 생성, 이용, 환급액 현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은 ‘07년 이용권 결제율이 89.3%(생성액 99,917백만 원, 이용액 89,243백만 원)이었으며 이용권 결제 89,243백만 원 중 e-이용권 결제가 87,197백만 원(97.7%)이었다. 미결제 사유는 서비스 중도포기, 전출·전입, 자격 중지, 사망 등이었다.

〈표 16〉 ‘07년 주요 사업결산 현황

구분	생성액	이용액	환급액
합계	99,917(100)	89,243(89.3)	10,674(10.7)
정부지원금	96,167(100)	85,707(89.1)	10,460(10.9)
본인부담금	3,750(100)	3,536(94.2)	214(5.8)

6) 이용권 이용 등 결산 현황

지방자치 단체 예탁금 관리 결산 현황으로는 232개 지자체에서 3대 이용권 사업 135,004백만 원 예탁하였다. e-이용권 생성액 96,167백만 원이

나, 실질적인 사용액은 85,707백만 원으로 예탁액 대비 63.4% 집행되었다.

지자체 예탁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 현황으로는 지자체 예탁금 환급금이 49,296백만 원이 환급되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1,128건 214백만 원 발생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전자이용권 이용자 수가 점증적으로 증가(1,646명/4월 → 283,267명/12월)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일부가 이용권을 미사용(전출입, 서비스 이용포기 등)하였다는데 있다.

개인별 환급계좌 오류 정정, 일할계산 등을 통해 개인계좌에 입금 완료 되었으며('08.3) 정확하고 신속한 정산으로 「전자이용권 사업」 신뢰구축 하였다.

4. 국내 현황표

종류	시행시기	주관부처	정책목표	수혜대상	사업자	바우처금액	지불형식	관련 법령
직업능력개발 (여성보육 지원포함)	*	노동부	근로자고용 안정보장/ 기업의고용 조정지원	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교육기관 및 소속직장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방과 후 수강권	2006년 2학기 시범실시	시도 교육청 자율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 초등학생	각급 학교	정액 수강금액 (시도교육청 자율 결정)	명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교육복지지원국 소관
만 5세 무상 보육교육	1999년 9월	여성부/ 교육과학 기술부	취약계층 보육교육지원 사업자 경쟁력 제고	가계평균 소득 80% 이하	국공립정부인가 보육기관 유치원사립학원	정액 : 15만 3천원	암묵적	-
만 0-4세 보육료 지원	1991년 시범시행 2004년 확대 시행	여성부	취약계층 보육지원 사업자 제고	가계평균 소득 60% 이하	국공립정부인가 보육기관 유치원사립학원	소득계층별 아동연령별로 차등지원	암묵적	-
문화바우처	200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문화향유권 확대	저소득 장애인/노인 (18천명시범시행)	정부 선정 5개 비영리단체	정액 : 5천만 원이하	명시적	-

종류	시행시기	주관부처	정책목표	수혜대상	사업자	마우처금액	지불형식	관련법령
여행마우처	200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문화향유권 확대	중고기업 근로자 (선착순 12명)	국내여행 취급여행사	여행경비의 40% 15만원이내	입목적	-
친환경농업 교육마우처	2005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기관 경쟁력 제고/수강생 만족도	우수지역 농업인 (45백 명)	5개 교육기관	교육과정별 기본단가설정	명시적	•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업인턴제	2005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부문 인력약성	미취업자 및 농업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격기준을 통과한 농가	일인당 매월 50만원 최대 연 500만원	목시적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생산	2004년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어업 기반구축	희망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배합사료 사업자	수조리양식장: 290원/kg당 가두리양식장: 320원/kg당	환급	• 지방해양수산청시행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국가유공자 LPG차량지원	2001년	국가보훈처	특별소비세 인상분보조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LPG사업자	240원/리터당	목시적	-
중소기업 컨설팅	1999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지원	유자격 중소기업	지역별 선정된 지문위원	1회 50만원한도 업체별 최대 4백만 원	목시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종류	시행시기	주관부처	정책목표	수혜대상	사업자	바우처금액	지불형식	관련 법령
기술바우처	2007년 시범도입	중소기업청	수요자중심 기술개발	유자격 중소기업	전문기관 바우처 발행대학 연구기관기술 개발	100억 원 업체당최대 1억 원지원 총 금액의 75% 지원	명시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장비 사용료	2007년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지원	유자격 중소기업	3천만 원 고가장비 50대 이상을 갖춘 연구기관 및 대학	전체 장비 사용료의 60%를 지원	묵시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주택바우처	2009년 실시 예정	국토해양부	저소득층 임차인 임대료 지원	저소득 가구	민간 주택임대업자	미정	명시적	-
저소득 바우처	2007년 6월	경기도	저소득 가구 생활지원	경기도내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353만 2천원 이하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 특정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40억 원 경기도 내 1만 5천 가구 대상	명시적	-
노인복지 바우처	2007년 예정	서울시	노인돌보미, 독거노인도우미 방문보건 등	저소득층 중병 노인	서울시와 계약한 도우미 사회기관 등	노인 일인당 월 20만 원	명시적	-

종류	시행시기	주관부처	정책목표	수혜대상	사업자	마우처금액	지불형식	관련 법령
인성마우처 과학클래스터 프로그램	2007년	인성 교육청	과학연구지원	인성교육청 관내학생	국립중앙 과학관 등 과학관련 기관	*	*	-
신생아 도우미지원	2006년	보건복지 가족부	취약계층 복리증진 출산유제고 알자리창출	둘째 아이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2007년 월평균 소득 60th이하 (4인가족 208만원) 출산가구 36,883가구 12일 지원	도우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저소득층 여성	정액 :30만원	명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언급)
불입시술지원	2006년	보건복지 가족부	출산유제고	근로자평균소득130% 이하 불입부부	전체의료기관	1일당 150만원 최대 2회 이용	묵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권에 관한 언급)
노인돌보미	2007년	보건복지 가족부	차상위층 중증노인 수발지원	빈곤선 차상위 중증노인 2만2천명	전체 사회의료서비스기관	일인당 월 20만원	명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언급)
노인부양가구 휴가마우처	2007년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부양 스트레스 해소	노인부양가구 (4인 가구 월평균	휴가관련(숙식 교통비, 시설	연회20만원씩, 2007년 기준	명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언급)

종류	시행시기	주관 부처	정책목표	수혜대상	사업자	마우처 금액	지불 형식	관련 법령
			및 여가제공	350만 원 이하	입장료 등업계	6만1,483가구 대상		관한 언급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007년	보건복지 가족부	8가지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일인당 월 200만원 지원 시 6만 9600명 수혜	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소독사업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육아용품과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저소득층 청소년대상 영어캠프, 아동 보호 서비스,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정 도우미 제공, 노인 대상 노 후설계관리 서비스 등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	2007년도 975억 원 책정	*	• 사회복지사업법

5. 국내 바우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특징²²⁾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국내 바우처 도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바우처 도입에 대한 이해 집단 간 정치적 이익에 따라 찬반세력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바우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학교선택권에 대해 전교조와 같은 반대 입장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채택이 어렵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바우처가 교육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학교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교육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종류의 바우처가 실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실행과 관련된 정부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우처가 시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주택 바우처의 경우 2007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어 실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여행바우처의 경우도 2007년도 예산을 2006년에 비해 2배 늘려 신청을 했지만 기획예산처를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반대 이유로 민간부문에 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고 있다. 문화바우처의 경우도 2007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복권기금에서 20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기존에 바우처 원리를 이용한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단지 바우처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지 않았던 정책이 존재한다. 즉,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이 보장되고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결혼여성의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환경부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체결사

22)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5권1호

업, 국토해양부의 수산물류표준화 사업 등이다.

바우처의 목적유형은 복리증진형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장전환형과 특수목적형 가진 바우처로 분류된다. 한편, 국내 바우처의 지불방법을 보면 명시적 유형과 묵시적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환급형은 적다. 시장전환형이나 복리증진형 바우처의 경우 명시적 형태의 지불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목적형 바우처의 경우 묵시적 혹은 환불형 지불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제3절 외국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입법례

1. 미국

가. Food Stamp Program

1) 개관

영양 보충 보조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²³⁾은 현재 매달 2800만 명의 식탁에 몸에 좋은 식품이 놓여질 수 있도록 돕는다. 2008년 10월 1일부터 SNAP가 연방 식품 스탬프 프로그램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향상시켜 빈민을 구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 Declaration of Policy SEC.2. 정책선언 §7 U.S.C. 2011).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제한된 식품구매력이 기아와 영양실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식품권 제도를 통해 국민의 적절한 영양수준을 유지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에 의하면, 사회복지증진과 빈민구제 이외에, 잉여식품처분, 농업경제강화, 농산물유통활성화 등을 반사적 효과로 거두고자 한다.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의 제2장 정책선언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적절한 국가 수준의 영양을 유지하고 안정시킴에 있어 식품의 이용증가가 국가 농업 분배를 촉진하며, 국가의 농업 경제를 강화함’을 선언하고 있다.

23) federal Food Stamp Program이 2008년 10월 1일부로 명칭이 변경됨.

2) 자격

식품권 자격은 가계구성원에 기초해서 가족 수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은 재정자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 가계구성원은 친척 관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함께 식품을 구입하고 요리하는 사람들이나 그룹으로, 조리시설을 공유하고 통상적으로 식료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하나의 경제단위(economic unit)로서 같이 생활하는 집단을 말한다.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격은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사회보장법에 의해 보충연금 또는 장애관련 의료보조나 일반 보조혜택을 받는 자이다(제3장 정의, (j)(1)~(3)항 노인 및 장애인). 이 외에도 퇴역군인과 그 배우자, 자녀로 영구적으로 가정에서 도움이나 관리가 필요한 자가 이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된다(제3장 정의, (j)(4)~(7)항).

이 프로그램의 강제적용대상자는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나 야간 임시 거택이 있는 경우와 통상적으로 식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이다.

노인들과 신체장애자들은 특별규정이 적용되며, 자격이 인정된 경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푸드 스탬프 혜택의 정도가 달라진다. 자산이 2,000 달러, 노인이 있는 가구는 3,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하고, 일단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해진 시간만큼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면접 인터뷰를 해야 하며,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스케줄로 잡아도 된다. 식품권 금액은 소득별 최대 식품권 할당액과 순소득의 30%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푸드 스탬프를 받는 자격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 넘지 않으며²⁴⁾,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24개월까지는 무방하다(제3장 정의, (f)조 자격기간).

24)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 SEC.3. Definitions §7 U.S.C. 2010

3)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식품권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상관청에 식품권을 신청하고 유자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정부가 무료로 식품권을 지급한다. 수혜자는 식품권을 가지고서 정부가 지정한 품목 가운데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일반 식료품상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HRA 인포 핫라인(HRA InforLine)에서 얻을 수 있다. 혜택은 ATM 카드처럼 사용하는 전자 카드로 제공된다.

4) 사업자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에서의 식품권 발행인은 ‘주 사무소가 가계의 급부금을 주기 위해서 계약하거나 일부 책임을 위임한 주사무소의 분소, 사람, 파트너쉽, 법인, 기구, 분사무소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 제3장 정의).

식품권에 나타난 액면가대로 식료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FNS 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소매 식품 판매 업소가 된다.

소매 식품 판매 업소가 되고자 하는 자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업소는 4가지 기본 식품군에서 각각 최소 세 가지 식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둘째, 커피, 차, 코코아, 탄산 및 비 탄산음료, 캔디, 조미료, 양념, 인스턴트식품을 제외한 기본 식품 판매 매출은 총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충족 요건의 확인은 FNS 직원의 수시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 5년마다 한 차례씩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면, 소매 식품 판매 업소는 7자리 FNS 번호를 받게 되며, 이 번호는 관할 FNS 사무소에서 업소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허가증(아래)도 받게 되는데, 허가증을 받기 전에는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없다.

허가증의 이전과 관련하여 업소 허가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허가증은 관할 FNS 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업소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이전한 경우, 또는 업소를 폐업한 경우, 이전에 발급된 허가증은 무효가 된다. 또한 2개 이상의 업소를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업소에 대해 별도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받은 소매 업소는 어디나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푸드 스탬프를 처리할 수 있다. 주 정부가 POS 장비 또는 인화권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 처리업체가 제공하는 상업용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업용 장비는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거래 처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상업용 장비의 경우, 주 정부가 주 정부의 EBT 시스템에 연결해 준다.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Food and Nutrition Service
FOOD STAMP PROGRAM PERMIT

FNS NUMBER:

Store Name: _____ Store Type: _____
Mailing Address: _____ Location Address: _____

Authorization Date: _____ Field Office: _____
Owner Name(s): _____ Field Office Address: _____

This permit certifies the owner(s) and business location listed above are hereby granted approval to accept and redeem food stamp benefits on condition that the acceptance and redemption of all coupons/instrument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Food Stamp Program.

THIS PERMIT IS NOT TRANSFERABLE

Any changes in the ownership, location, name of business, and/or operation void this permit. To prevent illegal use, this permit must be returned to the 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 upon any change/sale/transfer of the business or upon request by the FNS. Failure to report changes immediately to FNS may result in substantial fin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F STORE MOVES, IS SOLD/CLOSED OR VOLUNTARILY WITHDRAWS FROM THE FOOD STAMP PROGRAM, PLEASE CONTACT YOUR SERVICING FIELD OFFICE.

Issued by FNS Representative: _____ Date of Issue: _____

THIS PERMIT MUST BE DISPLAYED IN A CONSPICUOUS PLACE

<그림 5> 푸드 스탬프 허가증

5) 담당기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미국의 농림부가 연방차원에서 관장하며, 50개의 주와 콜롬비아지역, 괌, 버진 아일랜드 부족과 인디언 부족이 이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가족구성원의 크기, 수입, 자산과 기타 요소를 통해 자격과 급여수준이 정해지며, 소매점은 인가받은 후 매달 푸드 스탬프를 발행하게 된다.

농림부의 식품영양국(FNS: Food and Nutrition Service)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업소를 지정하고 일반 EBT 규정을 만든다. 그리고 소매 식품 판매 업소가 푸드 스탬프 허가 업소로 지정 받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규칙과 집행체계를 만들고, 식품권을 발행, 배분, 상환, 폐기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며,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을 감독한다. 식품권 제도 관련 행정업무 수행 및 프로그램관리와 수혜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모의사업을 수행하고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주정부(State Government)는 수혜대상자들에게 식품권제도에 관해 알리기 위한 대외적인 홍보업무와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연방정부가 정한 효율성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또한 각 주 정부는 자체 EBT 시스템을 관리하고, EBT 거래를 처리할 하청 업체를 고용하며, EBT 카드를 발행하고, POS 장비를 지급한다.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차원에서는 시, 군 식품권사무소(Local SNAP Office)가 직접 식품권 수혜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필요한 봉사업무를 수행한다. 시, 군복지사무소에 소재하여 식품권 전담사회사업가가 식품권을 신청받고 이를 처리한다. 사회사업가는 신청자가 AFDC나 SSI와 같은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러한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조사(means test)를 실시한 후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6) 재원조달

미국 연방기금으로 할당된다. (2009년 : 169억 달러)

7) 사용절차

푸드 스탬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전자 카드 형식으로 나오며 식품을 살 때 마치 은행 카드와 같이 사용하며,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푸드 스탬프 카드를 받는다.

전자 시스템의 장점은 고객의 EBT 계정에서 정확한 구매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해당 금액이 업소의 은행 계정에 입금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EBT 시스템은 일반 직불 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승인을 위해 전자 메시지가 컴퓨터로 전송되고, 구매가 승인되면 고객의 EBT 계정은 즉시 차감되고 영업점 계정에 즉시 증액 처리 된다. 영업일 완료 시점에, 모든 거래의 합산이 이루어지고 해당 금액이 송금된다. 보통의 경우 2일 이내에 은행에서 EBT 거래의 수익금을 받게 된다.

8) 정보제공

정보제공은 영양교육협력자들을 통해, SNAP는 건강한 식습관과 긍정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운다.

정보의 제공은 연방차원에서는 National Hotline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1-800-221-5689), 자격요건, 급여수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같은 세부 사항들에 관해 정보가 제공된다. 주 차원에서는 State Hotline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Online Screening Tool을 제공하여 SNAP의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FNS SNAP Eligibility Screening Tool).

9) 관리 및 질평가

연방정부차원에서 농림부의 식품 영양국이 프로그램과 규칙 및 집행체계를 만들고 식품권을 발행, 배분, 상환, 폐기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 활동을 감독한다.

주정부는 수혜 대상자들에게 식품권제도에 관해 알리기 위한 대외적인 홍보 업무와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자료를 수집, 연방정부가 정한 효율성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식품권사무소가 직접 식품권 수혜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분담 구조를 가진다.

10) 기대효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 형태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 저소득 가정에서 식료품교환권을 사용하여 필요한 식료품을 선별적으로 구입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의 선호와 관련 없이 획일적으로 식료품이 제공되어 효용성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고, 현금으로 저소득 가정에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식료품 바우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이자 특징이다.

11) 문제점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들 수 있다. 음식상품권 1달러에 대해 약 9센트의 관리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체계 및 식품권 발급과 배급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2) 관련법

Food Stamp Act of 1964를 시초로 하여 Food Stamp Act of 1977의 제정과 개정을 거쳐 2008년 공중보건법 110 ~ 246장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로 개정되었다.

나. 학교 및 교육 관련 바우처

1) 개관

학교 관련 바우처 제도는 주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장에서는 연방프로그램인 ETV와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ETV(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²⁵⁾

EVT는 입양청소년들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연방 차원의 CFCIP(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의 하부 프로그램으로 입양 연령이 지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건 및 인적 자원부의 주관 하에 각 주의 아동 및 가정 관련 기관에 의해 지원 및 시행되고 있다.

나)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²⁶⁾

미국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는 흑인인구 비중이 큰 지역특성에 기인해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군이 많다. 이에 따른 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고자 클리블랜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사립학교 및 인근지역 공립학교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1995년에 시행되었다.

수혜 학생은 클리블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3학년 이하의 학생이고 대상 학교는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클리블랜드 소재 사립학교 및 인근지역의 공립학교(유치원~grade8)이다.

25)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KDI, 2006, 34~35pp.

26) 유한욱. 위 논문. 32~33pp.

바우처 금액은 소득수준에 반비례하는 차등적인 형태로, 가계소득이 빈곤수준의 200%이상인 경우 수업료의 75%수준, 그 이하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90%수준으로 바우처 금액이 책정되며 추가지불이 허용된다. 바우처 수요가 할당된 바우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저소득층 우선의 추첨방식으로 수혜대상이 결정되는 등 매우 차별화된 교육 바우처를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다) 기타

(1) 위스콘신 주 밀워키(Milwaukee Parental Choice Program)²⁷⁾

1990년대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미국 최초의 대규모 학교 바우처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사립학교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바우처 수혜 대상은 가계소득이 연방빈곤수준의 175%이하 가정의 유, 초, 중, 고 학생이며 대상학교는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사립학교(유치원~grade12). 바우처 금액은 학생 1인당 실제교육비용과 정부가 정한 표준교육비용 중 적은 액수로 결정되며 추가지불은 없다²⁸⁾.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바우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밀워키의 공립학교 학생 약 9만 명 중에서 약 6만 명 정도였고 이 중 실제로 998명이 사립학교에 지원을 희망했다. 그러나 지원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수혜대상이 된 학생 수는 613명이었다. 93~94년에 수혜를 받은 학생이 950명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소수계 인종의 자녀(70%흑인, 20% hispanic)들이었다²⁹⁾.

DPT(The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가 학교바우처를 감독하며 각 학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DPI에 제출하고 DPI는

27)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KDI. 2006, 30-31pp.

28) 예를 들어 학교가 학생 1인당 6천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였다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는 5,785달러뿐이며, 학생에 대해 추가비용을 부가할 수 없다.

29) 이종훈. 교육훈련 바우처 및 교육훈련 카드 제도의 도입·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1998.

해당 바우처금액을 해당학교에 4회에 걸쳐 지불하는 명시적 형태의 바우처이다.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의 학교바우처는 추첨방식의 학생선발을 시행하고 있어 자의적인 학생선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밀워키 프로그램의 경우 상당수가 소수계 인종이 지원을 받았고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바우처제도 자체가 특정 종교단체 부설 학교에 대한 지원, 혹은 종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지적과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학교바우처 제도에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학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2) 플로리다 주 책무성 프로그램³⁰⁾

2000년 가을 플로리다 주정부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1999년 의회에서 통과된 플로리다의 책무성 프로그램 하에서 주정부는 플로리다 종합성취도 검사(FACT)의 학업성취도에 근거하여 학교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4년 중에 2년 동안 F등급을 받은 학교의 학생들은 4000달러까지 종교학교를 포함하여 사립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정부로부터 지원(바우처) 받을 자격을 가진다.

2) 자격

가) ETV(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

수혜대상은 CFCIP 수혜자로서 만 14세 이상 21세 이하의 입양 중이거나 혹은 입양이력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 입학 허가를 받은 고졸학력을 소지한 자로 입학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학업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연령제한은 주마다 다르다.

30) 이선호. 외국의 스쿨 바우처 제도의 적용 가능성 탐색. 2003,91-93pp. 내용 요약

대상 교육기관은 주정부가 인가한 4년제 대학교 혹은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교와 일정한 자격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1년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학교 등이 있다.

구역별로 할당된 바우처 수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경우 수혜자 선정 방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rolling-basis(선착순 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른다.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연간 5,000 달러 한도의 총 교육비용이다.

나)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의 학교 바우처³¹⁾ 수혜학생은 클리블랜드에 거주하는 Grade 3이하의 학생(공·사립 불문)이며,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클리블랜드 내 사립학교 및 인근 지역 공립학교(유치원~Grade 8)³²⁾가 그 대상이 된다.

바우처 금액은 소득수준에 반비례하며, 가계소득이 빈곤수준의 200%이상은 수업료의 75%, 1,875달러이며, 빈곤수준의 200%미만은 수업료의 90%, 2,250달러이다. 또한 추가지불이 허용 된다³³⁾.

3) 신청절차

가) ETV(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

ETV(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는 21세가 되기 전에 등록해야 하며, 23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학비, 기숙사비, 책, 대출, 생활비 등에 쓰인다. 신청은 1년에 한번 하며, ETV 양식은 매 학기별 제출해야 한다. 재신청은 online을 통해 매년 신청해야 하며,

31) 유한욱.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DI. pp.17~18

32) 미국 최초로 종교계 학교들도 포함.

33) 그러나 각 학교는 바우처 금액의 10%를 초과해서 학생들로부터 추가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new Financial Aid Release Form과 Cashier Statement를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ETV 서식은 ETV Financial Aid Release Form, ETV Cashier Statement, ETV Student Loan Repayment Instruction Page, ETV Student Participation Agreement 4가지가 있다.

ETV Financial Aid Release Form은 대상 학생이 서류 작성 후 소속 학교의 금융지원사무처(financial aid office)에 접수한다. 금융지원사무처는 COA³⁴(Cost of Attendance)와 기타 다른 대부금, 장학금 내역을 모두 작성하여 fax로 ETV에 보낸다. 이 양식은 학생들의 책정된 voucher의 필요자금 규모(Estimated Need)가 명시된다.

ETV Cashier Statement 양식을 작성한 후 학교 경리/회계사무처로 가서 제출한다. 회계사무처는 양식을 확인 한 후 FAX로 ETV에 보낸다.

ETV Student Participation Agreement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나)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의 명시적 형태의 교육 바우처는 학부모 혹은 후견인에게 발급되며, 각 학교는 학부모가 서명한 바우처를 받아 CSTO에 제출하고 CSTO는 바우처 상환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바우처의 상환은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할당된 바우처 수를 초과하여 바우처 수요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 우선의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수혜대상이 결정된다.

34) COA (Cost Of Attendance)는 등록금만이 아닌 책, 문방구, 기숙사 비용, 식대, 개인 용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각 학교에서 “올해 우리 학교를 1년을 다니려면 이러한 비용이 든다” 라고 정하여 발표를 하는 숫자이다.

4) 담당기관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의 교육 바우처 감독기관은 오하이오 교육부이며, 행정업무 담당기관은 제도 시행과 함께 신설된 CSTO(The Cleveland Scholarship and Tutoring Office)이다.

5) 재정지원

가) ETV(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

ETV(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는 연방기금에서 ETV voucher 재정으로 편성되며, 각 주의 프로그램 담당 부처로 기금이 배분된다. voucher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된 기금은 2005년~2006년 연방 회계연도에는 \$3,362,375였었다. 뉴욕주인 경우 주정부의 아동가족부(OCFS, Th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가 ETV Voucher 사업 주무부처가 되며, 계약을 통해 Orphan Foundation of America (OFA)가 주에 할당된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표 17〉 2004-2005년 EVT 제도 예산

(단위 : 달러)

California	8,519,233	Ohio	1,741,616
Florida	2,696,572	Pennsylvania	1,742,780
Illinois	2,060,822	Texas	1,766,074
Michigan	1,708,505	Others	11,851,304
New York	3,454,364	TOTAL	44,060,503

자료 : <http://www.ocfs.state.ny.us/main/policies/external/OCFS%5f2005/#LCM>

나)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³⁵⁾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의 교육바우처 예산은 주정부 일반 수입과 공립 학교 지원 예산에서 지원받는다. 2001년 현재 51개의 사립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0%가 종교계 학교이다.

6) 평가 & 질관리

가) 인디애나 주 클리블랜드

긍정적 효과는 먼저 교육의 확대를 들 수 있다. 1996년 1,994개에서 2001년 4,195개로 바우처수가 증가했으며, 둘째, 학교선택권 강화, 셋째,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립학교 이용도 증가, 넷째, 무작위 추출방식 덕분에 cream-skimming³⁶⁾이 없다는 점이다.

비용면에서도 1999~2000년 기간 동안 바우처 수혜학생 1인당 비용은 1,832달러로 공립학교 학생 1인당 비용인 4,910달러의 37% 수준에 그쳤으며, 바우처제도에 참가하는 사립학교가 정부 이외의 다른 지원기관(종교 기관 혹은 기업)을 확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부정적 효과는 Grade 4 이상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에 중·상위 소득층 학생들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학생들의 전학률이 높지 않아 미취학아동들이 주요 수혜대상이며, 학업성취도 제고효과 불확실하고,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되었고 총비용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35) 유한옥,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KDI, 2006, 32-33pp.

36) 사업자가 수요가 많은 지역에만 제공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소외지역을 양산하는 행위

나) 위스콘신 주 밀워키(Milwaukee Parental Choice Program)

긍정적 효과는 교육의 확대(참여학교수 1990년 7개에서 2000년 103개), 학교선택권 강화,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립학교 이용도 증가, 무작위로 학생을 선발한 덕분에 cream-skimming 없다는 점, 학부모의 교육 참여 증대를 들 수 있다.

부정적 효과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학교들의 참여로 폐쇄학교가 발생했으며, 홍보 부족 및 인근지역 공립학교, 차터스쿨 등 대안학교의 존재로 인해 바우처 초과공급현상 발생하였다. 그리고 바우처 예산과 공립학교 예산의 대체관로 인한 공립학교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학업성취도 제고효과가 불확실한 점들이 야기되었다.

다) 플로리다 주 책무성 프로그램

1999년에 A,B,C 등급을 받은 학교들이 2000년 읽기, 쓰기, 산수 영역의 FACT 점수에서 비슷한 향상을 보인데 반해, D등급을 받은 학교들은 거의 두 배 이상의 성적 향상을 경험했다. Greene는 F등급 학교의 최고점수 향상정도와 D등급 학교의 최저점수 향상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F등급 학교들의 최고 점수가 D등급 학교들의 최저 점수들보다 더 높은 향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즉, 이 연구에서 두 그룹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는 바우처가 공립학교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임을 제안했다.

다. 직업교육 바우처

1) 개관

「재향군인사회적응지원법(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 (통칭 G. I. Bill of Rights'))」은 1944년 제정되었으며, 수백만의 제2차 세계대전 퇴역군인들과 한국전 및 베트남전의 퇴역군인들의 사회적응을 도와 왔으며, 대한교육에 학자금을 제공하고, 미국 중류층 형성을 지원하였다.

이 법을 효시로 실직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현행 직업훈련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재향군인사회적응지원법(the G. I. Bill of Rights)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의 수백만 근로자들이 역동적인 세계경제에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직업교육 바우처로 인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발적 또는 일시해고로 인하여 일자리를 옮길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의 이직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직업교육 바우처는 연방정부가 직업훈련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불우한 성인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과 자신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경제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길 희망하는 실직근로자와 경제적으로 불우한 성인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들이 자신의 경력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단순화된 바우처시스템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직업시장 정보제공 및 근로자의 고용을 장기화시키며 또는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이직할 수 있는 유연한 직업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춘 직업훈련과 교육이 제공된다.

가) WIN(Work Incentive Program)

미국의 직업훈련 바우처는 연방정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서 JOBS의 전신인 WIN(Work Incentive program)의 일환으로 1974년~1976년간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시와 매리랜드주의 볼티모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모든 부양자녀가구 지원(AFDC)수혜자는 이 직업훈련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기관 또는 현장훈련(OJT) 어이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 바우처의 최대 사용기간은 1년으로서 8주 범위 내에서 현장훈련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일반적인 WIN훈련이수자와 비교할 때, 바우처훈련 이수자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젊은 층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은 기관에서의 바우처 훈련을, 남성과 고령자들은 현장훈련 바우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각 계층별로 훈련기관과 비용 및 탈락률과 같은 바우처제도의 효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 이후에 바우처훈련이 계속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재정 및 복지개혁이 그 이후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바우처제도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1997년에는 Snowe의원 등이 제안한 Working America Training Voucher Act가 상원에서 심의되었다.

One-Stop Career Center가 바우처 신청, 발급 등 직업훈련과 기타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 보건복지부의 JOBS(Job Opportunity and Basic Skills), 교육부의 고등교육법(the Higher Education Act)등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법안 및 제도들을 교육훈련 바우처제도를 통하여 연계·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우처제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나) 원호법(GI Bill)에 의한 훈련바우처 프로그램

1944년에 입법화된 재향군인사회적응지원법(Servicemen's Readjustment Act : 일명 G.I. Bill of Rights)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 구인들의 고등교육의 재정을 일종의 바우처방식에 의해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연방정부의 훈련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책임하의 훈련과정 및 학교의 선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민간시장의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메커니즘을 도외시하였다. 공급측면에서 민간직업훈련기관 활용이 미흡하였고, 수요측면에서 훈련수요자에게 훈련과정 또는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결여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미 의회는 「고용훈련법(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를 근거로 시장 메커니즘 반영하는 훈련바우처제도의 실험과 시행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한 것이다.

전군능력시험(AFQT; Armed Force Qualification Test)점수와 교육수준을 상수로 분석한 결과,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훈련바우처제도의 반대자의 의견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이나 소수민족의 훈련바우처제도의 활용효과가 백인보다 높게 나타났다(여기서 ‘활용효과’라 함은 개인이 훈련바우처의 활용 후 자신의 소득가능력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말한다).

훈련참여율에 있어서도 일반의 통념과는 달리 흑인과 교육수준이 낮은 전역장병의 참여율이 높았다. 또한 흑인의 참여율은 흑인이 아닌 인종의 참여율보다 높았는데, 직장알선 및 경력개발관련 상담에 있어 흑인은 공공취업알선센터에서 제공하는 정규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이러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공공직업훈련기관보다 용이하므로 상대적으로 훈련바우처를 이용해서 훈련을 받는 흑인이 직장 탐색 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전역장병의 참여율은 그렇지 못한 학력을 가진 전역장병의 참여율보다 높았다.

어느 정도 교육수준이 높은 전역장병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수준은 훈련바우처제도의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력자가 중등학교에서 훈련바우처를 이용해 교육 학력을 받는 비용과 중등학력 소지자가 고등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비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원호법의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및 근로자의 소득가득 효과는 단기적으로 볼 때 원호법을 통한 지원을 대학진학에 이용하지 않는 전역장병 중에서 풀타임으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전역 후 고용기회가 가장 열악했다. 오히려 원호법을 활용하지 않은 전역장병이나 통신교육과정 또는 현장훈련(PHT)을 이용한 전역장병이 기본적인 직업훈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지 않아서 보다 나은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원호법의 지원을 받은 직업훈련(특히 전일제 훈련)에 참여한 전역장병이 훈련 후 받는 소득은 비록 실험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MDTA의 기관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받는 훈련 후 소득보다 약 10%정도 많게 나왔다.

현재에도 Montgomery GI Bill(MGGIB)로서 계속되면서 재향군인들의 고등교육 및 훈련이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성과도 좋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 ‘Michigan Works! The Jobs Force’ 프로그램

6개 지역 고용연합인 Michigan Works! The Job Force는 미시간의 Central Upper Peninsula Service Delivery Area(SDA)의 Job Traing Partnership Act 고용훈련프로그램의 행정조직으로서 미시간 직업위원회(Michigan Jobs Commission)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바우처프로그램이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직근로자에게 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말한다. 이 바우처 프로그램은 Title III EDWAA 프로그램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은 Michigan Works! The Jobs Force의 재량에 속한다.

Michigan Works! The Job Force는 Title II 성인, Title II 청소년, Title III 실직근로자, Title IIIA 고령근로자, Title IIB 하계 청소년 고용훈련, 미시간 실직주부 프로그램 그리고 National Reserve Account Program for a Base Closure뿐만 아니라 미시간의 후생개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미시간 고용안정위원회(MESC)와 공동으로 근로자 프로파일링(Worker Profiling). 재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직업탐색을 돕는다. 바우처 재훈련은 Title III EDWAA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Michigan Works! The Jobs Forcetitmxpa의 일부이다.

바우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되는데, 여기서 바우처 수혜자란 이미 특정 훈련내용 및 교육기관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근로자로서의 프로파일링 대상자, 기본적인 재조정 서비스(basic readjustment service)를 받는 Title III customer, Title III의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목표 집단이 된다.

직업교육바우처와 관련된 법안은 Working Americans Opportunity Act로 바우처 시스템 개발로 연방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 보건복지부의 JOBS(Job Opportunity and Basic Skills), 교육부의 고등교육법(the Higher Education Act) 등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법안 및 제도들을 교육훈련 바우처제도를 통하여 연계·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우처제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2) 자격

주로 실직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인이 대상이 되며, 2년간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WIN(Work Incentive Program)은 Working Americans Opportunity Act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주로 실직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인

을 대상으로 2년간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Working Americans Opportunity Act는 종업원수가 200인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실직가능성이 높은 1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근로자에게 1인당 1천 달러까지의 훈련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1년 단위이며 민관으로 구성된 서비스제공지역이 바우처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

3) 신청절차

바우처를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정부가 요구하는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원스탑 직업센터(one-stop center)³⁷⁾가 바우처 신청, 발급 등 직업훈련과 기타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Working Americans Opportunity Act의 규정 하에서 자금을 받은 각 서비스제공지역은 구직자, 근로자, 사업체들에게 2p102조 (b)(2)의 규정에 의한 높은 질의 직업훈련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타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원스톱직업센터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지역의 각 훈련기관은 그 지역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과 함께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부합하는 원스탑직업센터(원스탑직업센터 책임자의 임명 포함.)를 설립하는 방법을 주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원스톱직업센터의 책임자로 임명될 자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

37) 사회서비스의 전달과정도 'One-Stop Service'체제로 전환하여, 복지수혜자가 '접수자(intake worker)'에 의해 'service coordinator'를 배정받게 되면, service coordinator는 복지수혜자의 모든 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 기관 저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여러 복합적인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복지행정의 능률성도 제고되게 되었다.

공지역내의 각 단체가 유자격자가 되며, 책임자의 임기는 2년이다.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칙에 의해 바우처 시스템과 관련된 그 밖의 관련 책무를 수행한다.

노동부장관은 바우처시스템 하에서 적절한 직업훈련실시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원스톱직업센터가 다른 서비스제공지역내의 다른 교육훈련기관에서 바우처훈련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5) 담당기관

직업교육바우처의 담당기관은 노동부이다.

6) 사용절차

제30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원스톱직업센터는 바우처 신청서를 제공하고, 신청서의 작성을 도우며, 자격요건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바우처를 받을 자격을 갖춘 직업훈련기관과 관련되는 신청자에게 성과에 기반을 둔 정보를 제공한다.

7) 평가 & 질관리

노동부장관은 매년 바우처 시스템의 효과를 감독해야 한다. 바우처 수혜자와 납세자에 대하여 본 시스템의 혜택을 평가한다. 이 평가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관련 의회위원회에 제출된다. 각 원스톱직업센터 책임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기준시스템 구축의 책임은 노동부장관에게 있다. 매 2년마다 서비스제공지역의 직업훈련기관은 (d)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기준에 (d)의한 성과를 기초로 하여 그 지역의 원스톱직업센터 책임자를 재평가한다.

‘Michigan Works! The Jobs Force’ 프로그램의 경우, 바우처 시스템에서 훈련을 고용으로 성공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매월 사례별 경영서비스 제공을 요한다. 이것은 일정 시점에 MIS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만 한다. 또한 모든 바우처 수혜자에 부여되는 서비스. 바우처 수혜자가 직업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 90일 이상의 월 단위 계약이 체결되거나, 추가평가나 다른 자금 원천으로의 알선이 요구되는 비성공적인 수요자들에게 기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바우처의 제한 사항은 하나의 바우처를 여러 교육기관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한 명의 수혜자가 여러 개의 바우처를 보유할 수 없고, 주 내의 어떤 교육 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라. 주택바우처 HCV (Housing Choice Voucher)³⁸⁾

1) 개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³⁹⁾로 세입가구를 지원하는 tenant-based voucher, 주택구입비용을 지원하는 home-ownership voucher 등의 다수의 바우처 유형이 있다.

38) 유한욱,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DI, pp.30-34

39) 많은 연구가 미국의 주택바우처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혜가구로 하여금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이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지 선택권 대폭 확대한다. 수혜가구 아동들의 학업성과 향상, 저소득층 청소년 범죄율이 하락한다. 직장과 가까운 거처 선택과 구직활동이 용이함에 따라 고용 촉진한다.

〈표 18〉 저소득가구 대상 주택비용 보조 제도

종류	내용
Tenant-based voucher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주택바우처로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보조한다.
Home ownership voucher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상황을 지원한다.
Project-based voucher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전제로 주택의 건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한다.
Conversion voucher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의 임대료 보조한다.
Family unification voucher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19〉 주택·도시개발부(HUD: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구 분	내 용
Tenant based voucher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
Project based voucher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전제로 한 주택의 건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Conversion voucher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
Family unification voucher	주거문제로 인하여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Home ownership voucher	일정한 소득기준과 고용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구입에 바우처 제공
Vouch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임대료 보조
Welfare-to-work voucher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와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료 보조

출처: 박능후 외(2002), 국토개발원 재인용

1974년에 도입되었고,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약 210만 개의 바우처가 발급되고 있지만, 이는 수혜자격이 있는 가구 중 4분의 1만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자 수가 매우 많은 실정이다.

2) 자격

소득상한은 각 지역별 중위소득치(median income)의 50~80% 사이에서 해당 PHA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신규 혜택가구의 75%는 소득이 빈곤선(Poverty line)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치의 30%미만이어야 한다.

PHA가 정한 지불 기준(payment standard)에 의거한다. 지불 기준은 대략적으로 HUD가 정한 공정시장주거비용(fair market rent)의 90%에서 110%수준이다. 바우처 금액은 실주거비용, 지불 기준으로 조정된 가계소득의 30%이며, 조정된 가계소득의 40%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3) 신청절차

각 PHA가 신규 바우처를 지급받거나 기존 수혜가족이 떠나는 경우⁴⁰⁾ 새로운 수혜가구가 발생한다. 신규 수혜자가 발급받은 바우처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혹은 새로 구한 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 새로운 거처는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대략 60일 이내에 구해야 한다. PHA는 수혜자가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질 및 임대료 수준이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세제혜택 제한이나 보조금 제한을 이용하여 주택주의 임차인 차별을 예방한다. 바우처의 사용률(utilization rate)은 대략 95% 내외이다.

4) 사업자

2,600여 개의 주/지역/지방 공공주택사무소들(Public Housing Agencies: PHAs)을 통해 운영된다.

40) 매해 평균 11%의 수혜자가 수혜대상에서 빠짐

5) 담당기관

연방차원에서는 주택/지방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에서 주관하고,

6) 재원조달

전년도에 발급된 바우처 수와 물가상승률에 의거하여 HUD가 각 PHA에 선불로 지급한다.

예기치 않은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central fund 혹은 program reserve 등의 예치금으로 충당한다.

마. 레크리에이션 바우처⁴¹⁾

1) 개관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 가족의 5·12세, 13·15세의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여름체험 기회(레크리에이션)를 주기 위한 것으로 카운티에서 실시하는 공공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고, 건강을 증진(10임신, 마약 예방)시키고 의사결정 능력과 가치 지향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바우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족 수와 수입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2) 자격

저소득계층 가족의 5·12세, 13·1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41) 김향자, 유지윤. 여행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 pp.11-12

3) 사업자

공원 및 레크레이션국(The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에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가족에게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연결시켜주면 지역사회개발과(The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의 승인 하에서 다른 기관들도 인가된 바우처를 발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과는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기관들의 목록을 개발한다. 이 기관들은 지역 내 비영리 또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4) 담당기관

바우처의 발행은 학교와 가족 및 어린이 서비스국(the Department of Family and Children Services)에서 담당하며,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5) 평가

여름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남은 잔액은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가을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프로그램 실시결과는 서면으로 지역 사회개발과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한다.

2. 영국

영국 역시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우처 제도만을 위한 단일 법률(Act)이 제정된 바 없으나,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 관련 조항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 및 관련 법 규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바우처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바우처와 관련하여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⁴²⁾과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법(the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⁴³⁾에서 바우처의 정의 및 종류, 관련 자 등에

42)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 제17B절(section 17B)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는 지자체장이 장애아동에 관하여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자체에 의해 바우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바우처의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바우처”는 만약 보호책임이 있고 아동의 요양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지자체가 인정하며,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이 요양 관리를 바꾼다면 제17절 적용에 의하여 일시적인 서비스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제3조에서는 관련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a항에서는 바우처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금액(money)과 기간(time)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b항에서는 지자체에서 승인한 바우처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공 협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c항에서는 바우처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혹은 규정된 서비스) 최대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3)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법(the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 제3절 바우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는 지자체는 바우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바우처의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바우처”는 만약 지자체가 승인하며, 요양대상자의 요양에 도움을 주는 요양관리자가 요양관리를 바꾼다면, 요양대상자는 요양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지역 요양 관리 서비스 방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한다.

제3조에서는 관련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a항에서는 바우처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금액(money)과 기간(time)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b항에서는 지자체에서 승인한 바우처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공 협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c항에서는 요양관리자 혹은 요양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d항에서는 바우처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관련 사항을 요양관리자 및 장애아동에 관한 (바우처) (잉글랜드) 시행규칙(the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Vouchers) (England) Regulations 2003)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는 적용 시기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시행되며, 잉글랜드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됨을 제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본 시행규칙의 상위법 규정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및 바우처·지역 요양관리 바우처·부모 등의 법정 대리인·서비스 공급자·서비스 사용자(service user)·바우처 소지자(voucher holder)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바우처의 종류를 금액(money)바우처와 기간(time)바우처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기간바우처의 경우에는 제공 서비스와 지자체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서비스 공급자가 반드시 명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기간바우처와 금액바우처 발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지역 요양관리 바우처(community care voucher)와 아동법 바우처(Children Act voucher)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기간바우처 중 지역 요양관리 바우처는 요양자 또는 요양관리자(단, 요양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한함)로 발급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으며, 아동법 바우처는 법정대리인(relevant parent)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금액바우처 역시 발급 대상자를 지역 요양관리 바우처는 요양자만, 아동법 바우처는 법정대리인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혹은 규정된 서비스) 최대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바우처 발급금지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관리자 및 아동 서비스에 관한 지역 요양관리, 서비스 시행규칙(the Community Care, Services for Carers and Children's Services (Direct Payments) Regulations 2003)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약물중독자 및 정신질환자, 범죄자인 요양관리자 및 법정대리인의 발급금지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바우처 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바우처 종류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상환 받아야 하며, 상환기간이 지난 바우처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바우처 상환은 바우처가 보장하고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 당일에 상환되며, 만약 하루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된 마지막 날 상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바우처에 관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주체로 바우처를 발행한 지자체(발행기관)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바우처 소지자(voucher holder)가 바우처 상환 여부 및 선호공급자(preferred supplier)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지 등의 의견을 발행기관에 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제4항에서 제시된 선호공급자(preferred supplier)를 발행기관 또는 서비스 공급자 중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6항에서는 제4항에 규정된 바에 근거하여 발행기관이 선호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호공급자와 계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a호에서는 기간바우처에 대해 선호공급자가 (i) 바우처에 규정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ii) 발행기관이 제시한 통상적인 서비스 가격과 동일한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iii) 발행기관의 통상적인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b에서는 금액바우처에 대하여 선호 공급자가 발생기관의 통상적인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항에서는 서비스 사용자가 (상환금 지급과 관련이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를 보유하고 발행기관 관할 지역 내의 거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거주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바우처 관련 사항은 발행기관에 반드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사용자가 바우처에 규정된 사항보다 부가 혹은 고가의 서비스 제공을 희망할 경우 바우처 소지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경우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바우처 적용 비용과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의 차이를 공급자에게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지자체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바우처 소지자가 부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제3자는 서비스사용자, 법정대리인, 발행기관 이외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바우처에 의해 보장되는 거주시설의 최대 거주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바우처 거주 시설 보장 기간을 연속 28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12달 중 총 12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휠체어 바우처

1996년 영국 보건부가 발표한 휠체어 바우처 계획(wheelchair voucher scheme)에 의하면 다음 3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① 장애인의 폭넓은 휠체어 선택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NHS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사항의 휠체어의 공급과 유지보수가 무상인 표준 사양

(standard option), ② 대상자가 표준 사양보다 고가의 휠체어를 원하여 관련 차액을 지불하며 휠체어의 소유와 유지 보수에 관한 책임이 대상자에 있는 독립 사양(independent option), ③ 대상자가 표준 사양보다 고가의 휠체어를 원할 경우 관련 차액을 대상자가 추가로 지불하나 휠체어의 소유와 유지 보수에 관한 책임은 NHS에 있는 제휴 사양(partnership option)이 있다. 휠체어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대상자 및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바우처는 받을 수 없고, 다만 교체가 필요할 경우 재실사에 의해 판단한다고 한다. 휠체어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으며 따라서 휠체어 구매 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바우처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에 관한 기금은 보건당국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으로는 국가보건서비스 (휠체어 비용) 시행규칙(the National Health Service (Wheelchair Charges) Regulations 1996)이 있으며, 이는 국가보건서비스법률(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7)⁴⁴⁾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이 시행규칙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리인(agent), 표준 휠체어(standard wheelchair), 사용자(user)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대리인(agent)”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16세 이하 사용자를 포함한 사용자를 대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표준 휠체어(standard wheelchair)”는 NHS 트러스트의 선택사양에 따라 사용자가 임상적으로 필요한 사항 이상으로의 고가가 아닌 휠체어를 의미한다.

44) 국가보건서비스법률(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7)

제81절 제a항에서는 규정된 사항 이상의 고가의 장비 및 운송수단에 관하여 공급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제126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하위법규정(예를 들어, 명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서 위임받을 권리 및 예외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제128절 제1조에서는 하위법규정에서 사용될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제시되어 있음.

“사용자(user)”는 NHS 트러스트의 선택사양에 따라 신체적 혹은 신체 및 정신적 상태에 따라 휠체어 사용이 요구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2조에서는 NHS 트러스트가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표준 휠체어보다 고가의 휠체어를 요청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NHS 트러스트는 사용자 혹은 대리인에게 표준 휠체어와 사용자가 요청하는 휠체어 사이의 비용의 차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는 본 시행규칙이 잉글랜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시각보장구 바우처

권창익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NHS 시각보장구 바우처 사업은 1986년 7월에 처음 도입되어 사업대상자가 새로 안경을 구입하거나 안경 렌즈를 교체하는 데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1988년 4월부터 콘택트렌즈 구입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한다.⁴⁵⁾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건서비스 (시각 보장구 비용과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the National Health Service (Optical Charges and Payments) Regulations 1997)에서는 국가보건서비스법률(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7)⁴⁶⁾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바우처와 관련하여

45) 권창익 외(2007)연구에 의한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16세 미만 어린이, ②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16~18세 청소년,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금을 받는 자, ④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저소득가족급여를 받는 자, ⑤ 저소득층 환자 중 HC2 혹은 HC3의 적용이 유효한 자, ⑥ 장애근로수당을 받는 성인, ⑦ 구직수당을 받는 성인, ⑧ 근로가족세공제 혹은 장애인세공제 혜택을 70파운드 미만으로 받는 성인, ⑨ 연금수당을 받는 성인

46) 국가보건서비스법률(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7)

제38절 제1항에서는 일반 안과 서비스 계획에 관한 사항 즉, 보건당국의 일차의료트러스트 의무 및 관련 당사자 등에 관하여 하위 법 규정에서 규정해야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제39절에서는 제38절에서의 규정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제78절 제1조에서는 시각 보장구의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3편 시력검사 비용에 관한 지급, 제4편 시각보장구 비용에 관한 지급, 제5편 시각보장구 수리 및 교체에 관한 비용 지급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편 시력검사 비용에 관한 지급에서는 제3조에서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시력검사 바우처의 이행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시력검사자에 관한 지급 관련 사항을, 제6조에서는 시력검사를 한 환자에 관한 지급 관련 사항을, 제7조에서는 시력검사 바우처의 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편 시각보장구 비용에 관한 지급에서는 제8조에서 시각보장구 지급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안과 의사 혹은 안경사에 의한 바우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NHS 트러스트에 의한 바우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보건당국 혹은 NHS 트러스트에 의한 교체 바우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시각보장구 지급을 위한 바우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는 공급자에게 지급함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는 시각보장구 공급에 관한 바우처 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편 시각보장구 수리 및 교체에 관한 비용 지급에서는 제15조에서 교체 혹은 수리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 바우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 교체 혹은 수리를 위한 바우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 교체 혹은 수리를 한 공급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서 교체 혹은 수리를 위한 바우처 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식품 보조 바우처

영국 식품 보조 바우처(healthy start voucher) 웹사이트⁴⁷⁾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식품 보조 바우처 (Healthy Start)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아동

제128절 제1조에서는 하위법규정에서 사용될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제시되어 있음.

47) <http://www.healthystart.nhs.uk/>

을 대상으로 건강보호와 영양수준을 향상시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된다고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주당 수혜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이 바우처를 통해 우유, 과일, 채소, 분유 등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식품 보조 바우처 금액은 1장당 3파운드의 가치를 가지며, 수혜대상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데, 임신부 또는 1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일 경우 주당 1장, 1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주당 2장 지급된다고 한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주체로는 큰 규모의 슈퍼마켓에서부터 우유 배달 업체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부터 데본과 콘웰 지방을 대상으로 시행도니 시범사업 결과, 시민, 사업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반영되어 수많은 상점과 슈퍼마켓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000여개의 사업체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본 사업과 관련 사항을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1988)⁴⁸⁾과 사회보장 기여에 관한 법(the Society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⁴⁹⁾에서 위임된 건강 시작 계획 및 복지 식품 (개정) 시행규칙(The Healthy Start Scheme and Welfare Food (Amendment) Regulations 2005)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제3편(제8조~제11조) 바우처 관련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8조에서는 Healthy Start food 바우처 발행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으

48)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1988) 제13절(section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는 복지 원조 식품(Welfare Food)으로 젓소우유, 분유, 비타민 보충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지자체장은 제1조에서 언급된 식품을 추가·이동·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지자체장은 식품 보조 관련 계획 수립은 시행규칙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9) 사회보장의 기여와 급여에 관한 법(the Society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제175절에서는 시행규칙 및 명령 등 a권한 행사와 관련된 사항과 예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는 지자체장은 바우처 수혜 권한을 지닌 자가 Healthy Start food 바우처를 수혜할 수 있도록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주당 수혜 가치 한도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바우처 유효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우처 발행일로부터 4주 이내이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제3항에서는 바우처의 교환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3파운드이다.

제4항에서는 바우처에 기입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항은 바우처의 가치, Healthy Start food에 관한 설명,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기입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8A조는 2006년 개정된 조항으로서 Healthy Start vitamins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는 보건 서비스 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1차의료기관, 국가의료서비스기관, 지역보건소를, 스코틀랜드의 경우 보건부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보건 서비스 부서는 수혜자에게 Healthy Start vitamins 제공 직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보건 서비스 부서는 Healthy Start vitamins 공급을 목적으로 약사나 그 외 관계자 혹은 조직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보건 서비스 부서는 수혜자가 Healthy Start vitamins를 취

득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 Healthy Start vitamins를 수혜할 권리는 지닌 자는 Healthy Start vitamins 수혜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항에서 수혜 증명 서류는 지자체장이 Healthy Start vitamins 수혜 권리를 인정한 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항에서 지자체장은 보건 서비스 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제공한 Healthy Start vitamins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바우처 사용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 수혜자는 Healthy Start food와 그에 대한 바우처를 그 유효기간내에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발행된 바우처는 발행된 바우처의 해당 수혜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바우처 수혜대상은 친모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고 있는 아동이며, 바우처 사용은 그 친모가 소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바우처 수혜대상 및 사용 권한자 외에는 바우처 및 바우처로 취득한 Healthy Start food와 vitamins를 구입, 판매,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바우처에 명시된 수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는 수혜자가 바우처를 획득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수혜자는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바우처의 손상·분실·과기된 경우 혹은 수혜자와 식품 판매점과의 거리가 비합리적으로 먼 경우, 수혜자는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의 서면은 수혜 바우처의 만료기간 4주 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제2항에서의 서면은 바우처 유효 만료기간 이전에 제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면 요구가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은 발급 또는 바우처 표기된 가치와 동일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바우처의 소유는 지자체장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역시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우처 제도만을 위한 단일 법률(Act)이 제정된 바는 없으며, 각각의 제도에서 바우처가 활용될 경우, 관련 사항을 법률에 1~2개의 조에 규정하고 하위 법 규정(대부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바우처 관련 당사자 및 하위 법 규정에 위임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었으며, 하위 법 규정(대부분 시행규칙)에서는 바우처 사용 대상자, 발급 대상자, 사업자, 종류, 사용방법 및 비용에 관한 지급,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3. 호 주

가. Human Service (Enhanced Service Delivery) Bill 2007 : Access Card

1) Access Card 진행 연혁 및 Human Service (Enhanced Service Delivery) Bill 2007 개관⁵⁰⁾

호주 정부는 현행 17개의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정부혜택을 제공하고 있기에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한 개의 카드로 많은 종류나 거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의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시민들에게는 행정편의를 도모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1988년에는 Australia Card 한 개의 카드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카드의 단일화 작업을 주도했지만 단일 카드에 내장 되어질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로 단일카드를 도입하는데 실패했다. 2006년 4월 John Howard 수상이 Health and Social Services Access Card(HSSAC) 도입을 제안했는데(일명 Access Card) 이는 과거 실패한 Australia Card를 부활하려는 시도로 많은 시민들에게 비쳐왔다. 이 제도의 골자는 호주 시민이나 호주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중 인적자원부(Dept. of Humans Service)나 재향군인부(Dept. of Veterans Affairs)가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서비스와 보편적인 의료보험(medicare)의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Access Card를 2010년부터 획득하여야하며 이 카드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로 예정되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반대로 의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제도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더라면 Centrelink와 다른 기관이 현재 시행하고 약 시행하고 있는 약 17종류의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실업, 장

50) 배득중, 강인재, 정창훈, 이영범.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에, 재향군인, 학자금, Health Care Card and Seniors Health Card, Medicare Subsidised Health Care, 약값을 보조해주는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PBS), Child Support Australia Services, CRS Australia Vocational and Rehabilitation)들을 하나의 통합카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Access Card를 도입하면 기존의 17개 종류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카드 하나에 통합시켜 행정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지만 Access Card 도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정부가 제공하거나 보조해주는 복지나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호주 국민들이 사실상 Access Card를 만들어야만 가능하기에, 이 제도의 시행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혜자와 잠재적 수혜자들(온 국민)을 강제로 이 제도의 편입시켜야만 가능하다. Access Card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 개인 정보를 관련기관이나 서비스업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사생활에 관한 침해소지와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제도가 없는 호주 특성상 많은 시민들은 Access Card는 사실상 정부가 강요하는 강제 신분증이라는 우려를 가졌다. 참고로 지구상에는 약 110개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개인 신분증을 발급을 하고 있지만 호주는 국가가 전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는 나라(Australia, Canada, Denmark, Ireland, Japan, New Zealand, Norwa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 중의 하나이다.

Privacy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Consumer and Privacy Task Force를 창설하여 의논하였다. 그 후 Human Service Bill 2007을 2006년 12월에 의회에 상정하였지만 2007년 3월 15일 의회에서는 개인사생활 정보 유출가능성에 대해서 본 법안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돌려보냈다.(Second reading에서 반려) Access Card Task Force 위원회는 감시와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강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2007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Labor government)은 Access Card Project와 이 제도 실시의 실무 준비 기관인 Office of Access Card와 관련된 기관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원래 노동

당은 Access Card 제도의 실시를 몇 가지 부대조건을 내걸면서 원칙적으로 지지했지만 2007년 10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이 제도 실시 자체를 포기하였기에 언제 다시 법률이 재상정되고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현재로는 미지수이다.

여기에서는 Access Card의 최근 법안인 Human Service Bill 2007의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Access Card에 관련 절차 및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법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회복지서비스 접근하는 것의 복잡함을 줄이고,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에 대한 더욱 알맞고, 친숙하고, 신뢰할만한 방법을 촉진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조항과 관련된 사회복지 기만을 줄인다. 넷째, 긴급한 상황에서의 호주정부지원을 증진한다. 다섯째, 카드사용에 대해 용이하게 한다.

이 법령에는 등록기관과 Access Card에 관련된 절차적 내용(신청권자, 등록절차, 발급절차, 기재사항, 처벌 등)만 규정하고 있으며, Access Card 사용의 실제적 내용(수혜자의 범위, 수혜의 내용, 카드의 사용방법, 가맹기관 등)에 관련해서는 규정이 모호하다.

주무부장관(Secretary)이 액세스카드에 기록될 개인의 정보에 관한 기재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Privacy Commissioner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2) 자격

HSV Act 1절 5조 (정의) 호주시민령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1948)하의 호주시민

3) 신청절차

개인이 액세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관(the Register)

에 등록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Commonwealth benefit)를 받을 자격이 있고,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the Secretary에게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the Secretary가 정한 다른 방법으로 등록하면 된다. 신청서의 형식(form)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the Secretary는 Privacy Commissioner와 논의를 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인은 등록기관(the Register)에 등록되어 있거나, 만18세 이상이거나, 유효한 액세스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액세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장관이 승인한 신청서 형식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액세스 카드의 신청이 가능하다. the Secretary가 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액세스 카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4) 담당기관

등록기관은 the Secretary가 정한 방법에 의해 설립되고, 이것은 입법기관(legislative instrument)이 아니다.

5) 정보제공

액세스 카드의 외면(surface)에는 이름, 카드번호, 유효기간, 사진, 서명, 생년월일, 참전용사인 지 여부, 연금이 지원되는 시각장애인인지 여부(Blind disability support pensioners)를 기재한다. 그리고 액세스 카드의 칩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 서명, 카드고유번호, 유효기간, PIN번호, 복지카드(benefit cards), 의료보장번호(medicare number), 긴급직불번호(emergency payment number), 등록여부(registration status), 참전 용사 정보(DVA information) 등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the Secretary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특정의 정보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Australian Skills Voucher Program⁵¹⁾

1) 개관

12학년(한국:고등학교3학년)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다른 공식 자격증들이 없는 많은 성인 호주국민을 위하여 호주 수상은 2007년 1월에 직업기술바우처(Work Skills Voucher)를 고시하였다. 직업기술바우처는 일정 자격이 없는 호주국민의 기본적 기술 증진을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기본 기술의 향상은 경력을 진전시키고 취업을 도와준다. 매 년 호주국민들이 관심 갖는 30,000가지의 직업기술바우처가 제공된다. 이 바우처들은 공공기관, 사설, 지역에 등록된 훈련기관들에 대해 상환할 수 있다.

직업기술바우처프로그램에 대한 법령은 남부 호주(South Australia)법령인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Act 2003이 있으며 2008년에 개정되었다.(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Act 2008) 그 외에 연방법으로 Skills Australia Bill 2008은 현재 2독회중이다.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Act 2003 법의 구성은 제1장 서문, 제2장 관리, 제3장 고등교육, 직업교육과 해외학생들을 위한 훈련 및 교육, 제4장 훈련제도/훈련생 근무기간, 제5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Act 2003의 목적은 훈련 및 기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주(남부 호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한다. (1장 3조 (목적))

또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직업 및 기술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제2장 2절 9조-16조).

51) Western Sydney Institute - Australian Government Work Skills Vouchers 자료 요약

〈표 20〉 호주 직업기술바우처 프로그램표

Course Code	Name	Qualification	College
RTE20103	Agriculture	Certificate II	Richmond
RUV20104	Animal Studies	Certificate II	Richmond
PRM20104	Asset Maintenance (Cleaning Opeartions)	Certificate II	Nirimba
AUR20205	Automotive Aftermarket Manufacturing	Certificate II	Blacktown
AUR20705	Automotive Mechanical	Certificate II	Blacktown
AUR21105	Automotive Sales	Certificate II	Blacktown
AUR20305	Bicycles	Certificate II	Blacktown
BSB20101	Business	Certificate II	Baulkhan Hills Blacktown Mount Druitt Richmond Blue MOUNTAINS (Whentworth Falls Campus) OTEN
RTD20102	Conservation and Land Management	Certificate II	Richmond Blue Moutains (Wentworth Falls Campus)
ICT20102	Customer	Certificate II	Blacktown
WRF20104	Floristry	Certificate II	Richmond
WRH20100	Hairdressing	Certificate II	Mount Druitt Nepean (Kingswood Campus)
91183NSW	Horse Industry Operations (Performance Horse)	Certificate II	Richmond
RTF20103	Horticulture	Certificate II	Richmond Blue Mountains (Wentworth Falls Campus) Campus OTEN
THH21802	Hospitality(Operations)	Certificate II	Baulkham Hills Mount Druitt Nepean (Kingswood Campus)

Course Code	Name	Qualification	College
			Blue Moutains (wentworth Falls Campus)
ICA20105	Information Technology	Certificate II	Blacktown Mount Druitt Nepean (Kingswood Campus) Nirimba Richmond Blue Mountains (Wentworth Falls Campus) OTEN
CUS20101	Music Industry(Foundation)	Certificate II	Nirimba
AUR20805	Outdoor Power Equipment	Certificate II	Blacktown
RTE20603	Production Horticulture	Certificate II	Richmond
RGR20102	Racing(Stablehand)	Certificate II	Richmond
WRR20102	Retail Operations	Certificate II	Richhmond OTEN
TDM20201	Transport and Distribution (Marine Engine Driving)	Certificate II	OTEN
TDM20101	Transport and Distribution (Maritime Operations)	Certificate II	OTEN
TDT20202	Transport and Distribution (Road Transport)	Certificate II	Nirimba
TDT20201	Transport and Distribution (Warehousing and Storage)	Certificate II	Nirimba
90757NSW	Foundation And Vocatinal Education	Certificate I	OTEN
90279NSW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Cgve)	Certificate II	Blacktown Richmond Blue Mountains (Wentworth Falls Campus) OTEN
91179NSW	Preparation For Vocational And Further Study	Certificate II	Mount Druitt

출처: Western Sydney Institute - Australian Government Work Skills Vouchers 자료

2) 자격

25세 이상의 성인이 최근 노동자 또는 구인자와 12년 학년(한국 : 고3)을 끝내지 못했거나 레벨 II에 동등하거나 증명할 수 없고 또는 높은 자격증이 없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미숙련 근로자,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2년 안에 구직활동을 할 예정인 자, 취업정보망에 참여하고 있거나 활동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 취업할 경력이 없거나 자격증 취득 후에 구직 활동을 할 예정인 자가 있다. 만약 12학년을 졸업했거나 레벨 II를 증명하거나 높은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3) 신청절차

필요서류에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Original or Extract) 또는 여권이 있으며 등록된 훈련기관에서 승인한다. 승인된 훈련기관과 적합한 과정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훈련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웹사이트에 있다.(www.skillsvouchers.dest.gov.au.)

등록된 훈련기관의 과정을 선택한다. 적합한 범주를 제공받는 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기관은 바우처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선택한 과정에 관해 교육과학훈련부에 알린다.

교육과학훈련부는 수강한 과정의 비용에 대한 바우처에 관한 사항을 이메일로 연락한다. 과정이 시작할 때 등록된 훈련기관에 바우처를 제시한다. 바우처금액은 최대 3,000달러이다. 만약 바우처발급이 모두 끝난 뒤에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기관은 바우처가 가능되기 전에 과정에 등록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문의: www.skillsvpicjers.dest.gov.au. 또는 Tel.13 38 73.)

4) 사업자

교육과학훈련부에서 지정한 훈련기관

5) 담당기관

교육과학훈련부가 업무를 담당한다.

6) 재정지원

바우처는 최대 3,000달러가 제공되며 초과금은 본인이 충당한다.

7) 지원내용

지원내용에는 12학년 과정 (기본교육과정들), 12학년 과정과 동등한 과정, 레벨2의 직업교육, 문학, 수리 학점과정이 있다.

8) 평가(훈련 및 기술 위원회(Training and Skills Commission))

위원회는 장관의 지명에 의해 11명 이하로 구성된다(제2장2절9조2항)

다. Centrelink

1) 개관

센터링크(Centrlink)는 호주의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이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국민들이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곳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인식에서 1997년에 최초로 설립되었다.(One-Stop Service)⁵²⁾. 근거법안으로는 Commonwealth Services Delivery Agency Act를 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Centrelink CEO 및 담당 기관 직원, 고문의 임명, 권한과 역할에 대한 규정하여 Centrelink CEO(Chief Executive Officer)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과 소득보조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키 위해서 필요한 전달방법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보고서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센터링크는 정부 25개부서가 제공하는 140여개 급여와 서비스를 집행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처는 가족공동체토착민부(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 and Indigenous), 고용노사관계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 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가 있다. 센터링크의 업무는 실업수당, 연금, 가족수당을 나누어 주는 일부터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과 학자금을 나누어주는 일,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중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³⁾ 그 외에도 호주 이민자 등에 대한 정착 정보 및 재정지원, 주택 및 집세 관련 정보, 이혼 및 결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 제공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발전,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링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2) 장지연. 호주의 통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센터링크(Centrelink)). 노동리뷰. 2005

53) 정무성. 전달체계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효율성 강화 전략 - 호주 Centrelink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2권 제2호 (2003). pp.110-11

<표 21> 센터링크 서비스 유형

센터링크 서비스 유형	
퇴직자 혹은 퇴직 희망자를 위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Age Pension) - 금융정보서비스(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 연금면허카드(Pension Concession Card) - 고령자건강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 연금자 보너스 계획(Pensioner Bonus Scheme)
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보조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 간병인급여(Carer Payment) - 병약자수당(Sickness Allowance) - 이사수당(Mobility Allowance) - 간병인수당(Carer Allowance) - 시각장애인우편면허(Postal Concessions for the Blind) - 특별급부(Special Benefits) - 유족수당(Bereavement Allowance, Payment) - 미망인수당(Widow Allowance, Widow Pension Class B) - 배우자수당(Partner Allowance) - 연금면허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 - 농촌가정보조금(Farm Household Support) - 가문부조금(Drought Relief Payment) - 재해부조금(Disaster Relief Payment) - 건강보호카드(health Care Cards) - 주부연금(Wife Pension) - 벽지수당(Remote Area Allowance)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 교육수당(austudy) - 고립지아동지원(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 연금자교육보조(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PES) - 대여보조(Loan Supplement(For the above payments)) - 실직수당(Newstart Allowance) - 고용프로젝트참여보조(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jects(CDEP), Participants Supplement(CPS) and Supplementary Benefits) - 중·노년수당(Mature Age Allowance, Mature Age Partner Allowance)
가족을 위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 가족납세급여(Family Tax Payment) - 고아연금(Double Orphan Pension) - 임신부수당(Maternity Allowance) -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Job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 임신부면역수당(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센터링크의 주요 서비스들은 기존에 다른 정부 부처들이 수행해왔던 임무로서, 해당 부처들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능들을 한곳에 모아 시민(고객)들에게 one-stop-sh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연계기관을 클라이언트 기관(Client Agencies)이라고 하는데 주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⁵⁴⁾

〈표 22〉 센터링크 클라이언트 기관

센터링크 클라이언트 기관	
AEC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FFA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
AGD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ATO	Australia Taxation Office
DETYA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DEWRSB	Department of Employment, Workplace Relations & Small Business
DoCITA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FaCS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Finance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H&AC	Department of Health & Aged Care
D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oTRS	Department of Transport and Regional Services
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IMA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TSG	Tasmanian State Government
HA	State & Territory Housing Authorities

2) 자격

호주 국민 및 호주 이민자 포함(각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기준이 다름)
: 650만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약 1/3이 호주인)

54) 정무성, 전달체계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효율성 강화 전략 - 호주 Centrelink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2권 제2호 (2003), pp.110-11

3) 재정지원

센터링크가 2003년~2004 회계연도에 사용한 예산은 220억 호주달러이다. 이 예산은 가족공동체토착민부(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 and Indigenous), 고용노사관계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를 비롯한 10개 부처와 다른 정부기구들이 서비스 전달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센터링크에 지불하는 것이다. 즉, 센터링크는 독립적인 정부기구이지만 따로 예산을 받아쓰는 기관이 아니라 각 부처로부터 이양받은 업무에 따라 일정 액수의 예산을 할당받아 사용하게 된다. 아래는 센터링크 2003~2004 회계연도에 따른 예산 주요출처이다.⁵⁵⁾

〈표 23〉 센터링크 예산 주요출처

출 처	AUS'000000	비 율
가족공동체토착민부 (Dep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1,967	92.3
고용노사관계부 (Dept. of Employment & Workplace Relations)	117	5.3
교육과학훈련부 (Dept. of Education, science & Training)	16	0.6
농업수산산림부 (Dep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22	
기타	29	
전 체	2,151	100

4) 사용절차

센터링크는 일반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애사건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는

55) 장지연, 호주의 통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센터링크(Centrelink)), 노동리뷰

센터링크는 140여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11개 질문에 연결시켜 제공한다.

일 자리를 찾으십니까?, 자영업이나 농장을 운영하십니까?, 학업이나 직업 훈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십니까?, 최근에 별거나 이혼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프거나 다치거나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노약자나 환자, 장애를 가진 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누군가 돌아가셔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 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최근에 호주로 이주하셨습니까?

이상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할 처지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모두 제시해 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들이 있는 경우, 예컨대 취업상태나 소득수준/자산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경우 개인은 센터링크에 단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두 받게 된다.

라. 호주의 고등교육바우처 제도(미도입사례)

1987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등교육시장에 대한 바우처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대신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HECS)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행정적으로 덜 복잡한 방법으로 교육서비스 선택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HECS개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용자제도로써 용자상환 :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무이자 상환액을 조세의 형태로 납부한다. 매년 상환율은 소득에 정비례한다.

2000~2001년 동안 학생 비용부담이 11억 1,600만 호주달러로 전체 정부 지원액의 20%를 차지한다.

2) 시사점

호주정부는 교육서비스 공급 기관에 대한 직접지원 형태보다는 수요자인 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학생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바우처 제도보다는 학자금 용자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다.

결국 교육에 대한 Friedmans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라는 외부성이 큰 초/중등교육서비스는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바우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인적자본 투자의 일환인 고등교육 소비는 외부성이 거의 없으므로, 피교육자가 교육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호주 ‘레크리에이션 바우처’ 제도⁵⁶⁾

호주 Geelong의 지자체중 하나인 Barwon시는 1976년부터 1982년까지 6년 동안 레크리에이션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570,000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바우처의 권면가는 2.25\$(호주달러)이다.

56) 김향자, 유지윤. 여행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 p.12

1981~1982년 사이에 150개 휴양관련 단체가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는다. 이중 86개는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 휴양 단체이며, 14개는 지역 서비스 기관이다.

대상 업체는 Barwon시 내외의 비상업적 휴양스포츠 기관 운영 업체이다. 바우처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행된 해에 한정된다. 정부가 바우처를 시민들에게 발행하고 시민들이 이를 가지고 자유로이 휴양단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며 바우처를 수취한 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의 형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각 단체들은 소비자 중심적인 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4. 독일

가. 개관

베를린 어린이집 서비스바우처 제도는 기본법인 어린이집및보육시설에서의어린이보호촉진법⁵⁷⁾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및보육시설에의입학보장및인원배정절차에관한시행령⁵⁸⁾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 주정부와 시설운영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재정지원및어린이집의서비스보장에관한기본협약⁵⁹⁾이 체결되어 있다.

57) Gesetz zur Förderung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und Kindertagespflege; Kindertagesförderungsgesetz-KitaFöG

58)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Gewährleistung eines bedarfsgerechten Angebotes von Plätzen in Tageseinrichtungen und Kindertagespflege und zur Personalausstattung in Tageseinrichtungen; Kindertagesförderungsverordnung-VOKitaFöG

59) Rahmenvereinbarung über die Finanzierung und Leistungssicherstellung der Tageseinrichtungen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학부모는 우선 아동의 보육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관할 청소년청이 확인한 다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청은 보육범위 등을 적시한 서비스바우처를 학부모에게 발급하며 이를 가지고 시설운영자에게 제시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즉 학부모가 보육청구권을 청소년청에 행사하면 청소년청은 서비스바우처를 학부모에게 발급하여 청소년청에 소속된 시설운영자와의 보육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청소년청에 속하지 아니한 시설운영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학부모는 그 시설운영자와의 보육계약으로 서비스바우처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나. 자격 및 권한

1) 자격

아동은 3세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촉진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익년 7월 31일까지 3세가 만료되는 아동은 그 해 8월 1일부터 보육필요성에 대한 입증(Vorliegen) 없이 보육 촉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자리에 부합하는 보육필요성이 확인되면 3세 미만의 아동은 어린이집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반일제를 초과하는 보육필요성 또는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서비스(Betreuung)가 신청되면 제1문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육범위는 아동의 보육촉진 필요성 및 가족의 요구(Bedürfnis)에 맞게 조정된다.

2) 권한

바우처는 제공된 보육서비스 내에서 지역을 포괄하는⁶⁰⁾ 어린이집의 빈

60) 베를린의 경우 몇 개의 지구로 나누고 있고 관할 내에 있는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나 사회서비스바우처에는 타 지역의 어린이집 자리도 아울러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자리와, 청소년청이 승인한 급여성서비스와 함께 제23조에 의해 재정 지원 되는 자리의 이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어린이집 이용(계약상의 자리배정)이 종료된 경우에도 이러한 권한 부여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 신청절차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서의 어린이보호촉진법에 의하여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의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관할 청소년청에 학부모(신청자)가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그 전에 보통 5주 이상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빈자리를 계약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은 필수적 사항임. 학부모 양자가 양육권자(sorgeberechtigt)인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리권이 제시된다.

라. 등록

어린이집 보육을 위한 등록은 항상 학부모 거주지역의 청소년청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또한 아동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린이집 등록양식은 베를린의 지역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상원 교육·청소년·스포츠 행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할 수도 있다.

청소년청은 어떠한 청구권과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및 어떠한 보육범위가 필요한지에 대한 학부모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또한 예를 들어 장애아동과 비독일어권의 아동을 위한 추가인원배치를 위한 청구권도 고려된다.

아동의 등록은 원하는 보육·보호의 개시 전 빠르면 6개월 전 늦으면

2개월 전에 이루어진다. 단기간의 등록은 특히 경제활동 참가, 특별한 교육적 또는 가정적 상황의 발생, 신생아 그리고 베를린으로 이사 온 아동을 위해 가능하다. 학부모가 원하는 보육·보호의 시점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동을 위해 필수적인 적응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청은 규칙적으로 4주간의 적응기간을 허가한다. 학부모가 예를 들어 스스로 경제활동 능력을 회복하기 전 이 적응기간에 아동의 보육·보호는 이미 시작된다. 자기 아동과 함께 어린이집 전일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기간에 주의해야 할 것을 어린이집 전일프로그램에서 논의한다.

마. 사업자

베를린에서는 약 1,800개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보육시설을 민간 시설에서 찾을 수 있거나 또는 약 11만개의 자리를 제공하는 베를린 주의 5개의 자체시설이 이에 속한다. 학부모는 어린이집 비용 안내책자에 제시된 대로 수입에 따라 차등화 된 학부모 부담액을 이 모든 보육시설에 지불한다.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부모는 자기의 사회서비스바우처를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 학부모는 특정 보육시설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학부모 고유의 교육관 및 생활과 근로상태에 상응하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거주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간 시설운영자의 어린이집 또는 공공시설(후에 독자시설운영으로 변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처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일일어린이집및유치원에서의어린이보호촉진법(KitaFoG)의

법률규정을 충족한 각 시설운영자는 아동을 인수, 촉진, 그리고 사회서비스바우처로 인한 재정지원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19개의 민간 운영의 어린이집관련 보육시설 또는 자체시설은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의 운영자는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절차규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매번 스스로 비용부담액을 확정한다. 베를린의 민간운영시설과 자체시설에 대한 사항은 상원교육·청소년·스포츠 행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 시설 선택

새로 발급받은 사회서비스바우처로 학부모는 자기가 선택한 시설운영자와 또는 청소년청과 같이 어린이집관련 보육시설에서 보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학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에서 빈자리가 없는 경우에 청소년청은 학부모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근로 장소에 인접한 어린이집 검색에 도움을 준다.

어린이집은 또한 인근지역 즉 대중교통을 이용한 30분 거리 안에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상원 교육·청소년·스포츠 행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적합한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 담당기관

신청, 이용 필요성 확인 및 정원확보절차와 비용분담절차(2006년 1월 1일부터)에서 청소년청의 업무를 포함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베를린 아동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에 의한 관할 청소년청이 관할권을 가진다.

어린이집 시설운영자는 아동이 보육촉진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후 10일째부터는 이 사실을 청소년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육시

설은 5일째부터 적용된다. 청소년청은 학부모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청에 적당한 이유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고 아동이 청소년청의 참고사항 제시 후 다시 보육축진 프로그램에 최소 20일 이상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청소년청은 새로운 신청과 심사가 필수적임을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청이 새로운 신청사항이 필수적임을 결정하면 어린이집 자리의 재정지원은 그 달의 경과로 종결된다.

관할 청소년청은 보육필요성 확인에 따라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바우처 및 통지서를 발급한다. 비용부담정도의 고지에 대한 어려움이 사회서비스바우처 발급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신속한 발급을 위해서 어린이집·보육시설및방과후시설에서의어린이보호에대한비용분담에관한법률(TKBG)에 따라 임시로 비용부담확정의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운영자 또는 어린이집의 변경을 위해서 신청자에게 그의 의견으로 복본을 발급할 수 있다.

어린이집보육시설에서의어린이보호축진법 제7조 제4항 제2문의 취지에 따라 계약상의 자리배정의 종결이 논란이 되는 경우에 새로운 자리에 대한 재정지원은 특별한 선의의 피해자의 경우에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서비스바우처(보육필요성통지서)의 발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보육 청구권이 행사된 자리(계약상의 자리배정)에 대한 비용부담의무는 존속한다. 어린이집및보육시설에서의어린이보호축진법 제7조 제6항 제3문의 취지에 의하여 행정청의 보육필요성 심사의 경우에 심사결과의 확인까지 지금까지의 재정지원을 위한 보육필요성 확인은 중요하다. 어린이집및보육시설에서의어린이보호축진법 제7조 제8항에 규정된 기한은 필요성 심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아.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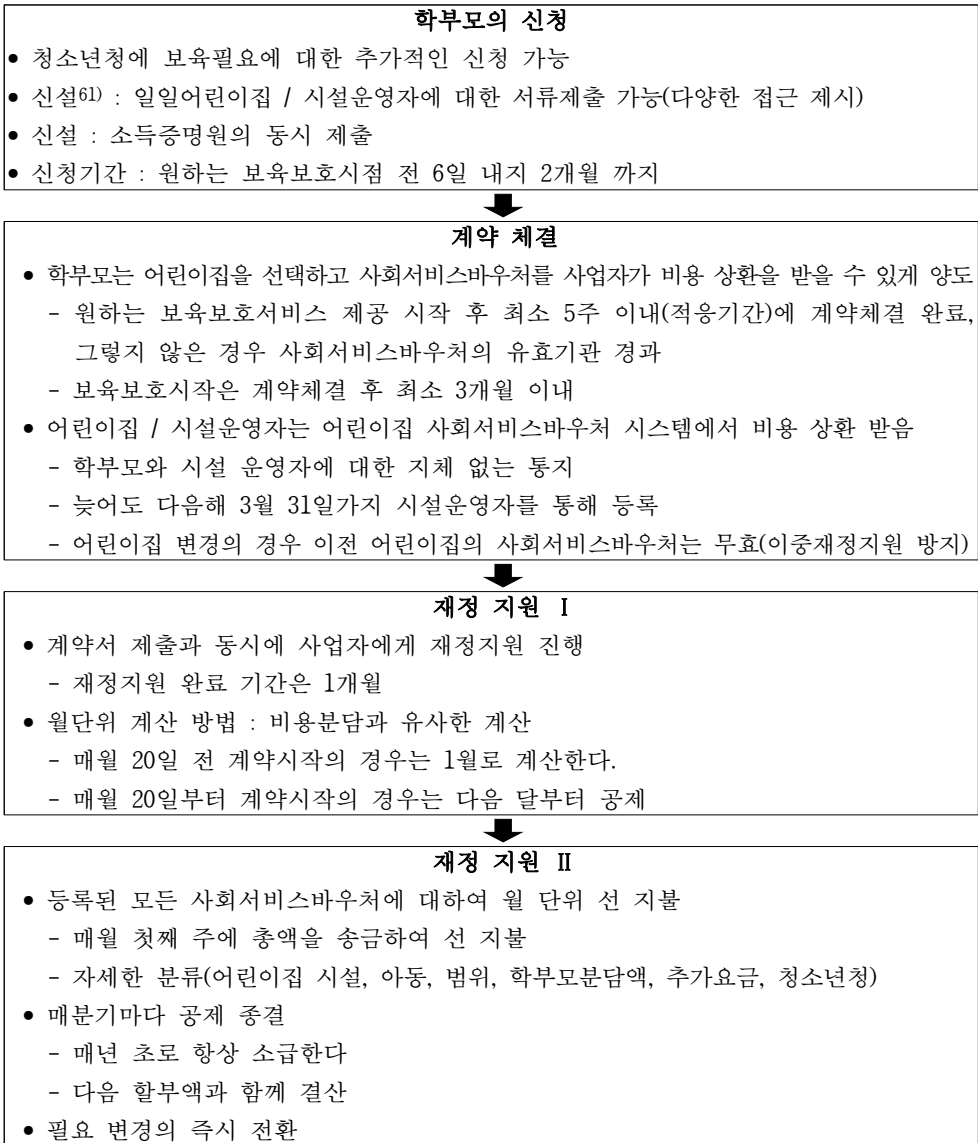
아동과 그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제23조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보육측진서비스의 이용비용과 어린이집·보육시설 및 방과 후 시설에서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비용 분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비용을 분담해야만 한다. 비용분담액은 관할 청소년청이 확정하며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행되는 경우 제23조에 의해 비용분담은 즉시 중단된다.

비용분담은 보육필요성 확인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하여 보육필요성 확인과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비용분담의 심사와 조정에도 적용된다. 어린이집·보육시설 및 방과 후 시설에서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비용분담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용 분담의 소급적 변경의 경우에 추가청구(Nachforderung)와 상환(Rückzahlung)은 청소년청에 의하여 비용분담의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베를린의 어린이집관련 보육시설 다수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로 재정이 충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의 정보안내는 단지 사회서비스바우처 프로그램 및 이에 상응하는 시설운영자와 보육시설에만 관련이 있다.

자. 사용절차

<표 24> 바우처 사용절차



61) 2006년에 도입된 새로운 어린이집 재정지원 프로그램

<표 24> 바우처 사용절차(계속)

재정 지원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청과 함께 지속적인 자료갱신, 조정 - 신청 이후 2주 ~ 3주 동안 ● 각 지역에 위임 시 상원청소년위원회를 통한 지불 완료 - 상원과 같이 지불기간에 대한 소명 - 청소년청과 같이 개별 사회서비스바우처에 대한 소명 ● 브란덴부르크 거주 아동 - 당분간 통합부조시스템(ISBJ) 대신 수작업으로 지불 - 향후 통합부조시스템에 연동

※ 학부모 분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지불 가능 ● 청소년청의 학부모 분담액 산정 및 정기검사 - 선의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용 - 청소년청은 학부모에게 통지 : 비록 비용 산정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비용 산정이 요구된 달부터 시작함이 원칙(학부모 및 시설운영자는 능동적 태도 지양) ● 시설운영자 및 학부모에게 변동된 비용분담액 고지 - 시설운영자는 향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결정권 존재 - 소급 조정(예를 들어 일시적인 분담액 산정의 수정)은 학부모와 청소년청간에 직접 발생

차. 평가 / 질평가

1) 상원 청소년 · 가정위원회

상원 청소년 · 가정위원회는 신규 보육심사 경우 이외에도 보육촉진 서비스의 장기간의 불이용의 경우에 어떠한 요건 하에서 재정지원이 종료되는지와 이에 따라 새로운 보육필요성 심사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사항을 제9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할 권한을 가진다. 개별적인 경우에 특별한 필요상태(Bedarfslage)를 이유로 단지 단기간의 보육촉진 또는 보육범위의 확대가 필수적인 경우에 대한 절차 확정도 이와 같다.

상원 청소년 가정위원회는 시행령에 특히 신청 및 보육 필요성 심사절

차계획과 계획에 필요한 연간 통계자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자리 존재확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것은 개인정보의 종류 및 범위, 개인정보파일과 그 밖에 전산자료 전달매체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삭제, 전송 및 정보보호를 포함하여 지역포괄적인 어린이집 및 청소년부조체계에 기반을 둔 계획 및 비용부담절차의 도입과 실행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카. 보육범위의 심사

보육범위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과 가족 전체의 상황에 연동된다. 학부모의 직업 및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정 및 사회적인 이유는 시간제, 전일제 또는 좀 더 늘어난 전일제 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에 포함된다. 보육범위는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학부모에게 필요한 시간에 근거하여 확정된다.

고려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종합원호시설의 개설시간이 학부모에게 필요한 보육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개별적인 경우에 보충적인 보육보호시설이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되며 특히 학부모는 자기의 비용부담액을 고려해야 한다.

학부모가 규칙적으로 보육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만 일을 하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육범위를 위해 월 평균치가 통보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계속적으로 교육상의 보호촉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이 5일간 오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인 경제·사회 활동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든 시간은 고려되어야 한다.

5. 뉴질랜드

가. 주택바우처 : 주거보조제도(Accommodation Supplement)

1) 개요 및 특징

뉴질랜드의 주거보조제도는 바우처의 직접 지급이 이뤄지는 대신 주택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묵시적 바우처 형태이다.

수혜대상은 주택임대료로 소득의 25%이상을 지출하거나 모기지 상환으로 소득 30%이상을 지출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가 수혜대상이 되며 정부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들은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 및 자산규모, 가족(독신여부 및 자녀수), 주택유지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매주 개인 은행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동거자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동거인 각자에게 절반의 금액이 지급된다. 평균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임대료 액수 중 소득의 25~30%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2) 주거보조비 수혜자 비율(1998~2000년) : 완만하게 상승⁶²⁾

〈표 25〉 주거보조비 수혜자 비율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수혜자 수	365,918	376,242	378,425
전체 인구	3,793,200	3,812,800	3,832,900
수혜비율	9.65%	9.86%	9.87%

자료 : <http://www.bigcities.govt.nz/pdf2001/accomm.pdf>

3) 시사점

주택 바우처는 지원 금액이 소득 및 주거비용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차

62) 유한욱,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DI, p.33

등 바우처의 성격을 가진다. 주거서비스는 종류 및 품질이 다양하므로 시장가격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된 계층에게 가격의 대부분을 보조해주는 균일바우처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가격의 이 부분만을 지원해주는 차등바우처로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원활한 선택권 행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6. 프랑스⁶³⁾

가. 문화바우처-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s)

1) 개관

체크바캉스는 복지 관광 정책(Social Tourism Policy)수단으로서 자국민들이 저렴한 비용(혹은 무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체크바캉스는 국민들의 여행소비를 4배정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3년 기준으로 할 때 총 지출액을 35~40억 프랑으로 추산된다. 체크바캉스는 여행경비의 15~35%를 점유하고 있다.

체크바캉스는 캠핑, 가족호텔, 생태관광, 인센티브관광, 여행업, 여객운송회사, 여가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관광 진흥 기능을 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발행기관

체크바캉스의 발행 및 운영은 ANCV(Agence Nationale pour le Che'que-Vacances : The National Agency for Holiday Vouchers)에서 담당하고 있다. ANCV 기능은 1982년 설립한 기업형, 상업형의 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여행 바우처 발행 및 상환기능을 맡고 있으며 여행바우처의 발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담당한다.

ANCV은 노동조합, 고용주, 여행바우처 유통인, 관광업계의 2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ANCV 체크바캉스 이용자 8,000개의 회사 및 단체와 체크바캉스

63) 김향자, 유지운. 여행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 pp.8-11

가맹점 130,000개의 여행 관련 업체가 매년 1만개의 서비스 공급업체가 새롭게 가입하고 있다(회원가입 현황('93년)).

ANCV는 전국에 12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12개 지부에는 보르도, 그르노블, 릴, 리옹, 마르세이유, 메츠, 낭트, 오를레앙, 파리, 랭스, 스트라부르그, 블루즈 등이 있다.

3) 운영

발행규모는 연간 24억 프랑 상당의 체크바캉스가 발행되어 8,000여개의 기업체, 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00만 명의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해 4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93년). 체크바캉스는 숙박 44%, 교통 23%, 만화영화(animation) 11%, 식음료 13%, 여행사 9%등으로 사용되었다('93년).

ANCV는 공익단체이므로 체크바캉스 발행액수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93년에는 25.5백만 프랑의 수익을 올렸다.

4)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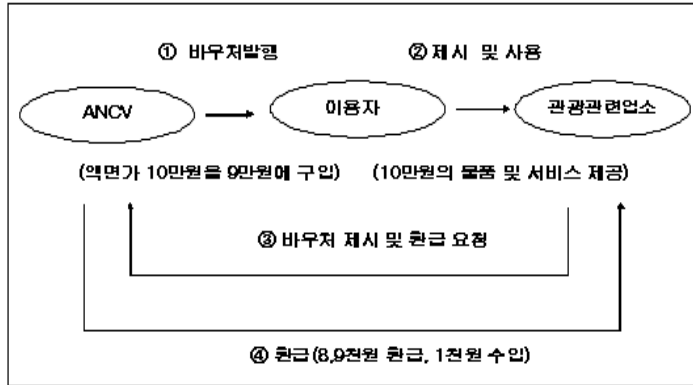
체크바캉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ANCV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세금부과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93년 연 11,220프랑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이다. 회사 내에서는 주로 COMITE D'ENTREPRISE(한국의 총무과와 유사한 부서로 사원복지 및 노동조합 관련 업무 취급)에서 체크바캉스의 신청 및 접수를 담당한다.

체크바캉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최소한 4개월 이상(4개월-12개월) 연속하여 적립금을 납부한 후, 회사가 ANCV와 책정한 보조율이 포함된 금액 상당의 체크바캉스를 지급받는다. 예로 근로자가 월 적립금 300프랑 (월 1,200프랑으로 제한)을 10개월 동안 납부를 한다면 고용주 보조율 50%를 책정하여 근로자 총 적립금 3,000프랑(300X10)과 고용주 총 보조금 : 3,000프랑(근로자 : 고용주 = 1 : 1)을 체크바캉스 발행금액 6,000프랑(수수료 1%에 해당하는 60프랑은 회사부담)을 받을 수 있다.

체크바캉스는 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신청한 근로자와 가족들이 사용

가능하다. 분실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바캉스에 이름을 명시할 수 있다.

고용주는 최소 적립기간(4개월) 경과 후 체크바캉스 신청할 수 있으며 체크바캉스의 단위는 50프랑, 100프랑 단위 수표로 발급된다. 체크바캉스 신청 시 해당금액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그림 6> 프랑스의 체크바캉스의 흐름

발급된 체크바캉스는 가맹점인 호텔, 캠핑 등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식당과 철도, 항공, 선박 등의 교통수단 및 박물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에서 사용된다. 체크바캉스는 ANCV에 의해 현금으로 지불된다.

5) 시사점

‘8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들의 국내여행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체크바캉스는 복지정책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사원복지차원에서 기업들의 참여가 성공의 중요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정부의 복지 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문제와 기업의 사원복지를 위한 투자 미흡으로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 어렵다.

7. 스웨덴⁶⁴⁾

가. 보육바우처

1) 보육바우처 개관

스웨덴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현금급여, 자녀수당, 자녀간호수당, 생계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며, 1년 4개월간의 유급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 보육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보육시설의 운영은 공립이 주축을 이루며 비영리 자원단체의 민간이 일부를 담당하는데, 소수의 사적 보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비용의 대부분은 공적 재원에 의존한다. 국가는 모든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 보험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개인이 지불하는 일반 지방세를 통해 이 같은 재원을 보충한다. 이러한 지원금 외에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모 부담분을 두고 있다.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분은 87년 10%정도였으나 98년에는 17%까지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2) 재정지원방식⁶⁵⁾

스웨덴 정부는 유치원은 75%, 개방형 유치원의 89%, 유치학급의 89% 정도를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통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1991년 이후부터는 나머지 민간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⁶⁶⁾

64) 전형준, 이만우.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의 타당성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2006년 8월. pp. 221~222

65) 김송이,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 pp.66-67

66) 2004년 지방정부가 보육에 지출한 비용은 총 481억 크로나 정도이다. 이중 대략 14%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비용 중 90%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10%는 부모의 보육료로 충당하고 있다. 2002년 보육료 상한제 실시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낮아짐에 따라 보육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스웨덴은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잠식시켰다. 즉, 스웨덴은 정부가 대부분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지급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을 택하는 지방정부들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스톡홀름 지방정부는 보육과 학교교육, 그 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 또는 서비스 수표(Service Checks)제도를 도입하였다.⁶⁷⁾ 스웨덴의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가 보육시설을 정하여 지방정부에 알리면 지방정부는 해당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부모에게 고지하고 부모가 납부한 보육료에 따라 지방정부는 각 가정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바우처를 통해 아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보육시설은 등록된 아동의 바우처를 모아 지방정부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는다. 이처럼 스웨덴의 바우처 제도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와는 그 운영방식이 다르며, 바우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육시설들은 지방정부에 회계보고를 하는 등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정도가 사립 보육시설에 투입되었다. 공립 보육시설과 사립 보육시설의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비교해보면,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80,700크로나, 공립유치원은 96,600크로나, 가정보육인 경우 사립은 79,100크로나, 공립은 77,300크로나로 공립 보육시설과 사립 보육시설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 2005:18)

67) 바우처 제도란 주민이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지방정부가 다시 아동 개개인에게 바우처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육시설 간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통한 이동별 지원의 형태를 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통한 아동별 지원의 형태를 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의 보육비 부담률을 낮고 교사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방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스웨덴이 취하고 있는 아동별 지원방식은 현재 한국에서는 논의 중인 이동별 지원방식과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한유미 외, 2006: 220-224).

받게 된다. 이처럼 부모와 아동들의 선택권을 중시하게 되면서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설별 지원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여전히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웨덴은 보육시설에 직접적으로 정부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자 재정지원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가 대부분의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그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은 실시할 필요성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다.

8. 일본

가. 관광바우처(지역진흥권)⁶⁸⁾

1) 개요

일본의 지역진흥권제도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발표된 ‘경제성장을 위한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에 도입된다.

이 제도의 수혜대상자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와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등으로 구성되며 1인당 2만 엔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받고 6개월 이내에 이를 물품구매비, 음식비, 세탁비, 택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진한다. 총괄기관은 자치성에 설치된 지역진흥권 추진본부이지만 실질적 집행은 일성해정 기관으로서 이들 기

68)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KDI, 2006. 40p.

관에서 진흥권의 발행과 교부를 담당한다. 지역진흥권의 제반 의결사항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된다.

2) 특징

다른 바우처와 달리, 민간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특수한 목적을 염두에 둔 제도라는 점에서 일본의 지역진흥권은 특이한 형태의 바우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높은 비율의 국가부담에 의한 공적 보육이 자리 잡아왔는데 보육 시설 중 정부가 설치한 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 정도로 나머지 40%가 민간이 설치한 사립시설이다. 80년대 이후로 보육소를 이용하는 수가 감소하는데, 이 현상은 출생률의 저하로 인하여 전체 어린이 수의 감소에도 기인하지만 그보다는 비싼 보육료, 까다로운 입소조건, 서비스 질의 저하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보육료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어린이에 비해 고소득층 어린이의 구성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육료는 후생성이 산정한 보육단가와 징수기준을 참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정한 보육료 징수기준에 의해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별, 지역별로 정부와 보호자 간의 부담률이 달라진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로의 지속적인 ‘복지재검토론’ 속에서 보육부문에 대한 계획도 축소되는데 보육부문에서는 가족과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우는 시장원리를 확대시켰고, 보육료의 인상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였다.⁶⁹⁾

69) 전형준, 이만우.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의 타당성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2006년 8월 pp. 222~223

9. 칠레

가. 칠레의 학교바우처 제도⁷⁰⁾

1) 학교 및 교육 시스템

가) 학교유형

〈표 26〉 칠레 학교 유형

구분	소유 및 운영	정부지원	수업료	비중
공립 (Public)	지방자치단체	등록 학생 수 기준	없다.	55%
정부지원 사립 (Private-subsidized)	종교, 비영리 및 영리단체	상동	없다.	36%
사립 (Private tuition)	영리단체	없다.	있다.	9%

나) 교육체계

〈표 27〉 칠레의 교육체계

수준	초등(primary)	중등(secondary)	고등(tertiary)
연령	6~13세	13~17세	17세 이후
성격	의무교육	비의무교육	비의무교육
재학률(1998년)	100%	87%	26%

2) 바우처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들어서부터 미국과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 경제원조의 조건으로 개도국들에 자유 시장의 성격의 개혁을 요구하자 Pinochet

70) 유한욱.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DI. 2005. pp.10~12

군사정권은 1980년부터 탈정부화(degovermentalization)—자유시작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바우처제도 시행한다.

비용 제약 하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자치단체 및 개별 가정으로의 재정적, 교육적 의사결정 이양을 통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탈피가 주요 목적이다.

3) 주요 운영 기준

수혜학생은 초·중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이며, 대상학교는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공립 및 사립학교로서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지 않는 학교⁷¹⁾이다.

4) 세부 운영사항

주무부처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로서 교육부는 교과과정, 시설 기준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학교들에게 매월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묵시적 형태의 바우처)한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원금이 지불되어 개별 학교들에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학생수가 정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 선발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모 면담, 입학시험 등을 통한 cream-skimming 현상이 발생한다.

5) 시사점

긍정적 효과로는 교육의 확대, 학교 선택권 강화(사립학교 비중 증가

71) 1993년 이후에는 정부지원 사립학교들은 학생들로부터 추가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추가지불이 학교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1980년 14%에서 1998년 33%)), 경쟁 강화로 교육의 질 조금 증가,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로 주요 수혜계층이 중·상위 소득층이며, 저소득층 학업성취도는 오히려 감소되고, 양질 사립학교의 차별적 학생 선발로 인해 cram-skimming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10. 콜롬비아 - 학교바우처 제도⁷²⁾

가. 학교 및 교육시스템

콜롬비아 의무교육은 Primary(Grade 1~5)와 Junior Secondary(Grade 6~9)이며, 비의무교육은 Senior Secondary(Grade 10~11)이다. 따라서 문맹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12%) 공립학교 비중은 63%(1995년 기준)정도이다.

나. 바우처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개혁·자유화 추세에 부응하는 정부의 분권화(decentralization)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시행하였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계층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고등학교 입학률을 증가시키며, 학교 간 경쟁 확대로 교육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 주요 운영 규정

수혜학생은 15세 이하의 가계소득 하위 두 계층 출신으로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립중·고등학교 입학 허가를 얻은 학생이다. 대상학교은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사립중·고등학교(Grade 6~11)⁷³⁾이다.

72) 유한욱.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DI. 2005. pp.14-16

73) 1996년부터는 질 낮은 사립학교의 참여를 막기 위해 비영리사립학교로 제한하고 있다.

바우처 금액은 대도시 사립학교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을 책정하며 추가지불을 허용한다.

1) 세부 운영사항

담당기관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로 바우처제도를 총괄 지휘한다. ICETEX(The Colombia Institute of Education Credit and Training Board)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며 BCH(Banco Central Hipotecario)는 바우처 금액의 상환업무를 수행한다.

1991년 1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1만 8천 개의 바우처를 발급하면서 시행 시작되었다. 바우처의 유형은 명시적 바우처 형태를 띠고 있다(매년 3회에 걸쳐 상환).

바우처 갱신 여부는 각 학생의 학업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각 지역자치 단체는 중앙정부가 할당한 최대 쿼터를 고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바우처 개수를 정한다. 바우처 수요가 할당된 바우처보다 많은 경우에 추첨(Public raffle)을 통해 수혜대상을 결정한다.⁷⁴⁾

2) 시사점

교육의 확대에 의해 실시 지역 자치 단체 수가 증가(1992년 78개에서 1997년 216개)하였으며, 학교 선택권 강화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립학교 이용도 증가, 무작위 추출방식 덕분에 cream-skimming이 없고, 바우처 갱신과 학업성취의 연계로 인해 학업성취도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충분했던 바우처 금액이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증가로 인해 사립학교 교육비용의 절반수준에 그침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사립학교 이용률이 저하되었다. 또한 양질의 사립학교 참여율 저조와 같이 불충

74)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만이 수혜대상이 되므로 학교차원에서의 학생선발 문제는 없다.

분한 바우처 금액과 학교 측 ICETEX의 관료적 행정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 기피현상 발생의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

11. 싱가포르

가. 훈련바우처제도

싱가포르 훈련바우처제도는 기업측면에서 근로자의 훈련에 소요되는 현금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훈련실시에 따른 각종 사무처리 업무가 사라지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근로자 측면에서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자신의 직무와 능력에 적합한 인정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별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과 더 나아가 평생교육훈련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나라의 경우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으로 기술개발기금(SDF)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일종의 바우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SDF에 분담금을 낸 기업이 바우처를 소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실시 후 바우처 가격을 기술개발기금에서 정산하여 준다.

SDF는 기술개발분담금법(Skill Development Levy Act)에 의해 1979년부터 조성되어 왔다. 이 법에 따라 1개월만 1,000달러 이하 소득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이용자로부터 임금의 1%에 해당하는 훈련부담금을 징수한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내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교육훈련비의 전액을 미리 훈련제공자에게 지불하고 나중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훈련실시 전에는 당장 훈련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훈련실시 시점으로부터 바우처를 소지한 근로자에게 할인된 비용으로 훈련을 제공하므로 기업 측의 현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근로자의 교육훈련 제공자 및 훈련과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

12. 각국의 바우처 현황표

가. 각국의 교육 바우처 현황⁷⁵⁾

〈표 28〉 각국의 교육 바우처 현황

바우처 종류	서비스 내용	정책 목적	지불 형태
방글라데시 (6-10학년 여성, 지정 지역)	공사립학교 최소출석 및 과정이수 : 6학년부터 10학년까지 \$12에서 \$36.35 까지 지원	복지 증진 특수 목적	목시적
벨리즈(Belize, 초중등학생)	초등학생 75%, 중등학생 50%까지 바 우처 사용	복지 증진 시장 전환	목시적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정부보조 없는 초중등 사립 학교 대상 설립 후 8년경과)	공립학교 학생 비용의 30%를 추가지 원 (1978년 약 500불 해당)	복지 증진 특수 목적	목시적
캐나다 퀘벡 (정부보조 없는 초중등 사립학교 대상)	공립학교 비용의 60%지원 사립학교 교사는 공립학교 자격요건 충족해야	복지 증진 특수 목적	목시적
캐나다 마니토바 (정부보조 없는 초중등 사립학교 대상)	일인당 공립학교 비용만큼 지원	복지 증진 특수 목적	목시적
캐나다 시스태치완 (정부보조 없는 초중등 사립학교 대상)	일인당 공립학교 비용의 55% 지원	복지 증진 특수 목적	목시적
캐나다 앨버타 (정부보조 없는 초중등)	공립학교 비용의 50% 지원	복지 증진	목시적

75)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제45권 1호). 2005

바우처 종류	서비스 내용	정책 목적	지불 형태
사립학교 대상)		특수 목적	
칠레(저소득 초중등학생)	1991년 학생일인당 4.359페소	시장 전환	명시적
콜롬비아 (1992년 1789개 학교에서 시행/저소득층 6학년 대상)	대부분 중등학교의 경우 사립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입학 비용 지원	복지 증진 특수 목적	명시적
과테말라 (빈곤지역 농촌의 7-14세 학생)	연평균 일인당 \$65지원	복지 증진	명시적
일본 (의무교육적용을 받지 않는 16세 이상 학생)	사립 고등학교 비용의 40%를 정부 지원	복지 증진	묵시적
레스토(Lesto)정부가 교사 양성 임용	대부분의 초중등 학생 지원	복지 증진	묵시적
네덜란드 (의무교육 대상 아동)	정부보조가 없는 사립학교 학생 대상	시장 전환	명시적
뉴질랜드 (모든 학령 아동 대상)	정부보조가 없는 사립학교 학생 대상	시장 전환	명시적
폴란드(사립학교 대상)	일인당 지출의 50% 수준 지원	시장 전환	명시적
푸에르토리코 (1995년까지 학령아동대상)	소득 \$18,000이하 가정대상, 학생 일인당 \$1,500 지원	시장 전환	명시적
스웨덴	의무교육 아동대상	복지 증진	묵시적
스페인 발렌시아 Nursery voucher (1992년 실시)	발렌시아 6세 이하 아동, 시의회가 1개월용 10개 cheque book 발급	복지 증진	묵시적
핀란드 보육바우처	1995-1997년 460개 시읍 중 33개 지역 실시	시장 전환	명시적
영국 보육바우처	저소득층 학생 대상	시장 전환	명시적
미국 Federal Pell Grants (전역 소득수준 가족규모,	저소득층 학부생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고등교육 입학허가 이후 지원)	복지 증진	묵시적

바우처 종류	서비스 내용	정책 목적	지불 형태
고등교육 재학 가족 수 등 고려)			
미국 미네소타 K-12 Education Credit and Education Subtraction	수업료 등 K-12 교육 진출에 대한 tax deduction과 credit	복리 증진	목시적 환급
미국 미네소타 Enrollment Opinion Program	거주 지역 밖의 학교나 프로그램 수강권	복리 증진	목시적
미국 미네소타 Post-secondary Enrollment Opinions	고등학교 2·3학년들이 대학 관련 교육을 받아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허용	복리 증진	목시적 교통비 환급
미국 버몬트 교육바우처 (246개 커뮤니티 중의 95% 지역에서 공립중등학교 없다.)	지역의 학생이 타 지역 공사립학교에 갈 수 있는 수업료 지불	복리 증진	목시적
미국 텍사스 휴스턴 교육바우처 (저학력 학교 저학력자 대상)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근처 학교 외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허용	복리 증진	목시적
애리조나 Scholarship for Pupils with Disabilities Program (2006년 시행)	애리조나 주 장애인 학생, 12,450명 대상이지만 2006년 시행으로 아직 등록된 학생은 없다.	복리 증진	목시적
애리조나 Displaced Pupils Choice Grant Program(2006년 시행)	수양아이(foster care children)에 대한 장학금 지원	복리 증진	목시적
애리조나 Corporate School Tuition Organization Tax Credit(2006년 시행)	기업소득공제프로그램을 통한 장학금 기금마련 및 저소득층 학교선택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복리 증진	목시적 환급
애리조나 Individual School Tuition Organization Tax Credit (2006년 시행)	개인의 기부유도를 통한 저소득층 대상 학교선택프로그램 장학금 기금마련	복리 증진	목시적 환급
플로리다	저학력 학생이 더 나은 공사립학교	복리	목시적

바우처 종류	서비스 내용	정책 목적	지불 형태
A-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1999년 시행)	전학을 돕는 프로그램	증진 특수 목적	
플로리다 Step Up Corporate Tax Credit Scholarship Program(2001년 시행)	기업의 장학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저소득층학생대상 지원(qualify for the federal free lunch)	복리 증진	목시적 환급
플로리다 John M. McKay Scholarship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1999년 시행)	장애인 학생 학교선택 지원프로그램	복리 증진 특수 목적	목시적
아이오하 Individual School Tuition Organization Tax Credit(2006년 승인)	장학금에 대한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기부액수의 65%), 연방정부 빈곤선 300%이하 소득층	복리 증진	목시적 환급
미국 매사추세츠 캠프리지 Controlled Choice	캠브리지 공립학교를 부모가 선택 (K-8 학생 대상, 인종간 차별해소)	특수 목적	목시적
미국 뉴욕 알바니 A Better Choice(ABC)	초등사립학교에 갈 수 있는 바우처 (100명 정원, 연간 2000불 지원)	복리 증진	명시적
오하이오 Cleveland Scholarship and Tutoring Program	초·중등 교육 수업료 지원(최대 \$2,500),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교입학 전후의 교습수업료 지원(최대 \$500)	복리 증진	환급
오하이오 Autism Scholarship Program (2003년 시행)	자폐성 어린이 대상 지원프로그램 (5406명 중 534명 참여)	복리 증진	환급
오하이오 Educational Choice Scholarship Pilot Program (2006년 시행)	사립학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34개 교육구중에서 213개 학교 학생. 46,215명 중 2,272명 선택, K8의 경우 일인당 \$4,250,고등학생의 경우 \$5,000한도)	복리 증진 특수 목적	명시적
펜실베이니아 Educational Improvement	장학금융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연소득 5만 불 이하 가구 학생을 대	복리 증진	목시적 환급

바우처 종류	서비스 내용	정책 목적	지불 형태
Tax Credit (2006년 시행)	상으로 학교선택권 지원		
로드아일랜드 Corporate Scholarship Tax Credit Program (2006년 승인, 2007년 시행)	연방빈곤선 기준 250%이하 저소득층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권 지원	복리 증진	묵시적 환급
유타 Carson Smith Special Needs Scholarship (2005년 시행)	유타 주 장애인 학생 대상 학교선택권 지원	복리 증진 특수 목적	묵시적
미국 밀워키 Parental Choice Program	가족에게 quarterly voucher 제공(학생 일인당 1997-98 \$4,500)	시장 전환	명시적
워싱턴 Washington D. C.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	연방정부 빈곤선 185%이하 대상 저소득층 기구 K-12 학생의 제반 학비(교통비 포함) 지원	복리 증진	묵시적

나.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녀보육지원제도

1)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녀보육지원제도⁷⁶⁾

〈표 29〉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녀보육지원제도

		미국	스웨덴	일본	한국
보육비용 지원		- 세액공제	- 육아현금급여	-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자녀수당	- 아동수당	- 저소득층 보육
		- 부양가족지원	- 자녀간호수당	- 아동부양수당	- 료 보조금
		- 육아보조금	- 생계보조금	- 육아휴가급여	
육아 휴직	휴직기간	12주	16개월	12개월	12개월
	급여여부	무급	유급	유급	무급
	자격요건	연간1250시간 근무	모든 근로자	고용기간1년 이상	근속기간1년 이상

2) OECD 국가의 유형별 보조금 정책⁷⁷⁾

〈표 30〉 OECD 국가의 유형별 보조금 정책

		수요자 보조금 형태	사업자 보조금 형태
수요자 보조금 중심 국가	호주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	국공립 및 사립(영리포함)
	영국	자녀세액공제	저소득층 대상 보육시설
	미국	자녀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	저소득층 대상 보육시설
사업자 보조금 중심 국가	캐나다	자녀세액공제· 소득공제	국공립 및 비영리사립
	뉴질랜드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덴마크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핀란드	사립보육수당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노르웨이	소득공제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국공립 및 사립(영리포함)
	스웨덴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벨기에	세액공제·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	저소득층 대상 보육시설
	프랑스	세액공제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 저소득층 대상 보육시설
	독일	소득공제· 저소득층 보육료보조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포르투갈	소득공제· 저소득층 보육료보조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 국공립 및 비영리 사립
스페인		국공립의 운영비용 지출	
네덜란드	소득공제	일반적인 보육시설	

76) 전형준, 이만우. 보육거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의 타당성: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21집 2006년 8월 p.223

77) 성효용,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 - 기본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성신대학교, 2004, p.34

다. 외국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 및 입법례 현황표

1) 교육

가) 학교

국가	제도/입법례	주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Child Left Behind Act(NCLB) Public Law 107-110, SEC. 9528 ◆ Milwaukee Parental Choice Program (The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DPI) ◆ Improving America's School Act. P.L. 103-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학교바우처 경우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 ◆ “한명도 낙오자 없이 “ ◆ 2002년 1월 8일 승인 ◆ 미국의 유, 초, 중, 고등교육(K-12)을 관장하는 연방법 ◆ 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사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가 5년간 성과가 없을 시, Chater School로 전환 등 강력한 제재 ◆ 위스콘신 : 1990년 미국 최초 대규모 학교바우처를 시작한 곳 ◆ DPI : 학교 바우처 관리 감독 - (명시적)각 학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DPI에게 제출, DPI는 해당 바우처 금액을 해당학교에 4회 걸쳐 지불 ◆ 미국학교향상법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 Voucher System in 1997 (Review Committee) ◆ Contribution of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to Higher Education Funding (HE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자금을 학생에게 학교를 대신하여 직접 줌 ◆ 수업료와 학생 수를 결정함에 학교에 최대한 유연성 있게 한다. ◆ 학생이 수업에 따라 상환을 할 수 있는 대출

나) 직업훈련

국가	제도/입법례	주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 CFCIP) -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 (E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청소년들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연방 차원의 CFIP의 하부프로그램 ◆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주관 하에 각 주의 아동 및 가정 관련 기관에 의해 지원 ◆ (만) 14~21 입양중이거나 입양 이력 있는 청소년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ining Credits / youth Credits (1991) ◆ Connexions (Card) :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이 전혀 없고 전일교육을 받지 않는 16~17세 청소년 ◆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를 배부하여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교육훈련

다) 육아보육

국가	제도/입법례	주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가족 지원법 - AFDC/JOBS(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Program), Transitional Child Care, Child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 육아발전지원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 CCDB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에서 바우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주정부가 육아를 위해 부모들에게 현금, 수표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회복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 육아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로 대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하이오 주 Educational Choice Scholarship Pilot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에 갈 수 없는 유아 (명시적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주 : Washington D. C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Nursery education voucher 	

2) 보건의료(식품지원 포함)

국가	제도/입법례	주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9 Two-Color Food Stamp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색식품권 : 수혜자가 액면가대로 구입해 어떤 식품에 대해서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적황색식품권 : 청색식품권구입시 무료로 보너스로 지급받아 정부에 의해 잉여식품으로 분류, 공포된 물품만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Food Stamp Act of 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식품권을 구입하고 사용 시에는 액면가대로 사용하도록 한 식품권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 PL97-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실시 ◆ 식품권을 필요로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식품권을 신청하고 유자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정부가 무료로 식품권을 지급 ◆ 수혜자는 식품권을 정부가 지정한 품목 가운데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일반 식료품상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 Standard Act 2000 -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독립병원, 독립의원, 요양원, 독립의료기관의 등록 및 관련 규정 제정 ◆ 지역 당국의 양육 및 입양에 관한 규정 및 조사를 위한 규정 제정

3) 주택

국가	제도/입법례	주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nant-Based Voucher ◆ Homeownership Vou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가구지원 ◆ 주택구입비용지원 ◆ 수혜가구가 주택바우처를 통해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주택을 취향대로 선택함으로써 거주지에 대한 선택권이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1970년대 연방 주택 원조 프로그램 (Federal Housing Assistanc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가 저소득층의 주택을 원조해주는 연방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 Housing Act of 1937 - Section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 US 주택법(Housing Act)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4 - New Construction, Substantial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 Moderate Rehabilitation Program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 Voucher Program ◆ 1991 Project-based Certification Program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보조제도(Accommodation Supplement) :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의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택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장치 (묵시적 바우처)

4) 고용

국가	제도/입법례	주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A: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 WIA)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훈련계좌제 실시(Individual training account : ITA)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훈련계좌제는 개인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역 정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동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도에서 제정 (DOL, 2000)

제3장. 연구 결과 고찰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의 쟁점 및 방향

1. 법안의 목적 및 규제 범위

가. 쟁점 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이 절차법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것인지, 실제법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문제가 된다. 즉 법안의 내용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이용권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검토

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권의 정의, 지급 및 사용절차, 공급기관 관리, 관련 당사자의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경우, 법률내용이 명확하고 타 부처와의 충돌 우려도 적어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나 이용권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이 빠져 입법효과가 적어질 우려가 있다.

이용권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제공 시 이용권 우선 지원 원칙, 서비스 제공기관 조세혜택, 서비스 질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용권의 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들이 법에 포함될 경우,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조세지원에 대한 관련 부처의 반대, 서비스 민영화 방식에 대한 이념적 논쟁, 공급기관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다. 외국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Food Stamp 법과 같이 개별 이용권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이용권 수행과 관련한 실제법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조세 내지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통한 이용권의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용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호주의 Human SVC 법안의 경우 실제법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으며 Access카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입법의 필요성이 크고, 논쟁의 여지가 적은 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법률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용권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 보호, 질 관리 등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적용 대상 서비스의 범위

가. 쟁점 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나. 검토

사회서비스와 연관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5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정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2호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정의 규정이 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산업분류상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의 규율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5호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 3호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업분류상 사회서비스의 정의에는 국제 표준산업분류(ISIC) 상 공공행정, 국방, 의무적 사회보장, 교육, 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 포함한다. 그리고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N), 교육서비스(O),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전체 및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중 일부 포함한다.

〈표 31〉 산업분류상 사회서비스의 정의

표준산업분류	사회서비스 해당 직종(예시)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서비스업분류상 사회서비스
O. 교육 서비스업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노인, 아동 등)	
R 기타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개인 간병인 등	일부 포함
Q. 오락·문화·운동 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사적지, 식물원, 동물원 등	
S. 가사서비스업	가사도우미(가정보육, 세탁부 등)	
M. 사업서비스업	고용알선, 경비, 사업장 청소, 사무지원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범위 및 유형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는 관리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외국 입법례

외국의 이용권 관련 규정 내지 법률을 살펴보면 현재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용권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권을 시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다. 다만 호주의 경우 이용권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 Human Service 법안의 경우에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공하는 혜택이 연금, 지불, 허가 등이라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개념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위의 법률규정들을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 법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개념 자체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기한 행정주체에 따른 업무범위를 활용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할 필요 있다.

법이 규율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 부처 간의 다툼을 피하게 하기 위해 이 법이 규정하는 사회서비스를 관리하는 행정부서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확정적으로 규정해 둘 경우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해

저감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이용에 관한 법률의 활용성을 높이고 소관부처에 관계없이 사회서비스가 이 법 하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규정할 경우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사회서비스를 규율하도록 하고, 교육, 주택 등 타 관련 부서에 관할하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관련 부처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규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분쟁의 해결기전을 둠으로써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3. 사회서비스이용권 우선활용 규정

가. 쟁점사항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시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검토

이용권의 우선 활용 규정은 이용권을 진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여, 민간공급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이용권을 우선 활용해야 하는 사회서비스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렵고, 예측이 어렵다. 또한 시장형성이 어려워 독점적 공급이 바람직한 상황에서도 이용권을 발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

다. 외국 입법례

외국의 이용권을 규정한 법률들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의 개별 이용

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일반적인 이용권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자 한 호주의 경우에도 이용권 우선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라. 소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언적 의무로 이용권 활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적 이용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서비스 급부방법과 비교인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활용이라는 용어로 대체함이 타당하다. 이용자의 이용권 사용 능력이 있고, 시장 상황이 이용권 지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이용권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주체

가. 쟁점 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법안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된다. 이용권 발급주체를 국가의 중앙행정부서(보건복지가족부)로 한정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공단 등 영조물법인에게 확대할 것인지, 나아가 민간단체까지 이용권 발급을 허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나. 검토

민간단체가 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념적으로 이용권을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발행하는 이용권은 실질적으로 여타 상품권과 같은 것으로, (구)상품권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민간발행 사회서비스이용권은 별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다. 외국 입법례

또한 외국의 다른 사회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입법을 살펴보면 개별적인 사회서비스에 구체적인 입법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려고 호주의 경우에도 발급주체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행정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지방정부 내지 주정부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각 자치단체에서 발급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 소결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로부터 나오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한 방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행정집행의 효율성 내지 이용권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발급 등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5. 사회서비스 사업자(제공기관) 지정

가. 쟁점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자를 지정 내지 선정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만약 그러한 규정을 둔다면 지정 내지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나. 검토

사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규제기준을 완전 자유업으로 하는

방안부터 일정 수의 사업자에게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폐쇄적인 기준까지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표 32>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 규제기준

1단계	○ 완전 자유업 - 누구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진출입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2단계	○ 신고제 형태 - 바우처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가능함 - 구비조건 없음
3단계	○ 인가 내지 허가제 형태 -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 / 행정기관이 인가 내지 허가 필요 - 조건만 갖추면 영업 가능
4단계	○ 특허제 형태 -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 / 관청이 적정 사업자 수 고려 허가 - 조건을 갖추어도 영업 못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완전 개방형으로 했을 경우, 제공되는 무분별한 사업자의 난립으로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너무 엄격하게 했을 경우 특허 시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과도한 진입장벽으로서 사업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다. 외국 입법례

외국의 이용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급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승인 내지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급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자격 기준을 심사하여 재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다수의 사업자가 형성되어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가 내지 허가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인가 내지 허가제 형태를 취하는 근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근간으로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형성되는 시장이므로 적정관리를 위한 장치가 요구된다.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6. 사회서비스 사업자의 관리 및 서비스 질 관리

가. 사업자의 법 준수사항 및 의무

1) 쟁점사항

사회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검토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책목적을 거두기 위하여 제공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의 운영기준이나 서비스 제공절차 및 인력에 대한 교육사항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 지나치게 자세한 규정은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억제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외국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호주의 Human SVC 법안의 경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항은 규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없고, 미국의 Food Stamp 법과 같이 개별 이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는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 내지 운영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 소결

사회서비스는 주로 대인서비스이고, 제공기관이 간접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제공기관에 대한 기본적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개별 이용권 입법에서처럼 법률에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나치게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하위법령에서 규율토록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회서비스 질 관리 규정

1) 쟁점사항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 관리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

이용권이 활용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주로 대인서비스로 질 관리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전에 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제3자가 객관

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시장형성 초기 서비스 제공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질 관리 기준의 적용이 어려워 현실과 법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3) 외국 입법례

미국의 Food Stamp법의 경우 질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두고 행정기관이 주기적으로 평가·감독하는 한편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돌봄 기준법(The Care Standard Act 2000)에서는 질 관리기관(The National Care Standard Commission) 설치, 모든 기관이 준수해야 할 국가돌봄서비스 표준 설정 및 매년 기관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4) 소결

이용권과 관련된 법안에서 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객관적인 서비스 질 관리 기준 설정, 평가 실시 및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오늘날 의료법 등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의 개정입법들을 살펴보면 서비스 질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이용권과 관련된 법안에서도 질 평가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시장형성 초기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요건, 준수사항,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토대로 질을 관리하면서 질에 대한 평가는 법률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다. 이용권 관리 및 질 평가 주체

1) 쟁점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하여 누가 이용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해서 민간등록법인의 형태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그러한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의 형태를 존치시키면서 계속 관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법인의 형태로 성격을 전환하여 관리하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관리기관이 설립되었을 경우 그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검토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현재처럼 민법상이 일반 법인의 형태를 유지할 경우 법에 관리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도 없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을 통해서 관리 업무 등을 행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일반 법인의 형태가 가지는 장점은 오늘날의 공공기관의 축소라는 오늘날의 정책적 기조와도 부합하고 나아가 다른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반 법인의 형태로서 관리기관은 감독상의 역량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그칠 우려가 있다.

3) 외국 입법례

미국의 개별 이용권 법률들의 경우 행정청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호주의

Human SVC Act(안)의 경우에도 카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리기관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영국의 Care Standard Act의 경우 이용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돌봄 기준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질 관리(The National Care Standard Commission)를 두고 있다.

4) 소결

사회서비스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특수법인으로 하여 설치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생겨 이용권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특수법인이라 함은 개별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어 대체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공익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적법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특수법인은 공공복리 또는 공익을 위해 직접 설립된 공익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에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고,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공익적 사무를 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법령상의 많은 제약과 내외부의 행정 통제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특수법인 설치가 권장된다. 그 외에도 제공기관 관리 감독, 서비스 질 관리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안정적 관리와 확산을 위해서는 비용 정산, 지불기능 외에 서비스 개발 및 공급기관 관리·감독, 서비스 질 관리 등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특수법인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특수법인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운영비용 등은 국고지원이외에 이용수수료 징수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7.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1) 쟁점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검토

법적 안정성 및 자의적인 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 둘 필요가 있지만 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외국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볼 때 보육바우처, Food Stamp 등 개별 이용권 시행을 규정하는 법률의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용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는 호주의 Human SVC 법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령(18세 이상)에 근거한 카드등록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용권을 통해 이용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 내지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들은 법률에 의하기 보다는 개별 이용권 사업의 시행지침들이나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4) 소결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사회서비스는 급부행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사업별로 자격 대상자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시행되는 구체적인 사회서비스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자격인정 기준만을 두고,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적인 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도록 한다.

나.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 규정

1) 쟁점사항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가 된다.

2) 검토

사회서비스이용권은 민간에서 활용되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와는 달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의 사용 제한, 판매, 양도, 부정사용 금지 등의 의무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용권의 사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원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3) 외국 입법례

미국의 Food Stamp 법안 등 개별 이용권을 규정하는 법률들의 이용권의 용도 제한 및 부정사용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비용 내지 금액을 환수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호주의 Human SVC 법안의 경우에도 불법적인 사용 및 부정사용을 유도한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을 두고 있다.

4) 소결

사회서비스이용권은 현금급여(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와 현물급여(국가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책임은 이용권의 현물급여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른 제한은 이용권의 본질상 필요하다 다만, 현금급여적인 성격마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제한만 규정한다.

다. 사회서비스이용권 양도·양수, 허위·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근거

1) 쟁점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 양도·양수, 허위·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둘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검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일률적인 형사 처벌 조항을 적용할 경우 자칫 과도한 규제와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3) 외국 입법례

개별 이용권 사업별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나 전반적인 이용권 사업에 대해 규정하려고 한 호주의 Human SVC 법안의 경우에도 불법,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4) 소결

이용권의 양도 등 부정사용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이용권 현금화를 위한 악의적 거래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신 전속성이라는 이용권의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양도·판매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필요하다.

8. 소비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

1) 쟁점사항

정보공개, 공시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둘 것인지, 소비자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

「소비자기본법」은 물품에 대한 표시기준,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검사와 자료제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다. 사회서비스는 특성상 표시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규제가 어렵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외국 입법례

호주의 Human Service 법안의 경우 개인정보기재에 관한 사항을 자세

히 규정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그 외, 다른 이용권 관련 외국의 법률들의 경우 정보공개, 공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서비스 질 제고 및 소비자 선택권 행사를 필요로 하며, 정보제공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대상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받은 단체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제2절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 입법안의 구체적 내용

법안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실무적으로 쓰이고 있는 Voucher라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바우처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바우처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제시된 의견들 중에는 증권, 카드, 이용권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증권 또는 카드의 명칭은 기존에 실무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용어들과 혼동을 초래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법적 기준 내지 지급대상자를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관한 법령 제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의 통일성 일관성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나아가 바우처라는 명칭보다는 이용권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국민 일반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 법의 명칭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제1장 총칙

일반적으로 총칙을 규정한 장에는 이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국가 및 공공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한다.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활용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의 장에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 조항을 두는데, 목적규정을 통해 일반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규정은 각 개별 법률 조항들의 해석하고 집행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사회복지급부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권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러한 사회서비스제공방식의 변화를 통한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가미를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즉, 이 법은 사회보장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로 이용되어 오던 사회보험방식이나 공적 부조 방식이 아닌

이용권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용권 방식은 개인의 소비에 관련된 선택과 사회적 재화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영역에서 일어나고, 재정은 거의 전적으로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2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또는 공공의 역할은 필요 최소한에 그치고, 민간의 자율적이고 선택권에 기한 합리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이 법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법이 가지는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이용권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운영원리나 절차를 규정하는 틀을 제공하는 법이다. 이용권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계속해서 생성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권 방식을 통한 가능한 모든 사회서비스 유형을 예정하고 규율하기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이용권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에 기본적인 운영원리 내지 사회서비스이용권 나아가 이용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절차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개별 이용권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게 함으로써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사회서비스”라 함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라 함은 이용 가능한 사회복지급여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서 또는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일정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라 함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의한 거래에 의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 (이하 “이용자” 라 한다)라 함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자’와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의 개념은 중요하고 이 법 전체에 있어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법률해석 및 적용상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총칙규정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둠으로써 집행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1. 사회서비스

이 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 조항에서 다루어지는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다음에서 다루어질 적용범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의 1차적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가 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명확하게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 이외에도 직업소개 및 지원, 학교사회사업, 청소년보호사업(쉼터), 가족상담 및 여가 지원 사업 등 교육, 문화, 환경 등 관련된 업무들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이용권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넓은 의미에서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에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회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명확하게 앞에서 적시한 유형의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이에 준하는 사회서비스의 경우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가 이에 준하는 사회서비스일 것인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유형의 중요한 고려사

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등에서 행해지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이용권 방식이 행해진다면 이 법이 정하는 사회서비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

이 법에서 사용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정의는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담겨있는 문서 또는 증서의 형태일 수도 있고,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기록된 카드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문서 또는 증서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재산상의 권리 행사 및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유가증권이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이라고 하기 위하여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고,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⁷⁸⁾

반면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카드 보유자가 일정액 또는 일정 기간의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선불카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한 금액이 기록된(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의한다) 카드를

78)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548p

발급받아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호) 다만 일반적 선불카드의 경우 무기명 형식으로 되어 있어 카드 소지인이면 누구나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소지인이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등이 가지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하면 신용카드⁷⁹⁾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하며, 직불카드란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는 증표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6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법적 성격은 문서 또는 증서 형태의 유가증권과, 선불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와 같은 카드 형태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성격의 차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 및 기록하여야 할 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 위·변조 및 부정사용의 경우 적용되는 벌칙규정 및 양형의 기준 등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이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용권 방식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이용권을 소지한 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의 사

79) 형법의 해석상 신용카드가 유가증권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 중래 신용카드는 신용구매의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해석하였으나(대법원 1984. 11. 27. 84도1862), 그 후 이는 재산권이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7. 9. 99도857)

업자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경영하는 민간 기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용권 방식은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맡게 된다. 사업자의 유형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사업자란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사무실, 가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잡한 설립등기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란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설립 구성원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는 등 설립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법인 사업자의 유형으로는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 일 수도 있고, 영리법인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일 수도 있다.

4.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란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란 이용권을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수급받는 자이다. 이용자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공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급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된다. 이용권의 대상이 외국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이용권 수급권을 허용하고 있고, 이 법 또는 각 이용권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용자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 중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에 대해 적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3. 기타 정부조직법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회서비스

②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도 관련 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1차적으로 관리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의 적용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호가 정의한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여기에만 국한할 경우 앞서 정의규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법률의 활용성을 높이고 소관부처에 관계없이 사회서비스가 이 법 하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다른 부처 간의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타 행정 부서에 관할하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관련 부처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규율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이용권 제도는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교육이용권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바우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따라서 새롭게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이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과 충돌 내지 해석을 둘러싸고 관련 부처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을 존중하고 그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5조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기본 원칙

제5조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기본 원칙)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소득수준, 생활환경, 개호 요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의 목적과는 별도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다른 사회급부제공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 및 생활수준, 개호의 요구 정도가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러나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재정상의 문제 또는 필수적인 사회복지항목으로 인식되지 않아 공적부조 또는 사회보험을 통해서는 제공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복지급여 항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은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대해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등의 재정 및 예산을 고려하여 확대해나갈 수 있는 분야이다. 다만 이용권 방식은 오늘날 사회복지분야에서 작은 정부 및 시장경제원리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기본원칙에 선언적으로 규정해 둬으로써 보다 이 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

<p>제6조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라는 이유로 다른 국민과 차별받지 아니한다.</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용권을 이용해서 민간의 사업자 내지 기관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다른 일반이용자(예를 들어 전적으로 개인의 본인부담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후순위로 밀려남으로써 차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 명확히 이용권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다른 국민과의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별적 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서비스평가원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적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용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차별적 처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규제될 수 있고, 이에 위배한 경우에 법 제27조 제1항 5호에 의해 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관리원은 사업자가 적정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하고 편리하게 사회서비스이용권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 및 기타 사회복지급여 등과 중복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관리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법령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 이용권 사업을 개발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 확충에 노력할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먼저 제1항에서 이용권 사업 기반조성과 재원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기반을 조성한다라고 함은 이용권 지불 정산 업무 등의 전산화 및 기술 운영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의 기초가 되는 이용권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조달기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요 재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정부예산으로부터 나온다.

제2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이용권 개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이 전국적으로 수요 및 공급필요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 일반화해서 실시하는 경우이외에 개별 지역의 특성 및 당해 주민들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기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지역 사정을 감안한 지역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에 정부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사회서비스 사업자를 확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

권 방식은 기존의 사회급부방식이 가지는 단일화 또는 획일화된 사회급부 제공에서 벗어나서 소비자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공급시장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이나 서비스 질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권 사업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4항은 이중급부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제공의무에 따라 사회보험 또는 공적 부조 방식에 의해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해 왔다. 이용권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보험 또는 공적 부조 방식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거나 대체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다른 사회복지급여 방식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1장 총칙에서 용어를 정의하여 두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누가 이용자가 될 것인지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의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구체적인 이용권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소득수준, 생활수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자격을 정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원칙적인 이용자의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고, 다만 구체적인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은 당시의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 등에 따라서 발생하고 확대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러한 이용권 모

든 사항을 예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대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들은 보건복지가족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 외에 이용권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 이용권의 기재사항, 유효기간, 이용권의 종료 및 갱신 절차,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담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제8조 이용자의 자격

제8조(이용자의 자격) ① 모든 국민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대상 및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의 목적 및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국가는 우리 헌법상 인정된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국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회국가 실현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는 그 의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잠재적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생활 형태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일원화 사회보장제도 시행은 사회국가 실현의무의 이념적 한계를 초과한 것이며,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그 수준 및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용권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대상이나 내용, 수급권자의 자격 및 범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당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수입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사회복지사업이 이용권을 통해 제공될 것인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예상하여 법률에 규율하기는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시를 통해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결정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결정) ①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요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요자의 사회서비스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요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수요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이용권 신청 및 발급의 법적 성질

행정주체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신청이 필

요하다. 행정객체의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에는 동의를 요하는 경우와 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주로 행정객체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경우에 요구되는 행위 형식이다.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청과 행정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효과는 상대방과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이용권 발급이라는 행위는 행정객체에 대해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이 법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권자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청이라는 행정객체의 협력이 필요한데, 신청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이용권 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노령, 장애 내지 지려천박 등의 이유로 법이 정한 요건 내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이용권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적절치 못한 사람에게 발급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이용권을 신청하고, 수요자 본인 이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수요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이러한 절차를 경유할 수 없음에도 신청을 대리할 제16조 제1항이 본문이 정한 범위내의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 주체가 직권으로 이용권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3.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

행정주체는 이용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로서 행해지는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조사는 행정결정이 보다 적법하고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절차이다. 수요자인 행정객체는 적정한 이용권 발급과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 행정주체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따르고 수인해야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4. 통지

행정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여부를 행정객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통지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통지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 법에서는 통지사실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의 통지를 받음으로써 수요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제10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0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제XX조에 의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주체는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 발급 결정을 통지하는 이외에 사회서비스관리원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원에 행하는 통보의 법적 성질은 행정객체인 수요자에게 행하는 발급 통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즉 통보는 행정객체에게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도한 행정행위로서의 통지가 아니라 이용권 발급을 하기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권 사업들의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사회서비스관리센타라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불, 정산 업무수행, 사회서비스 정책성과 모니터링과 사업평가 등의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이용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권의 발급과 관련된 처리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관리원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은 기존의 사회서비스관리센타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나아가 평가업무까지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장에 후술하기로 한다.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①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유형
4.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기간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이용자가 이용권 소지자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인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담겨있어야 하고, 제공받을 사회서비스의 유형이라던지 이용권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정도 내지 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용권에 표시될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성명 정도에 그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은 중요한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도난 시 무분별한 남용 내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제1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종료

제1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종료)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증표에 정해진 금액의 소진 또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권이 종료한 후 계속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갱신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갱신발급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자의 사회서비스이용권권의 소멸은 이용권 증표에 의존한다. 증표는 유가증권 형태인 증서일 수도 있고, 선불카드의 성격을 가지는 카드의 형태일 수 있다. 이용권 증표에는 이용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금액 또는 기간이 내재되어 있고, 증표에 정해진 금액의 소진 또는 기간의 만료로 이용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즉 금액이용권인 경우에 정해진 금액을 소진하거나 기간 또는 수량을 정한 이용권인 경우에 기간의 만료 또는 정해진 서비스의 수량을 받음으로써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이용권을 통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권 신청 절차를 다시 경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에도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일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용권을 통해 동일한 사

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갱신발급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제13조 본인일부부담금

제13조 (본인일부부담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1. 의의

본인일부부담금이란 이용자가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용권 제도가 가지는 특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이용권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용권은 크게 금액 이용권과 기간 이용권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금액 이용권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 내지 가치가 내재된 증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그 증표에 정해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용권을 이용하고, 금액이 소진된 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실시되고 있는 산전 진찰 이용권의 경우 출산전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이용권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액 이용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 제13조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기간 이용권인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본인이 그 서비스에 대가로서 일정액을 부담하게 한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의 정도가 크면 국가의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소득수준, 개호정도, 연령 등 다양한 지표들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차등지원

제14조 (차등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의 소득·재산상태·사회서비스 욕구,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별 정부지원액을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 또는 정도는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용역 서비스 자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용권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서비스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자격을 가진 이용자의 소득 및 생활수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용권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성격, 대상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 규모가 상이하며, 개개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사회서비스의 종류, 이용자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

내는 여러 가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제15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

제15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 ①이용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에 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용자가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사업자는 이용권 증표에 내재된 일정한 가치를 취득하는 것의 대가로 이용권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가 이 법에서 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용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느냐 이용자가 이용권 증표를 현실적으로 제공함이 없이 다만 이용권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절차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된다. 사업자가 이용자가 적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는 이용권 증표의 제시 없이도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확인 절차의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할 수 없다.

②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정해진 사회서비스 이외에 현금 등 다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재산권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가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다. 즉,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국가가 국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기타의 상품권 내지 유가증권과는 달리 일반의 유통에 놓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받은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당해 이용권에 정해진 사회서비스 이외에 현금이나 다른 대가와 교환하는 행위는 사회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해하는 행위이다.

제3장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이용권은 기존의 국가가 사회적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사업 활동에 대하여 어떤 규제방식을 채택할 것 인지는 법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용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용권 사업의 수급상황, 안정적 공급 및 사업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허가제 형태가 바람직하다. 허가제 형태의 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허용하는 등록제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재량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자 지정

제17조 (사업자 지정) ①사회서비스이용권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사회서비스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7조의 사업자 지정이 가지는 의미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분으로서 허가에 해당한다. 허가란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허가의 효과는 금지되어 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허가로 인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주체는 허가신청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기준에 적합한데도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지정 신청권자가 제17조 제2항이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행정주체는 사업자 지정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규정한 사업자 지정의 형식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가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허가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사회서비스관리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의 경우에 그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해 그 결과를 즉시 사회서비스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외 구체적인 지정신청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8조 사업자 정보의 제공 등

제18조 (사업자 정보의 제공 등)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등을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용권 방식을 채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어떠한 사업자로 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자 개개인이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업자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적정한 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리 감독기관인 사회서비스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19조 사업자의 의무

제19조 (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회서비스이용권이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수수료를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금액을 초과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결제하는 행위

3. 기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행위

1. 사회서비스 제공거부금지의무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에 민법상의 계약 성립요건을 그대로 따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사업자에게 이용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노력을 적게 들이고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고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에게 서비스제공을 강제하는 근거는 국가 등을 대신해 사회서비스라는 공적 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사업자 지정신청이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수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용

자가 바우처를 제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진다.

2. 본인확인 의무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에 의해 제시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회서비스를 요청한 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여부는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수료징수금지의무

수수료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협의의 의미에서 수수료란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한다.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서비스 비용이외에 이용권 증표를 처리하고 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사무 및 행정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수료는 행정주체가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 대해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의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급부제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행정주체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권을 통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수료

등 경비를 이용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기타 제 의무

사업자는 위에서 언급한 의무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자 단독으로 또는 이용자와 공모하여 실질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실제 사회서비스 금액을 초과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사업자의 폐업 등 신고

제20조 (사업자의 폐업 등 신고) ①사업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지정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사회서비스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인근 지역에 대체 사업자가 없는 경우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 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상의 영업활동보다는 강력한 국가의 관리 및 규제를 받게 된다. 사업자가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자유로운 진출입이 허용된다면 국가의 사회보장급부 제공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허가뿐만 아니라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해서도 행정주체의 관리하에 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에 두도록 한다.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사전신고

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사전 신고한 경우라도 인근지역에 다른 사업자가 없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직업행사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자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 (사업자 지정의 취소 등) ①지정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수령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지정받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9조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사업자가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용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이용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 행위
 -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이용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사회서비스이용권 수령 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는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해

당한다. 영업허가의 취소 내지 정지는 허가받은 영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이다. 영업위반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벌칙이외에 부과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명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취소 사유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당연취소사유로 하고, 그 밖의 사유는 임의취소사유로 한다. 그 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 제28조에서도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당연취소사유로 하고, 그 외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임의적 취소사유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정지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행정주체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제22조 과징금처분

제22조 (과징금처분) 지정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 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제도를 둘 수 있다.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액이 소액이면 규제로서의 실효성이 별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으로 사업자가 전과자가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경우에 과징금이 선호되고 있다.

법률안 제22조의 과징금제도는 지정 사업자가 이 법률 상의 의무를 위

반하여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되, 그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갖는다. 사업자의 업무정지는 원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의 이용권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가 오히려 더 크다. 따라서 업무정지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면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제도가 과징금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처분할 것인지는 지정기관의 재량사항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기존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던 사회서비스 제공을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어 더 이상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이용권 사업자체는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사업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행한다. 과징금 처분은 형사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벌인 벌금과 병과도 가능하다.

지정기관이 행하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처분은 전형적인 행정처분이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행정상 재송절차에 의하여 다투게 된다. 즉,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지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면 처분기관은 여기에 기속되어 더 이상 재송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일차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유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3조 비용의 청구 및 수령

제23조 (비용의 청구 및 수령)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23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한 경우 사회서비스관리원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당해 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비용의 청구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권을 수령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국가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환급받게 되는데, 업무의 효율화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이용권과 관련한 지불 및 결제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이용권과 관련된 지불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 법에서 근거 규정을 둔다.

제4장 사회서비스관리원

이 법률안에서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의 사회서비스관리원(가칭)은 국가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이용권 사업을 독자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설립된 법인이다. 이용권 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이라는 공익적 업무를 국가기관이 담당할 경우에는 법령상의 제약과 행정통제로 인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권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전담기구로서 특수법인의 설립이 필요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이용권 사업을 심사 평가하고, 이를 통해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공권력을 부여 받은 특수법인으로서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수법인으로서의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설립 규정 외에 사업, 임직원 및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설립

제24조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설립)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비용 지불 및 심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을 설립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오늘날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용권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용권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는 별도의 이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용권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민간기관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업무는 이용권 사업과 관련된 지불, 정산 및 행정지원업무이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되어가는 이용권 사업을 관리하고, 심사 평가를 통한 이용권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는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25조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업무

제25조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업무)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2.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심사 및 지불
3. 사회서비스 사업자의 업무의 적정성 평가 및 보고
4.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5.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국제 협력
6.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
7. 사회서비스 사업자의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8.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서비스관리원은 기존의 사회서비스센터가 담당하였던 이용권의 지불 정산업무, 사회서비스바이용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 교육 및 홍보 업무 등 이외에 이용권 사업자의 업무를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지정기관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한 관리원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토대로 사업자 지정기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업자 지정 내지 취소를 하도록 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법률안 제25조 각 호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심사 및 지불, 사회서비스 사업자의 업무의 적정성 평가 및 보고,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국제 협력,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 사회서비스 사업자의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제26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26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급받은 이용자 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비용을 제공받은 사업자에 대해 그 급여 또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이용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 등에 의하여 사업자와 결탁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이들에 대하여 제공받은 서비스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당해 이용자와 사업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법률안 제26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급받은 이용자 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비용을 제공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급여액을 징수하여 재정의 손실을 원상태로 보전하려는 것이다. 즉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산적 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불공평을 시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률안 제26조 제1항의 부당이득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급받거나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에

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부당’ 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는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그 법령의 목적, 취지를 생각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구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당’ 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하거나 부적당하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위법’임을 요하지 않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부당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취지에서 보아 타당을 결하거나 또는 부적당하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급받거나 그 비용을 청구·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위 기타 부당한 행위를 포함한다. ‘사위’란 허위와 같은 말로 진실에 반하는 것 즉, 악의 또는 고의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진실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의와 고위란 사실과 다른 허위부분이 부주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이는 형사범죄로서 형사책임을 수반하기도 한다.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사위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정적·정신적 손실을 초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안 제26조 제2항은 이용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 등에 의하여 사업자와 결탁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이들에 대하여 제공받은 서비스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당해 이용자와 사업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 부당이득의 발생에 직접 관여한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제27조 사회서비스관리원의 법인격

제27조 (법인격 등) ①사회서비스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사회서비스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용권 사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행정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그 관리운영주체에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하여금 이용권 사업을 관리·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의 법인격 및 법적성격은 이용권 제도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률안 제27조에서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관리원이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단독으로 이용권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법인으로서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독자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사회서비스관리원장’이라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서비스관리원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는 공법·사법관계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인의 종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있고 회사 등 상법상의 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민사영리법인 등 민법상의 법인도 있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다는 점에서 특수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법은 민법·상법 외의 법률이라는 의미이며, 민법·상법에서는 법인설립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실제 설립은 발기인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야 하는 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다는 표현은 그 법에서 직접 설립할 것을 강제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특수법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에서도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한 입법례가 없다. 그러나 특수법인의 특징을 정리하여 공통된 성질을 어느 정도 추려내 보면 다음과 같다. ①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서 즉 국가의사에 의하여 직접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다. ②출자, 출연금, 보조금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③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등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④정부위탁 업무가 아닌 고유 업무의 내용도 비영리성, 공공성, 공익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모아서 특수법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면 ‘개별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어 대체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는 공익성이 강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로서의 특수법인’의 개념은 ‘개별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어 대체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공익적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⁸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을 사회일반의 이익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수법인은 국가가 공공복리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직접 설립하므로 여러 가지 법률상의 혜택과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법령에 의하여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소속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특수법인의 설립 목적과 활동은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어야 존재의 의의가 있다.⁸¹⁾ 또한 특수법인에게 효율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익적 사무를 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법령상의 많은 제약과 내·외부의 행정통제로 인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특수법인을 설

80) 김명식, “특수법인의 기본원리와 유형분석”, 고시연구 2001년 10월호, 47p

81) 김명식, “특수법인의 기본원리와 유형분석”, 고시연구 2001년 10월호, 48p

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설립 시부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거둘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자발적 의사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이상 특수법인에게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수법인을 설치할 경우 헌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행정조직법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특히 특수법인은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뿐만 아니라 실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볼 때 공권력의 행사에 상당하는 사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재원 또한 국민의 세금인 예산에서 부담하는 몫이 상당하기 때문에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적법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권익구제수단이 있어야 하며,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성은 외부의 간섭이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 스스로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특수법인에게 이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 것은 비록 특수법인의 설립은 국가가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이지만, 국가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지 않은 만큼 독자적인 법인격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해 법인이 별도의 법령체계를 가지고 인력을 운용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서는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법인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주무부처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관여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율성의 원리는 공익성의 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자율성의 보장내용은 인사, 조직, 예산상의 자율권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이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한다. 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등기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고 하겠다.

제28조 사무소

제28조 (사무소) ①사회서비스관리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회서비스관리원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률안 제28조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물론 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관리원 업무의 대부분은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용권 사업이 확대 실시될 경우 국민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분사무소의 설립이 불가피하며, 분사무소의 업무 또한 행정처분성이 있는 것이므로 분사무소의 설치근거를 두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주된 사무소란 공단의 이사장이 주로 근무하는 사무소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이용권 사업의 확대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특정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서이다. 주된 사무소의 업무는 비록 내부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관리원장의 명의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관리원장의 권한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갖는다. 법률안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는 이용권 사업의 확대 실시를 예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역본부·지사 및 출장소 등의 형태로 분사무소를 두어야 할 상황을 예상하여 규정한 것이다.

제29조 정관

제29조 (정관) ①사회서비스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사회서비스관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기본규칙으로서 당해 조직 내부의 규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다. 정관기재사항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항이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법률안 제29조 제1항에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의 목적 및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사업·재산·회계·임원·직원에 관한 사항 등 1호에서 10호까지의 내용이 되겠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정관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규정이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정관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사업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 정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사회

서비스관리원은 자치단체성이 미흡한 기관이므로 그 정관은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정관은 법률·명령 등과 같이 법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비록 정관이 실질적으로 법규를 보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규로 보기는 어렵다는 학설이 존재하나, 정관의 규정 중에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특별히 제정된 사항이 있으며 이 규정은 법령을 보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관의 개정이란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 및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지 않은 정관은 무효이다. 여기에서 인가란 사회서비스관리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인가는 성질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질 수 있으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청서 상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30조 임원

제30조 (임원) ①사회서비스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이란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업무를 총괄·집행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총칭하는 말이며,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직원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또한 임원은 노동관계법령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임원은 보수체계·인사 및 임면 등에 있어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직원과 다른 적용을 받는다. 임원으로는 원장 1인, 원장을 포함한 이사 10인,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상임이란 일정한 직무를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안 제3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 이사회

제31조 (이사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요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서비스관리원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업무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기관이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을 정부와 비교하면 이사회는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의사결정에 그치고 그 구체적인 실천·집

행은 원장과 그 명을 받은 비상임이사가 행하게 될 것이다. 법률안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법률안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원장 이외의 이사는 모두 비상임이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법률안 제3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①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⑤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사회서비스관리원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 행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행정상 책임 및 민사상의 책임은 발생된다 할 것이다. 이사회의 소집권은 이사회의 의장인 원장에게 있다. 이사회의 소집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정한 시기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로 행사하지 못하며, 의제를 서면으로 회람시켜 가부를 서명 받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사회제도는 이사회의 합의를 유효한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회의체인 이사회제도의 취지는 회의를 통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를 함으로써 업무집행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직원의 임면

제32조 (직원의 임면)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법률안 제32조는 사회서비스관리원 직원의 임면권은 원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짐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임면이란 직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신분설정행위인 임명, 신분변동행위 및 신분소멸행위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임용과 같은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사권이란 용어와도 유사하다. 사회서비스관리원 원장의 임면행위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학설과 사법상의 근로계약으로 보는 학설로 나뉘고 있다.

제33조 자금의 조달

제33조 (자금의 조달 등) ①사회서비스관리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3. 기타 수입금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주요기능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지불 정산업무, 사회서비스이용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 교육 및 홍보 업무 등 이외에 이용권 사업자의 업무를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지정기관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관리원은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누구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인 바, 이는 그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업무는 국가의 업무이며 사회서비스관리원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결국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재원은 법률안

제33조와 같이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기타 수입금이 사회서비스 관리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될 것이다.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제25조 제9호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서비스(중)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이 법률안 제25조 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는 특정인과의 위탁계약이라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도 징수할 수 있으나,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도 규정하기로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제35조 (회계연도) 사회서비스관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연도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치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정리되는 것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법률안 제35조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정부의 회계연도는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36조 사회서비스관리원에 대한 감독

제36조 (사회서비스관리원에 대한 감독) ①사회서비스관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사회서비스관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관계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을 받아 한다. 따라서 사업계획, 예산 및 회계 등에 대해 주부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률안 제 36조와 같이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에서 같다. 또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사회서비스관리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37조 업무의 위탁

제37조 (업무의 위탁)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비용의 지불 등에 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안 제37조에 규정된 업무의 위탁은 사회서비스관리원에게 주어진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이용권에 관한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과의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법률안 제37조에 의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비용의 지불 등에 대한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민법의 준용

제38조 (「민법」의 준용) 사회서비스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법률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법인의 주소, 기간의 계산 등의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입법의 기술상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 법에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법률안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었다.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의 사단법인 보다는 재단법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안 제38조의 ‘준용한다’고 함은 특정조항이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사회서비스이용권 기반 조성

제39조 사회서비스이용권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9조 (사회서비스이용권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생성되고, 각각의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이 요구될 수 있다. 많은 정보의 생성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통계정보를 신속히 입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른 공공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 및 정보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고,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은 이에 협조 수인할 의무를 지운다.

제40조 정보의 제공

제40조 (정보의 제공)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용자가 필요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사회서비스의 종류,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대상, 사회서비스이용권 유형 및 가액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현황,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질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기타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용권 방식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일방적인 사회급부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정보를 수집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용자는 어떤 사업자를 선택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원으로부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법 제41조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된 정보들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권리를 근거로 해서 국가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비공개에 대한 충분한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비공개할 수 있게 한다.

제41조 정보취급자의 의무

제41조(정보취급자의 의무)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지득하게 된다. 그러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될 경우 사생활의 평온이 깨뜨려지고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비밀누설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주체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이다. 현재 이용권 관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를 포함하는데, 정보취급자가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도 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면 주체가 된다. 보호의 객체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로서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개인 정보는 본 조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금지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

제42조 사회서비스 질 관리

제42조 (사회서비스 질 관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제고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질기준의 설정 및 평가 등 사회서비스 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질 관리업무를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질 관리업무의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시혜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내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급부대상의 확대와 같은 양적 측면에 주로 관심을 가졌으나 오늘날에는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그러한 인식의 일환으로서 사회보장 및 보건복지 분야 관련 법률들에서 질관리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새롭게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권과 관련된 법안에서 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객관적인 서비스 질관리 기준 설정, 평가 실시 및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관리 및 평가에 대한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직접 행정기관이 질관리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영국의 경우처럼 국가표준관리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에서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 감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건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질관리 평가와 관련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질관리 및 평가업무는 행정부서가 아닌 독립된 기관인 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제6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법률안 제6장에 규정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흔히 넓은 의미의 행정상 쟁송제도라고 한다. 행정상 쟁송제도는 행정구제제도의 일종으로서 행정기관에서 행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및 비용 지불 등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행정구제절차가 필요하다. 행정청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구제절차로서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절차가 있고, 이러한 간이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현재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43조 이의신청

제43조 (이의신청) ① 이용자 및 사업자의 자격·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및 지불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의 업무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자 및 사업자의 자격·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및 지불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처분 행정기관인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용자 및 사업자의 자격·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및 지불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 및 사업자의 업무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은 사업자의 재산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의신청제도는 사업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위와 같은 처분은 대량적·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며, 그 계산 및 인정 등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안이므로 처분청이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사회서비스관리원 자신에게 재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결정은 재처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제도인 심사청구와 달리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등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반면에 행정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법률안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사회서비스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의신청대상이 되어야 행정심판제도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을 열기주의로 볼 것인지, 개괄주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는데, 이 법률안 상의 이의신청제도의 성격,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법률안 제43조 제1항의 이용자 및 사업자의 자격·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및 지불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 제43조 제2항의 사업자의 업무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뿐만 아니라 모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이용자, 사업자, 기관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포함되며 다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임을 요한다고 하겠다.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행한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제기하며,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재결기관이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제도를 두는 의미가 대량적·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이 그 계산 및 인정 등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안이므로 처분청인 사회서비스관리원에게 충분히 재검토할 기회를 주고자함이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사실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이 있는 날’이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당해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소명한 때에는 180일이 넘어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44조 심사청구

제44조(심사청구) ①제4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재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판단작용으로서의 성격과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즉, 행정심판은 재판에 준하는 작용으로서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일정한 행정적 의사의 발현으로서 분쟁이 발생한 행정법관계를 규율하고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유지·소멸시킴으로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및 방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법률안 제44조 제1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법률안 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며,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사회복지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법학, 사회복지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

이 원칙이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만약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행정소송

제45조 (행정소송)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43조의 규정에 한 이의신청 및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조). 따라서 행정소송은 분쟁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정식재판절차를 말하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률안 제45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i)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ii) 법률안 제43조의 규정에 한 이의신청 및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법률안 상의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도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부작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와 심사청구절차를 모두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되며, 이의신청절차만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된다.

법률안 제45조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43조의 규정에 한 이의신청 및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재판관할, 소송의 당사자 등과 같은 행정소송법의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제7장 보 칙

법령의 총칙과 실체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칙규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보칙에서 정하는 내용으로는 수수료, 출입검사 및 질문, 청문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협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등이 있다. 이러한 보칙규정들은 법령을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실체규정과 벌칙규정 사이에 위치하고, 장의 구분이 없는 비교적 간단한 법령에서도 실체적 규정과 벌칙과의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 제정 시에도 규정되어야 할 사업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청문절차,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무원의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보칙으로 규정해 둔다.

제46조 검사와 자료제출

제46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정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서비스의 제공내역 확인, 사업자의 관리·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직원이 행정법규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업장, 영업장, 사업소, 공장, 창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의 장소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출입할 경우가 있다. 행정기관의 직원이 감독상 필요하여,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것은 이를 수인하는 상대 쪽에서는 권리나 자유를 적잖게 제한받거나 침해받는 것이므로 그 근거 규정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란 검사대상이 되는 서류 등의 진실여부·기재누락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안 제46조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정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사업을 하였는지 등을 사후에 확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업자에 대한 실사권의 근거조항이 될 것이다. 다만 법률안 제46조 제2항과 같이 검사 등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 청문

제47조 (청문) 지정기관이 제21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한다.

법률안 제21조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지정받은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 지정의 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나 법률안 제47조에 의하여 위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 자격을 부여하면서 당해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

도록 하는 경우와 법률에서 만들어진 특정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 또는 특정기관에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자격자나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이나 유사기관의 설립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제49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收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다루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擬制)’ 라고 한다.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루는 업무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제8장 벌 칙

벌칙은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서, 행정법에서는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이라고 불리며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벌칙이 과해지는 행정벌)과 행정질서벌(「형법」에 없는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로 대별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동법이 의도하는 행정목적, 즉 기존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의 일방적 급부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에게 급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를 통한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시장경제 원리의 가미를 통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이용자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법률에 근거하게 함으로써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 보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 행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당해 법률의 벌칙 조항의 성격은 위에서 논의한 행정형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수사 및 소추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제50조 벌칙

제5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 “이하 카드라 한다.” 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카드를 취득한 자

4.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이용한 자

5.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6. 사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한 자

② 제2조 제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중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아닌 사회서비스이용권은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2. 제1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3.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한 자

3.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사회서비스이외에 현금 등 다른 대가를 수령한 자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5. 제19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위반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벌칙규정 법제에 있어서의 일반적 유의사항⁸²⁾

벌칙은 의무 내용에 따라 그 의무에 대한 벌칙을 둘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상 의무를 확인하고 정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두는 것은 단속의 편의만을 위하여 벌칙을 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면서 벌칙 조항에서 그 의무 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형법, 특별형법 규정 방식과 같이 법률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규정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 또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당해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벌칙규정을 두려면 해당 행정법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최소한의 벌칙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벌칙과 국민의 법 감정의 일치 여부, 벌칙 적용으로 예상되는 국민 법 감정의 변화와 준법정신의 변화 여부, 형사정책상 예상되는 문제점·수사실무상의 애로와 문제점, 벌칙 부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규율대상

먼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대상으로는

82)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7, 455p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50조 제1항과 같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위조 또는 변조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카드를 취득한 자,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이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사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한 자를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50조 제3항과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제1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규정하였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50조 제4항과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한 자,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사회서비스이외에 현금 등 다른 대가를 수령한 자,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제19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위반한 자를 규정하였다.

3.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법적성질에 따른 벌칙규정 적용의 차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형태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자 등의 여건에 따라 유가증권의 일종인 증서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일정 금액이 기록된 카드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유가증권의 형태인 경우 형법상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범리가 적용되어 도난 또는 분실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이용한다 할지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 반면에 선불카드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도난, 분실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절도죄 등과는 별도의 선불카드를 통해 확립하고자 하는 경제 유통질서의 파괴라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위, 변조 및 부정행사 등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법적성질이 유가증권인지, 카드의 형태인지에 따라 형법과 여신전문금융업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이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고,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⁸³⁾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220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동법 제223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벌칙과 관련하여 증서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가증권에 관한 죄 규정을 원용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이 법이 형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해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다만 형벌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형법의 처벌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률안 제50조 제2항 ‘제2조 제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중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아닌 사회서비스이용권은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용카드⁸⁴⁾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83)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548p

84) 형법의 해석상 신용카드가 유가증권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 종래 신용카드는 신용구매의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해석하였으나(대법원 1984. 11. 27. 84도1862), 그 후 이는 재산권이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의 핵심적 기능은 신용기능에 있으며,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다. 직불카드는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6호)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는다.⁸⁵⁾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한 금액이 기록된(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의한다)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호)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 또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당해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카드의 형태인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의 위조, 변조 및 부정사용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한 여신전문금융법의 벌칙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률안 제50조 제2항과 같이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이 아닌 증서 형태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은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로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7. 9. 99도857)
85)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306p

며,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성격을 갖는 전자이용권의 형태로 지급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예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제51조 양벌규정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남(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의미가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벌칙규정의 적용받아 처벌되는 것은 실제 행위를 한 자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이익 등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이므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하여도 형을 과하여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에 의하여 양벌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51조는 제50조의 위반에 대하여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외에 그 위반행위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행위자만이 제50조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52조 과태료

제52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징계벌·집행벌적 성격 등 그 유형이 다양하나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다. 법률안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정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래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태료재판은 그 절차가 번거롭기도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접 인지한 경우에 법원의 문제제기로 그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당해 법률 위반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을 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과태료처분은 확정되며,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정상 강제징수가 허용된다.

제3절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의 하위 법령

1. 시행령 위임 사항

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은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관리원의 감독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방법,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및 방법과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활용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 및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리의 수여 또는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대한 구체 절차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기에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나. 사회서비스의 범위

제2조 (사회서비스)

법 제2조의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는 다음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1. 의식주 등 생활 보장 서비스
2. 소득 보장 및 취업 등 자활 관련 서비스
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집단 지원 서비스
4. 기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지원 및 보호 서비스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움에도 법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유추해낼 수 있도록 법안은 사회서비스

란 산업 분류 상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서비스 중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 규정하고 그 외 분야의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보건복지 내지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범위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그 활용 영역은 더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유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및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지원 및 보호 서비스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의 제공 범위에 따라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뤄지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된다. 그 밖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른 분류에 따른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여성과 가족이나 취약 집단(특수 집단)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유지 및 재활·자립을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인프라로서의 안전, 환경, 주거, 및 소득·고용 보장 서비스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다.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제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지정기관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지정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기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

2.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의 금액이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이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

③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은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 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정한 경제적 이득을 흡수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으로서 다분히 이득환수적인 성격을 지닌다.

보건복지관련법령 상의 과징금 제도로는 의료법 제6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5조 상의 과징금 제도와 약사법 제80조 및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의2 상의 과징금 제도가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2조도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제시되어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회서비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따라 형평에 맞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약사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2

[별표]				
과징금 산정기준 (제9조 관련)				
(단위 : 만원)				
구분	업무정지 1일에 해당 하는 과징 금	의약품등 제조업자· 수입자의 경우	의약품등 도매업자의 경우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 소매업자의 경우
		당해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전년도 총매출 금액	전년도 총매출 금액
1	3	2,000 미만	50,000 미만	3,000 미만
2	6	2,000 이상 ~5,000 미만	50,000 이상 ~70,000 미만	3,000 이상 ~4,500 미만
3	9	5,000 이상 ~7,000 미만	70,000 이상 ~100,000 미만	4,500 이상 ~6,000 미만
4	12	7,000 이상 ~10,000 미만	100,000 이상 ~150,000 미만	6,000 이상 ~7,500 미만
5	15	10,000 이상	150,000 이상	7,500 이상

		~15,000 미만	~200,000 미만	~9,000 미만
6	18	15,000 이상 ~20,000 미만	200,000 이상 ~250,000 미만	9,000 이상 ~10,500 미만
7	21	20,000 이상 ~30,000 미만	250,000 이상 ~300,000 미만	10,500 이상 ~12,000 미만
8	24	30,000 이상 ~50,000 미만	300,000 이상 ~350,000 미만	12,000 이상 ~13,500 미만
9	27	50,000 이상 ~70,000 미만	350,000 이상 ~400,000 미만	13,500 이상 ~15,000 미만
10	30	70,000 이상 ~100,000 미만	400,000 이상 ~450,000 미만	15,000 이상 ~16,500 미만
11	33	100,000 이상 ~200,000 미만	450,000 이상 ~500,000 미만	16,500 이상 ~18,000 미만
12	36	200,000 이상 ~300,000 미만	500,000 이상 ~600,000 미만	18,000 이상 ~19,500 미만
13	39	300,000 이상 ~500,000 미만	600,000 이상 ~700,000 미만	19,500 이상 ~21,000 미만
14	42	500,000 이상 ~700,000 미만	700,000 이상 ~800,000 미만	21,000 이상 ~22,500 미만
15	45	700,000 이상 ~1,000,000 미만	800,000 이상 ~900,000 미만	22,500 이상 ~24,000 미만
16	48	1,000,000 이상 ~2,000,000 미만	900,000 이상 ~1,000,000 미만	24,000 이상 ~25,500 미만
17	51	2,000,000 이상 ~3,000,000 미만	1,000,000 이상 ~1,500,000 미만	25,500 이상 ~27,000 미만
18	54	3,000,000 이상 ~4,000,000 미만	1,500,000 이상 ~2,000,000 미만	27,000 이상 ~28,500 미만
19	57	4,000,000 이상	2,000,000 이상	28,500 이상
비고				

1.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나. 품목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당해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와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를 제외한 다른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당해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참고자료 : 의료법 시행령 제43조의 별표

[별 표]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의료업 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금액은 개설자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처분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처분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 2)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 3) 법 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설자의 처분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과징금 부과 기준

등 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 100만원)			1일 과징금액 (단위 : 원)	
1	50 이하			75,000	
2	50 초과	~	100 이하	112,500	
3	100 초과	~	200 이하	150,000	
4	200 초과	~	300 이하	187,500	
5	300 초과	~	400 이하	225,000	
6	400 초과	~	500 이하	287,500	
7	500 초과	~	600 이하	325,000	
8	600 초과	~	700 이하	350,000	
9	700 초과	~	800 이하	375,000	
10	800 초과	~	900 이하	400,000	
11	900 초과	~	1,000 이하	425,000	

12	1,000 초과	~	2,000 이하	437,500	
13	2,000 초과	~	3,000 이하	450,000	
14	3,000 초과	~	4,000 이하	462,500	
15	4,000 초과	~	5,000 이하	475,000	
16	5,000 초과	~	6,000 이하	487,500	
17	6,000 초과	~	7,000 이하	500,000	
18	7,000 초과	~	8,000 이하	512,500	
19	8,000 초과	~	9,000 이하	525,000	
20	9,000 초과			537,500	초과

라. 정부 출연금

제6조 (정부의 출연금)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회서비스관리원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

산집행계획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관리원은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및 운영에 있어 일정정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를 통해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연금의 교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사 출연금제도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상의 출연금 제도가 있으며,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과 예산집행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보고해야 한다.

마. 사회서비스관리원의 감독

제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서의 제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법률안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에 관한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및 결산서의 제출을 준용하였다.

바. 위탁 금융기관

제9조 (금융기관)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관

참고자료 : 은행법

은행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리, 비용의 지불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비용의 지불 업무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이 관장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지불수단이 급여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서의 형태에서 전자 또는 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카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용자 및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직접 업무의 담당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비용의 지불을 관장하도록 위탁할 필요가 있다.

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제10조 (이의신청위원회)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1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사회서비스관리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

서비스관리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임직원 1명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5명
 3. 변호사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4.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이의신청등의 방식)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①사회서비스관리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안은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성격상 이용자 및 사업자의 자격·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및 지불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 사업자의 업무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뿐만 아니라 모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따라서 대량적·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이의신청위원회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 내지 제51조에 규정된 내용을 준용하였다. 이의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서식은 이용자 및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처분,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심사 및 지불에 관한 처분 및 사업자 업무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처분 등 그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다른 서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

제15조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복지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복지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심사청구의 결정기간)

① 법 제44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안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청구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상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심판청구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라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심사청구 등이 있다.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침해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므로 심사위원회의 관할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사회복지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및 그 밖에 법학, 사회복지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심사청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아. 검사와 자료제출

제18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

면으로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방법·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법률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회서비스의 제공내역 확인, 사업자의 관리·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정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검사 및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사업자 쪽에서는 권리나 자유를 제한받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검사 및 서류 제출 요구에 앞서 사업자 측에 검사 및 서류 제출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의 내용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내용을 준용하였다.

자. 과태료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는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한 경우 : 100만원

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100만원

다.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 200만원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안은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권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하면서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및 약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과태료 부과기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료제출 관련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200만원에 처하도록 하되, 부과권자에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

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안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사업자의 지정, 비용의 청구와 지급,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방법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방식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사회변화 및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고 이용 및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 전 영역에 걸쳐 절차 상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안 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

제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

① 사회서비스 수요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와 별지 서식 1호 및 2호에 규정된 신청서 및 이용권카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은 수요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한 신청 기간 및 기타 필요 서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회서비스이용권 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용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 및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서식 3호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률안 제9조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사회서비스 수요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권자	신청장소	제출서류	신청기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추가 서류 등	연중 수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자의 경우 추가 서류 등	연중 수시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기타 소득증명자료 등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서1부 -해당자의 경우 추가 서류 등	연중 수시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연중 수시
출산전 진료비 지원 서비스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탐문서 1부	연중 수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해당자의 경우 기타 서류	연중 수시

1) 신청장소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수요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장소는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출산전 진료비 지원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서비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별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신청서류

사회서비스 수요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의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관할 하에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모두 사회서비스이용권카드를 이용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시에는 이용권카드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사회서비스의 종류 및 그 특성에 따라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3) 신청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연중 항상 가능한 것이 보통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상에 규정된 출산전 진료비 지원서비스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다. 사회서비스이용권카드의 발급 및 예탁

1) 사회서비스이용권카드의 발급

제4조 (사회서비스바우처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카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발급이 결정된 해당 수요자의 카드발급 자료를 법 제37조의 전담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카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해당 수요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전담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이를 통보하고, 사회서비스관리원은 해당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발급과 관련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관할 아래 사용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형태가 모두 사회서비스이용권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향후 전자매체의 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이외의 이용권제도도 이용권카드를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전 사항으로 이용권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용권 발급 결정을 받은 후에 해당 수요자의 카드발급 자료를 전담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수요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사회서비스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전담 금융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이용권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

- ①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회서비스 예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예탁계획에 따라 시·군·구에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한 보조금 및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청장은 제1항의 예탁계획에 따라 해당 예탁금을 매분기 관리원의 지정계좌에 납부하고 그 내역을 보고 해야 한다.

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비용을 예탁하기 위해서, 먼저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회서비스 예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군·구에 보조금 및 자금을 교부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 의해 수립된 예탁계획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지정계좌에 납부하도록 한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각 예탁 계획 및 납부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관리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갱신

제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갱신)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종료되는 경우, 계속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갱신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갱신 받고자 하는 이

용자의 그 자격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조사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회서비스이용권 갱신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조 내지 제3조를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이용권은 금액이용권인 경우에 정해진 금액을 소진하거나 기간 또는 수량을 정한 이용권인 경우에 기간의 만료 또는 정해진 서비스의 수량을 받음으로써 종료하게 된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이용권을 통해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발급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갱신발급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갱신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사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갱신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자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시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마.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 관련

제7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법률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전액 제공됨에 따라 발생하였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

란자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일정부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동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부분을 준용하였다.

바. 사회서비스 이용 계약 등

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계약 등)

①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 전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를 선택한 후, 서식 제4호의 사회서비스 이용계약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계약에 따른 서식 제5호 서비스 제공계획서, 서식 제6호 서비스일정표 및 서식 제7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등 사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안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선택하고, 사업자와 함께 제공계획을 논의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외에 서비스 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교부받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용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관할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외에 이용권의 활용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경우에는 미국의 푸드 스탬프 제도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인 사회서비스 이용 계약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 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사. 사업자의 지정 관련

제9조 (사업자 지정 등)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식 제8호의 지정신청서
2. 서식 제9호의 사업계획서
3. 해당 기관 설치 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중 1부

②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확인한 후 심사를 거쳐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별지 제10호서식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 사업자 지정 신청 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가 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면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해당 기관 설치 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중 1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사업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2) 사업자 선정 및 지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정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각 서비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아. 사업자의 의무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법 19조 제4항 제3호의 기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금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른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지정 기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이루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금지된다.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금지된다.

자. 행정처분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와 같다.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수령정지 또는 폐쇄명령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지정받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정보 제공을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경고	수령정지 7일	수령정지 15일	지정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고 수령정지 10일 수령정지 20일 수령정지 30일	수령정지 60일	지정취소	
5. 사업자가 고용한 종사자 등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이용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이용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경고	수령정지 7일	수령정지 15일	지정취소

법률안은 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회서비스이용권 수령 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처

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 비용의 청구 및 정산 등

제12조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의 비용청구 및 지급에 있어 사회서비스이용권카드를 통한 비용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37조의 전담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사회서비스관리원과 연계된 전담금융기관에 법 제13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비용 청구를 받은 전담 금융기관은 비용 청구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의 정산)

① 전담금융기관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 집행 내역을 사회서비스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전담금융기관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전담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제1항의 집행내역 및 기타 자체 처리한 집행 내역 등을 총괄하여 매월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제2항의 정산 내역을 매월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법률안은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한 경우 사업자가 사회서비

스관리원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비용 청구를 받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이를 심사하여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의 청구 절차 및 비용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이 다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용 청구의 대상 및 비용 지급 대상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위탁을 받은 전담 금융기관이 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지급한 비용 내역을 사회서비스관리원과 연계된 금융 기관에 청구하고, 전담금융기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도록 한다.

2) 비용의 정산

사업자에게 사회서비스 비용을 선지급한 금융기관은 그 집행 내역을 사회서비스관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관리원은 그 내역을 심사한 후 금융기관에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관리원은 매월 시·도 및 시·군·구에 그 정산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급받은 이용자 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률안 제2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원이 그 급여 또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된다.

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평가

제14조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평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에 대한 평가(이하 “사업자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평가 방법 등)

①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제14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 과정
3.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질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세부 실행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사업자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질 평가는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수행하도록 하며, 그 평가 실시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사회서비스 사업자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 과정,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및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방식

1) 이의 신청 방식

제16조 (이의신청 방식 등)

- ① 법 제43조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분(부분)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이의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규정하는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은 이의신청서를 받는 즉시 그 사본이나 부분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하며,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도록 한다.

2) 심사 청구 방식

제17조 (심사청구의 방식 등)

- ① 법 제44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3호 심사 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한 자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자료의 표시
7.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분을 사회서비스관리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사회서비스관리원은 그 사본 또는 부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4호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사회서비스관리원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규정하는 심사 청구서를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역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심사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는 심사 청구서를 받는 즉시 그 사본이나 부분을 사회서비스관리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하며, 사회서비스관리원은 그 사본이나 부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작성하면 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결정서이 정보 및 사본을 보내야 한다.

파.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제18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납입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및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오늘날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권 방식이 선호되어지고 있다. 이용권 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존의 국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 가졌던 비효율성을 극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바우처 방식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증가되었는데,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권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으로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산전진찰바우처 등이 있다.

이러한 이용권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만족도가 높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용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용권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독립법 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환경 및 문화분야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있어 효율적인 소비자 중심의 이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사회서비스근로자 양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는 4개월간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 이용권 운영 현황 파악 및 바우처 관리 기관과 그 근거 법률을 우리나라의 이용권 운용과 비교분석하며,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법조계, 사회복지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용권 방식을 활용해왔으며, 제공 내용 역시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대표적으로 Food Stamp Act의 경우, 수급권의 자격 및 박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EBT카드(전자카드)로 식량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식품영양국(FNS: Food and Nutrition Service)에서 서비스사업자 지정 및 일반 EBT규정 제정, 식품권을 발행, 배분, 상환, 폐기와 서비스 품질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경우, Care Standard Act에서 국가표준관리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를 두어 이 기관에서 서비스 질 평가, 관리, 감독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호주,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이용권 제도에 대한 자격, 관리 등에 대한 법안들은 존재하였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명시한 일반법은 없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에 우리보다 4-50년 앞서 이용권 방식을 활용해왔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용권 방식을 통한 활용은 이들 나라들 못지않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간다면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법률 제정 시 자문회의 및 연구를 통해 많이 논의되었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 법의 성격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절차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한 관리법안의 할 것인지, 이용권 산업에 대한 실체법적인 규제 사항들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 법이 이용권 전반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개의 이용권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법안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 생겨나게 될 이용권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유형을 미리 예상해서 법안에 기술하기는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권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규율하기 위한 기관 내지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둘째 :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이 법의 적용범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었는데, 이 법이 앞으로 이용권 방식을 행하는 공공사업 방식의 근거 법률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이용권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했을 경우 운영과정에 있어서 타 부처와의 업무 충돌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조직법을 활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만 이 법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타 부처와의 부처 간 협의과정을 거쳐 규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및 사업자 선정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 및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은 이 법안에 중요한 핵심적 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이용자 및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용자 및 사업자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선정 및 지정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해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이용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 등 재정적 사항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고, 행정주체의 재량권 행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안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주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구체적인 이용권 관련 행정업무를 행정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업무의 과중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과 행정통제로 인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권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담기관을 민간기간에 위탁해서 맡길 수도 있지만 행정적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심사 평가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질 관리, 평가

미국의 식품영양국(FNS: Food and Nutrition Service), 영국의 국가표준 관리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와 같이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용권과 관련된 질 관리 규정과 이를 설정, 평가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안정적 관리와 확산을 위해서는 비용정산, 지불기능 외에 서비스 개발 및 공급기관 관리·감독, 서비스 질 관리 등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여섯째 : 이용자 정보보호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

사회서비스이용권은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가 아닌 이용권의 형태로 이는 불법·부정사용의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양수, 판매 등에 대한 부정행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혼자서 사용하기 힘든 이용자를 위한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자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정보 및 비밀보호에 관한 조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의 경우에도 개별 이용권 사업과 관련된 법은 제정된 바 있으나 이용권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의 직접적인 모델law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이 연구의 내용의 한 부분으로서 Food Stamp 법안의 예산안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나 Food Stamp 법안이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보조프로그램으로 사업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연방제를 따르고 있는 미국의 예산안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안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ood Stamp와 관련된 연방 및 지방정부의 예산안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있어 연구보고서에서는 제외되었다.

셋째, 이 연구의 내용 중 하위법령 제안과 관련하여 시기상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위법령은 상위 법률이 제정 확정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하위법령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이 연구에서는 제안된 법률안을 기초로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제시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법적 기반 내지 분석을 구체화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향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에 대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용권 사업의

활성화 및 보편화가 이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용권사업의 국민의 보편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센터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사회서비스이용자 및 사업자 관리를 꾀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사회서비스관리원을 설립하는 경우에 작은 정부 내지 공적 기관의 축소와는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이외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 및 고찰이 바탕이 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법안이 점진적이나 발전적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용권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리법에 대한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2. 강혜규 외 5명.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 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3. 김명식. 특수법인의 기본원리와 유형분석. 고시연구. 2001년 10월호
4. 김송이.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
5. 김윤수.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사례 연구. 한국 행정 학회, 한국 정책학회 2007년도 하계 공동 학술대회. 2007
6. 김진.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007
7. 김향자, 유지윤. 여행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
8. 김혜원, 안상훈, 조영훈.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9.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2005
10. 배득중, 강인재, 정창훈, 이영범.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 연구-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11.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 의미와 과제. 사회복지 정책. 2007
12. 성효용.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기본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성신대학교. 2004
13.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사회복지서비스전달 체계에서의 바우처도입의 의의와 가능성.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월례 세미나발표집. 1999
14.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시설 바우처제도 모형개발-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0
15. 안홍준.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발전 방안을 정책과제. 2008
16. 유한욱.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DI. 2005
17. 이선호. 외국의 스쿨 바우처 제도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발전논총 24권 1호. 2003

18. 이용호 외 6명.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06
19. 이종훈. 교육훈련 바우처 및 교육훈련 카드 제도의 도입·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서. 1998
20.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21. 이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영문화사. 2008
22. 장지연. 호주의 통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센터링크(Centrelink)). 노동리뷰. 2005
23. 전형준, 이만우.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의 타당성: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2006
24. 정광호. 바우처 분석: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5권 1호. 2005
25. 정무성. 전달체계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효율성 강화 전략-호주 Centrelink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2권 제2호. 2003

<참고 법령 및 판례>

1. 국내 : 사회복지사업법
2. 미국 : 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
3. 영국 : the Children Act 1989
4. 영국 :ther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
5. 영국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7
6. 영국 : the Social Security Act 1988
7. 영국 :the Society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8. 호주 :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Act 2008
9. 호주 : Human Service Bill 2007
10. 호주 : Commonweath Services Delivery Agency Act
11. 독일 : esetz zur Förderung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und Kindertagespflege; Kindertagesförderungsgesetz-KitaFöG
12. 독일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Gewährleistung eines

bedarfsgerechten Angebotes von Plätzen in Tageseinrichtungen und Kindertagespflege und zur Personalausstattung in Tageseinrichtungen; Kindertagesförderungsverordnung-VOKitaFöG

13. 독일 : Rahmenvereinbarung über die Finanzierung und Leistungssicherstellung der Tageseinrichtungen

14. 대법원 1984. 11. 27. 84도1862

15. 대법원 1999. 7. 9. 99도857

<참고 사이트>

1. 국내 : 법제처
2. 국내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3. 영국 : <http://www.healthystart.nhs.uk>
4. 호주 : Western Sydney Institute
5. 호주 : Centerelink